



# SEXUAL EXPLOITATION OF BOYS



대한민국 보고서

2021년 11월

감사의 말본 연구는 스웨덴 국제개발협력청(SIDA) 지원으로 진행되었다. 본문에 제시한 관점은 엑팟(ECPAT) 인터내셔널 단독 견해이며 지원의 제공이 본문에 게시된 견해를 지지한다는 뜻은 아니다.

본 출판물은 엑팟 인터내셔널과 탁틴내일(TACTEENNAEIL)/엑팟 코리아의 Global Boys' Initiative(세계남아계획; 이하 GBI)의 일환으로 착수한 연구사업을 기반으로 한다.

**엑팟 인터내셔널:**

Alastair Hilton, Jarrett Davis, Lauren Holdup, Mark McKillop, Andrea Varrella, Mark Kavenagh, Lene Andersen, Freddie Nickolds

**탁틴내일:**

강선혜, 정희진, 한송이, 이주영

**디자인 및 배치:**

Manida Naebklang

**인용:**

엑팟 인터내셔널. (2021). Global Boys' Initiative: South Korea Report. 방콕: 엑팟 인터내셔널.

본 출판물에서 발췌한 내용은 엑팟 인터내셔널로 출처를 명시하였을 경우 사용할 수 있다.

**커버 일러스트:**

본 보고서 커버에 포함된 일러스트는 한국의 남아 성착취와 관련된 환경과 상황을 묘사한다. 맨 위에서부터 설명하자면, 학교에서의 괴롭힘과 성폭력은 남아와 여아 모두에게 발생하고 있고, 다른 여러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남자 아이들이 성착취 피해를 당했을 때 이를 밝히기 어렵게 하는 침묵의 문화가 있으며, 현재 많은 남아 성착취가 온라인을 통해 발생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오프라인에서의 위험이 존재한다.

© 엑팟 인터내셔널, 2021

*Published by:*

**ECPAT International**

328/1 Phaya Thai Road, Ratchathewi,

Bangkok, 10400 Thailand

Tel: +662 215 3388 | [www.ecpat.org](http://www.ecpat.org) | [info@ecpat.org](mailto:info@ecpat.org)

# 목차

<b>배경과 이론적 설명</b>	<b>2</b>
<b>국가 상황</b>	<b>4</b>
사회, 문화 및 성 규범 - ‘침묵의 문화’	5
법률 개정	5
국제 및 지역 법률적 합의	5
<b>방법론</b>	<b>8</b>
연구 방법	8
윤리적 고려사항	11
한계점	11
<b>지원 실무자</b>	<b>13</b>
표본 개요	13
제공 지원 서비스	13
총 담당 사례수	14
가해자의 성별	16
관찰된 성착취 유형	18
예시 시나리오	19
기존 지원 서비스의 가용성과 서비스의 질에 대한 의견	21
남아에게 영향을 미치는 취약요인	23
남아가 성착취 피해를 밝히기 어렵게 하는 장벽들	25
<b>남아 생존자(Survivor)들과의 대화</b>	<b>29</b>
‘한국에서 남자 아이로 사는 것’	29
남아가 도움을 구하고 받는 경험	31
지원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남아의 인식	33
가족, 친구 및 또래의 대응	33
니즈와 갭 파악하기	34
대화 마무리하기	36
<b>법체계 분석</b>	<b>37</b>
대한민국 법률에서 아동의 권리	37
남아가 구체적이고 맞춤형 조치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39
성매매를 통한 아동 착취	39
온라인 아동 성착취	41
성적 목적의 아동 매매	43
여행 및 관광을 통한 아동 성착취	45
아동의 조혼 및 강제결혼	46
치외법권과 범죄인인도	47
사법집행과 보상에 대한 접근성	48
<b>논의</b>	<b>53</b>
성 규범	53
남아들의 지원 탐색 경험	56
취약 집단	60
결론	61
<b>권고사항</b>	<b>62</b>
<b>부록 1: 생존자와의 대화 방법론</b>	<b>68</b>

# 배경과 이론적 설명

아동 성착취(SEC)를 포함해 아동을 상대로 한 폭력은 전세계 수백만 명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고, 어느 나라, 어느 지역도 ‘면역’되지 않는다.<sup>1</sup> 모든 사회경제집단에서 모든 교육수준과 모든 인종 및 문화 집단에 걸쳐 영향을 미칠 수 있다.<sup>2</sup> 모든 아동의 성착취에 관한 자료는 일반적으로 부족하며, 특히 남아의 경우 더 심하다. 예를 들어, 드물게 국가에서 아동 성착취에 관한 현황 자료를 수집하는 경우에도 표본은 청소년기 여아로 제한된 경우가 보통이어서 남아만의 독특한 경험과 취약성을 이해하기가 어렵다.<sup>3</sup> 여아가 성착취에 대한 위험이 불균형적으로 높다는 것은 널리 수용되고 있으나 남아들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에 대한 세계적인 이해에는 여전히 격차가 있다는 인식이 높아졌다.<sup>4</sup> 이용할 수 있는 제한된 증거자료에서는 남아가 많이 발견되는 일부 배경에서는 더 큰 위험에 노출될지도 모른다고 제시한다.<sup>5</sup> 가해자가 남성이고, 성적 성향과 상관없이 동성애를 범죄시하는 나라에서는 남아 희생자가 법적 결과를 감수해야 하기도 한다.

남성성과 여성성에 대한 성 규범의 영향력은 아동 성착취를 이해하는 데에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하나의 성에 기인하는 것이 종종 나머지 성에는 거부되곤 한다는 사실을 관찰할 수 있다. 이러한 규범은 일반적으로 남아가 강하고 취약하지 않으며, 피해를 당할 확률이 적고 설사 그런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심각한 피해를 입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고수한다. 반대로 여아는 착취를 비롯해 일반적으로 취약하다 고려되고, 피해에 인해 심각한

영향을 받으며 도움이 필요하다 여긴다. 이러한 규범은 정책, 실무, 옹호 및 연구에 영향을 미쳐 남아를 낮게 표시하거나 배제하여 남아의 성착취에 대한 대응을 저해할 수도 있다. “성착취와 성 폭력에 대한 다양한 취약성 요인들은 모든 성에 공통적인 반면 남아들이 얻는 지원은 무조건적으로 성 규범을 조건부로 하여 도움을 찾는 행동과 보호를 찾는 능력을 제한한다.”<sup>6</sup>

위의 상황이 성착취 대상 여아들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옹호, 지원을 방해해서는 안되지만, 성착취 예방과 아동의 필요에 맞춘 대응 활동에 더 나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모든 성별의 아동성착취에 대한 양질의 증거기반 연구, 이해 및 지지 개선이 분명 필요하다.

## GLOBAL BOYS' INITIATIVE (세계남아계획; G.B.I.)

엑팟 인터내셔널에서는 남아의 성착취를 탐구하기 위하여 G.B.I.를 시작하였고, 남아를 중점으로 한 광범위한 연구 및 대응 활동에 본 기관의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였다. 자료의 제한으로 인한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2020-21년에 G.B.I.는 전 세계 10개국에서 일련의 연구 프로젝트를 착수하고, 남아 대상 성착취에 대해 이해하고, 어떠한 요인이 취약성과 위험 증가로 이어지는지, 예방/보호/지원 지원 서비스와 관련해 그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밝히고자 하였다. 초기 연구

1 VAC 사무총장 특수 대표 사무실. (2019년 7월). *Keeping the Promise: Ending Violence against Children by 2030*. 뉴욕: 유엔.  
2 엑팟 인터내셔널. (2020). *Summary Paper: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in Travel and Tourism*. 엑팟 인터내셔널: 방콕.  
3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 (2018). *Methodology Paper Out of the Shadows: Shining light on the response to child sexual abuse and exploitation - A 40-country benchmarking index*. 런던: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 3.  
4 Josenhans, V., Kavenagh, M., Smith, S., & Wekerle, C. (2020). *Gender, Rights and Responsibilities: The need for a global analysis of the sexual exploitation of boys*. 아동 학대와 방임 110 (1).  
5 엑팟 인터내셔널. (2021). *Global Review of the Existing Literature on the Sexual Exploitation of Boys*. 방콕: 엑팟 인터내셔널.  
6 Josenhans, V., Kavenagh, M., Smith, S., & Wekerle, C. (2020). *Gender, Rights and Responsibilities: The need for a global analysis of the sexual exploitation of boys*. *Child Abuse and Neglect* 110 (1).

단계의 대부분은 SIDA에서 자금을 조달 받았고, 액팻 인터내셔널 사무국과 국내 액팻 회원기관 간 파트너십을 통해 직접 연구를 실시할 수 있었다.

## 본 보고서

탁틴내일은 1995년 3월부터 한국의 아동성착취 예방 및 대응에 앞장서 왔으며, 2004년부터 액팻 인터내셔널 회원국으로 활동해왔다. 탁틴내일과 액팻 인터내셔널은 2020-21년에 한국 내 남아의 성착취라는 획기적인 연구 사업에 협력하여 본 보고서에 결과를 제시한다.

한국의 사업은 다음 활동을 포함한다.

- 한국에서 성착취 및 성폭력을 경험한 남아와 접촉할 수 있는 다양한 직종의 일선에 있는 사회지원 실무자에 대한 설문조사

- 성착취를 경험한 남아가 참여한 ‘생존자들과의 대화’ - 성 규범, 지원 탐색과 제공, 지원 서비스의 질 및 긍정적인 변화를 위한 권장사항과 관련된 관점 및 경험의 탐구
- 남아 중심의 관점으로, 아동을 성착취로부터 보호하는 대한민국 법체계 분석

본 보고서에서 파악한 결과들은 기존의 장점과 개선의 영역을 파악하고, 성 인지적이면서 모든 아동이 접근 가능한 지원 서비스 개선을 위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연구 결과가 한국에서 남아의 성착취 및 성폭력을 둘러싼 오명과 금기를 의미 있게 부수는 데에 기여하길 바란다. 증거를 기반으로 한 분명하고 실행 가능한 권장사항도 제공된다.



# 국가 상황

한국은 총 인구가 5천 만이 조금 넘고 18세 미만 인구는 810만 명에 불과한 동아시아 국가이다.<sup>7</sup> 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발달한 국가에 속하고, 1950년대에 일어난 한국전쟁 이후로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다. 하지만 급속도의 발전이 아동에게 언제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은 한국은 선진교육체제를 구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학교들은 폭력이나 성적 괴롭힘 등 따돌림의 역사로 오랜 세월 고통받고 있다.<sup>8</sup> 따돌림을 당한 아이들은 보통 고립감과 외로움을 느끼기 때문에 아동의 취약성을 이용하려는 범죄자들에게 더 취약해진다. 한국에서 남아의 성착취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하지만 이것이 남아가 성착취 범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한국에서는 특히 2013년 형법이 개정됨에 따라 남아와 남자 성인들도 점점 성 범죄의 피해자로 인식되면서 변화가 이루어졌다.<sup>9</sup> 개정 전에는 형법 제297조(강간)에서 ‘피해자’를 여성으로만 국한하였기 때문에 성적으로 피해를 입은 남성이나 남아는 자신의 사건을 ‘강간’이나 ‘성폭행’으로 신고할 수 없었으므로 가해자는 ‘상해와 폭행을 가한 죄’로만 기소될 수 있었음을 의미한다.<sup>10</sup> 개정 후에 남성의 성피해를 점차 인정하게 되었고, 국가 기관들은 그러한 범죄를 기록하기 시작했다.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병원 기반의 해바라기 센터에 대한 여성가족부(MOGEF)의 2019년 성과 보고서<sup>11</sup>에 따르면 2020년에 해바라기 센터<sup>12</sup>를 방문한 남성 피해자가 총 1,166명으로

보고된다. 도움을 요청한 사람들 중 603명이 13세 미만의 남아였고, 13-19세 청소년이 234명에 달했다. 대한민국 경찰청의 2019년 피해자 통계 개요<sup>13</sup>를 살펴보면 120명의 남성이 강간을 당했다고 신고하였고, 1,496명의 남성이 성폭행을 신고하였다. 하지만 남성의 피해, 특히 남아의 피해에만 중점을 둔 연구는 극히 드문 현실이다. 이는 공공 및 전문적 영역 내에서 문제의 상대적인 ‘비가시성’에 기여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한국에서는 최근 세간의 주목을 받는 여러 사건에서 남아들을 온라인 성착취 피해자로 밝혔다.<sup>14</sup> 2020년, N번방 스캔들이 터지면서 국내에 엄청난 관심을 불러 일으켰고, 법이 개정되기에 이르렀다. 남아를 비롯한 많은 아동들이 가해자들에게 자신의 사진을 보내라는 협박을 받았고, 사진을 받은 가해자들은 아무나 접근할 수 있는 채팅방에 이러한 사진을 유포하였다.<sup>15</sup> 게다가 2021년 6월에는 26세 남성이 SNS에서 만난 남자 아이들을 대상으로 7,000개 가량의 아동성착취물(CSAM)을 온라인에 유포한 혐의로 체포되었다. 가해자는 30개가 넘는 SNS 계정을 이용해 여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미성년 남성들에게 알몸 사진과 영상을 보내도록 강요하였다. 또 미성년자를 직접 만나 강제로 신체 일부를 만지고 유사강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만 67명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그의 휴대전화에 있는 290명이 추가로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sup>16</sup>

7 UNICEF. (2019). *The State of the World's Children 2019*. 194.

8 엑팟 인터내셔널. (2018). *Country Overview: Korea*. 6.

9 대한민국 정부. (2016). *Criminal Act*. Article306.

10 대한민국 정부. (2016). *Criminal Act*. Article297.

11 여성가족부. (2020). *사전정보공표*.

12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원스톱 센터로,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한다. 해당 센터에서는 피해자에게 의료, 심리 및 법률 서비스와 같은 지원을 제공한다. 경찰관이 센터 내에 배치되어 피해자 중심의 면담을 제공한다. 해바라기 센터는 지역 병원에 위치하고, 24시간 운영한다.

13 대한민국 경찰청 (2020) *Summary of Crime: Victims and victimization report*.

14 YTN. (2020). *Sexual exploitation chat room for teenage boys. "Intimidate to catch weakness."*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사건번호: 2020고합294 & 2020고합486.

16 Segy Ilbo. (2021). "If you send me a naked picture, I will meet you." *Sexual exploitation of hundreds of boys... '26-year-old Chanwook Choi' released*.

## 사회, 문화 및 성 규범 - ‘침묵의 문화’

남자 아이들의 성착취는 한국 사회에 구축된 성 규범의 영향을 받는다.<sup>17</sup> 남아의 성착취가 발생하면 남아들의 경험이 그들의 성과 관련해 내재화될 수 있는 공동 규범, 가령 남자는 용감하고, 참을성이 있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고, 혼자서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규범에 상충된다. 이러한 종류의 경험은 아이들로 하여금 그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에 대해 스스로를 탓하거나, 심지어 타인으로부터 피해자를 탓하는 결과를 야기하고, 남아에 대한 성폭력을 간과하는 문화로 이어지는 것으로 알려진다.<sup>18</sup> 한국에서는 흔히 남자 아이들이 언제나 섹스를 좋아한다고 가정하기도 한다. 이는 여성이 남아를 착취하는 상황에서도 남아가 행복해하고 피해자가 아니라는 신념으로 이어진다. 또한 한국에서는 동성애가 불법은 아니지만 관용 수준은 낮고 다양한 성적 취향, 성 정체성 및 표현(SOGIE)<sup>19</sup>을 하는 사람은 차별을 경험하곤 한다.<sup>20</sup> 남성에게 성착취 피해를 입은 남자 아이들은 동성애자라고 낙인찍힐 수 있다는 두려움에 그러한 사실을 공개하길 꺼려할 수 있다.

동아시아의 여느 국가와 마찬가지로 어른들이 장난스럽게 혹은 애정의 표현으로 신체를 만지는 행동은 점차 사라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또래들 역시 엉덩이를 토닥거리거나 발로 상대의 성기를 건드리는 행동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관행은 어떠한 피해도 의미하지 않지만 신체적 자율성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며 남자 아이들은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멈추는 데에 무력감을 느낄 수 있다.<sup>21</sup> 더 심각한 것은 남자들 간 성폭력을 ‘무해한 장난’으로 합리화하는 경향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인데, 성폭력이 흔히 발생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의무적인 군 복무 상황 등을 포함한다.<sup>22</sup>

탁틴내일 프로젝트 담당자의 경험에 따르면 남성의 성폭력에 관한 다른 신념들도 평배한데, 가령 성인 가해자에게 당한 남아 피해자들이 ‘자발적 참가자’라는 신념 등이 있다. 마찬가지로 한국 문화에서 남성들이 더 많은 사회적 자원과 권력을 갖기 때문에 (여성과 여아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의 피해자보다는 가해자가 되기 쉽다는 인식 역시 성폭력의 남성 피해자를 인정하길 꺼리는 데에 기여하는 것으로 고려된다.

## 법률 개정

2013년에 한국은 성폭력과 관련된 법률을 개정하였고, 그에 따라 법률은 모든 아동에게 동등한 보호를 제공한다. 성폭력 아동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특별히 만들어진 ‘해바라기 센터’는 이제 남아와 여아 모두 이용이 가능하다.<sup>23</sup> 하지만 최근 2020년까지만 해도 성매매로 착취당한 아동이 ‘성매매에 관여’<sup>24</sup>한 범죄로 법적 처벌될 수 있었고, 아동지원 실무자들은 남자와 여자 미성년자들이 그러한 행위로 처벌을 받기 일쑤였다고 일화를 들며 인정하였다. 착취당한 아동을 법적 처벌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최근의 법률적 변화는 환영받을 만하다.

## 국제 및 지역 법률적 합의

한국은 아동들을 성착취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국제 및 지역 협약들을 비준함으로써 아동권리 보호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혀왔다. 아동의 인권 보호에 근간이 되는 주요 국제 문서로 유엔아동권리협약(CRC Convention)이 있으며,<sup>25</sup> 한국에서는 1990년에 비준하였다. 이러한 컨벤션은 성폭행과 성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규정이 포함된 주요 국제 문서이다.

17 엑팟 인터내셔널. (2018). *Country Overview: Korea*. 7.

18 osenhans, V., Kavenagh, M., Smith, S., & Wekerle, C. (2020). *Gender, Rights and Responsibilities: The need for a global analysis of the sexual exploitation of boys*. *Child Abuse and Neglect* 110 (1).

19 더 흔히 사용되는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LGBT)와 같은 용어 대신 EPCAT 인터내셔널에서는 ‘다양한 SOGIE’라는 용어를 이용해 다양한 성적 취향(게이, 레즈비언 및 바이섹슈얼)과 다양한 성 정체성 및 성 표현(트랜스, 제3의 성, 논바이러니)을 지칭한다.

20 BBC 뉴스. (2019). *Gay in South Korea: ‘She said I don’t need a son like you’*.

21 Hilton 외 (2008). “I Thought it Could Never Happen to Boys: Sexual Abuse & Exploitation of Boys in Cambodia, an Exploratory Study. Organization: Social Services of Cambodia (SSC).

22 Kwon, I; Lee, D; Kim, E; Kim, H-Y. (2007). *Sexual Violence Among Men in the Military in South Korea*.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2(8). 1024-42.

23 한국 정책 브리핑. (2015).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Adult Male Sexual Assault Victim Support Guide*. [한국어에서 번역].

2000년에 성착취를 목적으로 한 아동매매와 다른 형태의 성폭행 및 성착취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였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아동매매, 아동성매매 및 아동음란물 규제에 관한 선택의정서(OPSC)<sup>26</sup>가 채택되었다. OPSC는 2004년에 한국에서 비준되었고, 아동 성착취에 대한 국제적 대응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겠다는 강조해왔다.

한국은 2019년에 국가 수준에서 CRC와 OPSC의 이행과 관련해 CRC 위원회에 마지막으로 보고하였다. 위원회는 관찰 결과에 특별히 남아와 관련된 권고사항은 포함시키지 않았으나 아동 성착취와 성폭력의 모든 발현을 미연에 방지하고 대응하며, 인식을 제고하고 성착취 보고를 장려하며, 성착취자들이 기소되어 적절하게 처벌을 받도록 보장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성을 촉구하였다.<sup>27</sup>

한국은 국가 제도가 효과적으로 폭력에 대응하지 못할 때 아동이 관련된 국제 기구들에 호소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는 의사소통 절차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a communication procedure)를 아직 비준하지 않았다.<sup>28</sup>

CRC와 관련 의정서들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아동을 성착취와 성폭행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국제 공동체에서 채택한 협약들이 많다. 한국은 2001년 국제노동기구협약 제182호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협약(ILO 협약 제182호)<sup>29</sup>을 비준하였고,

2015년에는 UN 초국가적 조직범죄방지협약을 보완하는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방지, 억제 및 처벌을 위한 의정서(UN 인신매매방지 의정서)<sup>30</sup>를 비준하였다. 한국은 이러한 협약을 비준하고 효과적인 이행 및 집행을 보장하겠다고 동의함으로써 그에 규정된 종류의 아동 성착취를 효과적으로 금지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채택하고자 노력해왔다.

지역적 노력과 관련해 2015년에 여성가족부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국제 성매매 방지 심포지엄을 주최하였고, 성적 목적의 아동·여성 인신매매에 대한 UNODC의 대응에 관한 특별 세션을 포함하였다.<sup>31</sup> 나아가 한국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의 회원국은 아니지만 2017년 6월에 제7차 아동폭력 방지 범지역 연례회의에 참여하였다. 주요 행사 중 하나는 “아동 폭력과 방임, 착취, 해로운 전통적 관습과 괴롭힘”이라는 주제에 대한 한국 아동 위임단의 토론이었다.<sup>32</sup>

또 한국은 아동의 성착취에 맞서 싸우는 노력의 일환으로 인터폴과 협력 중이다. 사실 2020년에 한국은 인터폴의 ‘아동 성착취 근절’ 사업에 자금을 조달하기로 약정하였다. 덕분에 아시아 지역에서 국제 아동 성착취 데이터베이스로 접속에 더 중점을 둘 수 있었고, 피해자 확인 절차를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기소를 도울 수 있었다. 프로젝트의 또 다른 목표는 아동성착취물(CSAM)의 제작자와 유포자를 파악하고, 그러한 내용을 포함하는 웹사이트를 차단하고 제거하는 데에 있다.<sup>33</sup>

24 대한민국 정부. (2020).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Youth against Sex Offences*. Article 38.

25 UN. (1989).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26 유엔 총회. (2000년 5월 25일).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27 아동인권위원회. (2019).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combined fifth and sixth periodic reports of the Republic of Korea*.

28 유엔 총회. (2011).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a communications procedure*. 유엔 문서 A/RES/66/138.

29 ILO. (1999). *Worst Forms of Child Labour Convention*. (No. 182).

30 유엔 총회. (2000년 11월 15일).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Annex 2: 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sup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Palermo Protocol)*. Res. 55/25 of 15. 제3조 (a)항.

31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15). *International Symposium on Prevention of Prostitution*.

32 ASEAN. (2017). *Seventh High-Level Cross-Regional Roundtable on Violence against Children*.

33 인터폴. (2020). *Korea to fund INTERPOL projects combating cyber-enabled crime*.



마지막으로 한국은 UN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에 집중적인 대응을 보여왔다.<sup>34</sup> 2016년에는 자발적 국가검토보고서를 제출하여 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진행한 경과를 보고하였으나<sup>35</sup> 보고서에 아동의 성착취를 근절하려는 시도에 관해서는 상세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다.

---

34 유엔. (n,d).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35 대한민국 정부. (2016). National Voluntary Review.

# 방법론

## 연구 방법

한국에서 진행된 연구의 주요 목적은 남아의 성착취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실증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에 있었다. 새로운 1차 자료를 생성하기 위해 방법론은 양적 및 질적 자료로 구성된 현장 지원 실무자 설문조사를 포함시켰다. 성착취 경험이 있는 남자 아동청소년과의 대화도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아동 성착취에 관한 국가법의 문헌분석이 완료되었다.

## 지원 실무자 설문조사

본 설문조사는 한국의 남자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성착취와 관련된 지원 서비스의 접근성, 품질 및 효과성을 측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설문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장점과 개선의 영역을 파악하고, 지원 서비스 개선과 기술 및 지식 훈련을 위한 권고사항을 제공한다.

## 이론적 근거

실무자 설문조사는 사회복지시스템의 효과를 이해하기 위해 연구에서 점점 많이 사용되고 있다. 대부분 이러한 설문조사는 보건<sup>36</sup> 및 사회복지<sup>37 38</sup> 전문가들이 지원 서비스 제공 효과성을 측정하고 공공지출의 효율성을 조사하는 데에 사용한다.

성착취와 성폭력에 노출되는 아동에게 제공되는 사회 복지는 일반적으로 아동 보호의 광범위한 맥락 내에서 제공된다. 따라서 본 단체는 아동보호

실무자를 비롯해 아동과 접촉 가능성이 높은 이들을 위한 설문조사를 구성 및 제공하였다. 설문조사에서는 남아의 성착취, 이러한 지원 서비스에 대한 남아의 접근성과 관련된 요인, 남아 지원에서 지원 서비스의 질과 효과성에 대한 인식, 아동과 직접적인 업무의 특성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탐구하였다.

## 표본

탁틴내일은 한국에서 아동보호지원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파악하였다. 연구에서는 남아에 중점을 두었으나 이 코호트에 특별히 중점을 둔 지원 서비스는 극히 적으므로 표본은 성적으로 착취를 당한 남녀 아동을 지원하는 실무자를 포함시켰다. 파악하고 나서 탁틴내일의 설문조사 진행자들은 관리자에게 연락하여 설문조사를 설명하고 최전선 직원의 참여를 요청하였다. 참가자들은 18세 이상으로, 최근 담당 업무에 아동이 포함되었으며, 최소 12개월 간 지원 제공을 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포함시켰다.

코호트는 ‘편의 표본’이었기 때문에 한국 내 일선 지원 실무자 전체 인구를 대표하지 않는다. 표본화한 기관들은 대부분 도심을 기반으로 하는데, 복지 지원 서비스 대부분이 인구가 밀집한 도시 지역에 집중된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자료에서는 지원 서비스 접근성에 대한 잠재적인 지리적 한계를 탐구하였다. 이에 더해 다양한 유형의 지원 서비스를 표본 설계에 포함하였다. 한국에서 현재 성적으로 착취당한 아동을 위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총 56명의 현직 지원 실무자가 설문조사를 완료하였다.

36 Magadzire, P M 외(2014년 11월). *Frontline Health Workers as Brokers: Provider perceptions, experiences and mitigating strategies to improve access to essential medicines in South Africa.*

37 Sadeghi, T and Fekjaer, S. (2018). *Frontline Workers' Competency in Activation Work.* 국제사회복지저널. 77-88.

38 Netsayi, M. (2019). *Perceptions of Frontline Social Workers on their Contributions Agenda for Social Work and Social Development.*

또 80% 이상 질문에 답을 한 4편의 부분 완료된 설문조사를 분석에 포함시켰다.

자가진단 온라인 도구(설문조사 링크 이메일 제공)는 참여율이 저조한 것으로 악명이 높다. 따라서 설계는 온라인 툴을 이용한 직접 작성을 선택하였다. 프로젝트와 동의 절차를 설명하고 온라인 링크를 통한 설문조사 진행을 돕기 위해 탁틴내일의 설문조사 진행에 적합한 직원으로 약속을 정했다. 약속은 면대면으로 계획하였으나 COVID-19의 제약으로 인해 대부분 전화 통화나 채팅 앱을 통해 완료되었다. 설문 참가자들이 설문조사를 완료할때까지 진행자들이 함께하며 설문과정 중 발생하는 질의 및 문제해결을 지원했다. 개별적 연락으로 참가자들이 설문조사를 완료하도록 동기를 부여하였다. 자료 수집은 2021년 4월과 5월에 진행되었다.

## 설문조사

온라인 설문조사는 121개의 다선지 질문과 짧은 자유 응답 질문으로 구성되었고, G.B.I 운영위원회와 상담하여 영어로 개발되었다. 이후 초안을 한국어로 번역하였고, 엑팟 인터내셔널과 탁틴내일이 협력하여 설문조사를 검토한 뒤, 설문 실행 전 탁틴내일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파일럿 조사를 진행하였다.

## 분석

자료 수집 후에는 자료를 정리하고 개방형 응답은 영어로 번역되었다. 설문조사 결과는 구글 시트를 이용해 커스텀 분석 프레임워크로 통합하였다. 이후 자료에서 발생한 위급한 테마와 패턴을 기반으로 추가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어서 질적 분석 요소를 프레임워크에 추가하였고, 각 변수에 대해 테마 분석을 실시하였다. 남성의 취약성을 전문으로 하는 국제 전문가 2명이 분석 및 작성을 완료하였다. 주로 소수 의견(해당 시)과 더불어서 양적 자료에서 발생하는 주된 내러티브로 정량 및 질적 테마와

패턴을 탐구하였다. 분석 중에는 참가자를 파악할 수 있는 질적 응답은 나타내지 않도록 주의하였다. 작성한 후에 분석가들은 탁틴내일과 회의를 통해 추가 분석 및 결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자료는 한국의 모든 지원 실무자의 경험을 통계적으로 대표하지 않음을 주목해야 한다. 하지만 본문에 실린 추정치, 인식 및 경험은 충분히 연구되지 않은 분야에 귀중한 통찰을 제공하고, 한국에서 성착취 및 성폭행에 노출된 남자를 위한 사회적 지원의 접근성과 질을 조명한다. 많은 참가자들이 설문조사에 걸쳐 자유 응답 항목에 대한 설명적인 진술과 추가 관찰을 공유하면서 이 분야에서 도전과제를 비롯해 조치 및 경과에 대한 잠재적 기회를 탐구할 수 있었다.

## 남아 생존자들과의 대화

이 대화는 한국에서 성착취에 관한 지원에 접근하는데 있어 남자 아이들과 젊은 남성들의 경험에 대해 제한된 이해를 기반으로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성 규범이 그들의 삶과 도움을 찾고 받는 경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탐구하였다. 이어서 대화는 기존 지원 서비스의 질과 효과성에 대한 그들의 인식을 측정하고, 개선을 위한 권고사항을 수집하였다.

## 이론적 근거

엑팟 인터내셔널에서는 연구에서 아동 성착취 생존자를 관여시키는 것이 모든 설계<sup>39</sup>에서 윤리적 고찰 범위를 수용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를 요한다고 인정하며, 생존자들이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해 안전하고 적극적이며 의미 있게 담론에 참여해야 할 권리를 갖는 것에 중요성을 부여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아동의 목소리를 확대하고, 폭행이 추구하는 침묵의 문화에 도전하는 방법을 제공함으로써 참여할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데, 단, 아동이 피해를 경험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주의하여 이해할

39 엑팟 인터내셔널. (2019). *Guidelines for Ethical Research on Sexual Exploitation Involving Children*. 방콕: 엑팟 인터내셔널.

경우에 한한다.”<sup>40</sup> 이는 본 연구 활동을 지도하는 주요 원칙으로, 생존자들이 그들에게 맞게 그들의 관점을 공유하는 데에 통제력을 갖도록 중점을 두는 것을 의미한다. 오늘날까지 한국에서는 남아의 성착취만을 중점으로 하거나 남아의 구체적인 관점을 포함시킨 연구는 없다. 따라서 G.B.I는 이러한 격차를 메우기 위해 혁신적인 기회를 제공하였다.

연구 프로젝트에 남성 생존자의 목소리를 의미 있게 포함시키도록 보장하기 위해 엑팟 인터내셔널은 남성 성적 학대 및 성착취 생존자와의 업무 경험이 풍부하며 국제적으로 인정 받는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포괄적이면서 참가자 중심적이고 윤리적으로 타당한 트라우마 기반 접근법을 개발했다. ‘대화’는 남아 생존자들에게 중요한 주제를 논할 때 그들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피해자 중심적이며 윤리적이고 상대를 존중하며 심리학적으로 안전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과거 경험을 탐구하도록 설계되었다.

엑팟 인터내셔널은 세계 네트워크에 걸쳐 파트너십을 중요하게 취급하고, 협업 및 상호 창조적 접근법을 통한 전문성 개발 지원에 깊이 몰두한다. 따라서 학습 요구의 평가를 도모한 후에 전문가들은 한국에 자격을 갖춘 사회복지사와 상담사로 구성된 탁틴내일 팀에게 훈련 및 기술 지원을 제공하였다. 몇 개월에 걸쳐 일련의 온라인 회의와 활동 및 연수를 완료하여 남성 생존자와 일하면서 주요 주제에 팀을 민감하게 만들었다. 전문가들과 한국 팀은 남아 아이들을 계획된 대화에 적극 참여시킬 다양한 도구와 연습을 공동 개발하였다.

## 표본

참가조건을 충족한 최대 10명의 참가자를 파악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 가령 참가자는 지원 구조에 접근할 필요가 있고, 착취가 발생하고 걱정 시간이 경과해야 한다는 기준을 예로 들 수 있다. 하지만 COVID-19 제약으로 참가자 파악이 악화되었다. 결국 2명의 남아아이들이 참여하였다. 1명은 17

세 남아아이로 친척에게서 성착취를 경험하였고, 나머지 1명은 16세 남아아이로 오프라인 착취를 당하기 전에 온라인 그루밍을 경험했다. 부모들은 절차를 논하기 위해 사전 회의 토론 중에 활동에 참가하도록 아이들 대신 동의를 하였고, 17세 청소년의 경우 한 부모가 당일에 동행하여 학생과 협력자들이 단독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었으며, 예상치 못하게 학생의 문제와 지원 요구를 파악할 수 있었다. 일대일 대화는 모두 2021년 5월에 진행되었다.

## 대화 접근법

대화는 전통적인 연구 면담 형식보다는 상호작용 방식으로 진행되도록 신중히 설계되었다. 이러한 설계의 장점은 주제의 특성과 민감도에 집중하고, 선택과 역량을 증진시켜 참가자들이 연구 팀과 공유한 것에 대한 상당한 통제력을 갖고 그들이 그러한 통제력을 갖고 있도록 인식한다는 사실에 중요성을 부여한다. 참가자들은 주로 구두로 참여하였으나 한국의 문화적 배경을 고려하여 특별히 설계한 여러가지 도구와 활동을 통해 다양한 창의적 표현 및 선택이 가능했다. 대화를 촉진시키는 광범위한 창의적 도구는 ‘방탈출’ 활동, SNS 포스트, 성 규범을 탐구하기 위한 ‘성별 그래프’를 포함하여 최신 상호작용 기술을 이용하여 특별히 고안되었다. ‘나무 만들기’ 활동을 이용해 ‘니즈와 갭’, 그리고 권고사항을 파악하였다. 생존자들과의 대화 접근법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부록 1에서 찾을 수 있다.

## 분석

연구에서는 남아 아이들이 경험한 착취의 세부사항과 관련해 남아 아이들에게 직접 묻지 않았다. 대화는 한국에서 성착취와 관련된 경험에 대해 통찰력을 얻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상황을 개선하는 방법에 대해 유일한 관점을 공유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40 상계서.

처음에 대화는 ‘한국에서 남자 아이로 사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파악하면서 일상생활에서 성 규범을 어떻게 경험하는지에 대한 견해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활동은 분위기를 풀어주는 동시 성착취를 경험하기 전에 일상적 경험을 이해하는 기반을 만들어준다. 성착취 이전, 중, 후에 도움 요청과 관련된 경우를 포함해 경험, ‘세계관’ 및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규범이 사용되었다. 광범위하게 탐구한 주제는 다음과 같다.

- 남자 아이들이 도움과 지원을 찾고 받는 경험(접근성 장벽, 지원 서비스의 질 등)
- 남자 아이들이 파악한 지원의 요구와 격차
- 개선을 위한 남자 아이들의 권장사항

남자 아이들은 공식적 지원을 받았을 수도 있지만, 그들의 응답은 공식적인 지원을 말하는 것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그들은 가족, 친구, 지역사회 구성원 등 가장 넓은 의미에서 비공식적인 지원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도록 격려받았다.

## 법률 분석

남아에 중점을 두고 아동의 성착취를 다루는 데에 있어 법적 격차, 장벽 및 기회 파악을 목적으로 한 문서 법률 분석. 표준화된 검토 방법을 채택하였다. 구체적으로 엑팍 인터내셔널은 약 120 포인트와 서브포인트를 포함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G.B.I의 모든 국가에 대한 분석을 지원하고자 하였다. 탁틴내일 직원은 국가 법률을 탐구하고 체크리스트를 완료한 후 엑팍 인터내셔널 소속 연구 직원이 이 정보를 이용해 분석 및 서술하였다. 이후에 초안은 두 팀이 협력하여 검증 및 확인하였고, 본 보고서 6장에 게시되어 있다. 분석 결과는 법적 대응을 수정하고 개선하기 위한 옹호 영역을 파악한다.

## 윤리적 고려사항

아동의 내재된 취약성을 감안할 때 아동 성폭행과 성착취에 관한 연구는 엄격한 윤리기준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야 한다.<sup>41</sup> 시작 전에 엑팍 인터내셔널은 본 기관에서 제안한 방법론에 대해 독자적인 3자 검토를 위해 세 명의 국제 전문가 패널을 소집하였다. 윤리적 위험에 대해 발전시킨 완화조치를 포함한 상세한 연구 프로토콜과 초안 도구를 개발하여 패널과 공유하였다.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패널에게 상세한 피드백을 두 차례 요청하였다.

위에서 상세히 설명한 바와 같이 탁틴내일 팀은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2명의 전문가와 함께 광범위한 준비 작업에 참여하였다. 따라서 팀은 가장 윤리적이고 적절한 행동을 보장하기 위해 한국의 배경에 대한 적절성과 방법론에 대해 서로에게서 학습하였다. 계획 중에 팀은 협력하여 엑팍의 포괄적인 지침에 설명된 ‘위험과 이익’ 분석을 완료하였다. 사전동의를 얻는 절차에는 두 번째 대화 시간을 갖기 전에 남아 및 부모와 절차를 논하고 계획하는 사전 면담이 포함되었다.<sup>42</sup> 상세한 정보는 부록 1을 참고한다.

온라인 설문조사 도구의 통합 부분으로 사전동의를 얻었다. 비밀유지를 위해 설문조사 진행 단계에서 이름은 요청하지 않았다.

## 한계점

### 생존자들과의 대화

10명의 남아로 구성된 표본을 모집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위치와 시간의 제한으로 팀은 2명의

41 상계서.

42 상계서.



참가자만 모집할 수 있었다. 표본을 확보하는 데에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했다. 가령 남아의 성착취에 대한 인식이 낮아 가능한 참가자에게 연락하기가 까다로웠다. 방법론에 대한 투명성에도 불구하고 일부 실무자들은 남아들과의 대화가 여전히 상처를 줄 수 있다고 염려하여 참여 가능한 대상자에게 본 연구에 대한 정보공유를 거절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실무자의 망설임을 극복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하는데, 가령 연구 과정에서 실무자와 남아들의 협력을 증진시키는 방안이 있겠다. 또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폭넓게 광고하면 스스로 참가를 고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이에 더해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자료수집 기간 중 이동에 어려움이 있어 실무자, 남아 및 부모의 참여에도 영향을 미쳤다.

## 지원 실무자 설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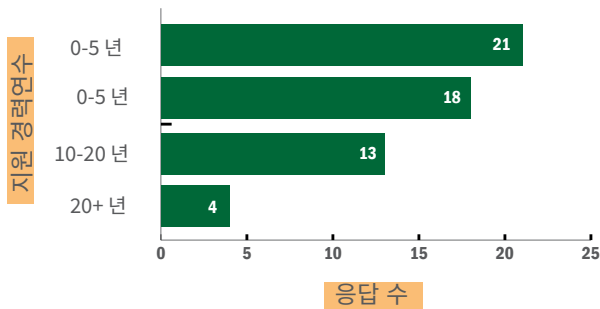
포함 기준의 결과로 한계가 발생하였다. 본 기관은 일선에서 직접 근무하는 실무자(고위관리직 제외)를 포함시키는 것이었다. 따라서 첫번째 질문은 “지난 12개월 이내에” 아동과 직접 작업한 경험을 물었다. 자료 수집은 2021년 상반기에 진행되었기 때문에 COVID-19의 영향이 일부 지원 실무자로 하여금 한동안 직접 내담자를 만나는 업무를 제한하였으므로 설문조사를 시작했지만 첫번째 질문에서 부적격한 53명의 참가자 중 일부는 허위 긍정에 해당할 수 있다.

# 지원 실무자

## 표본 개요

표본 중 56명의 실무자는 25개 도시에서 선정하였고, 1/3 가량이 서울에서 근무한다. 특히 4명을 제외하고 모두 여성이었고, 3명은 남성, 1명은 '기타'로 기입하였다. 33명의 응답자(58%)는 비정부기구에서 근무하였고, 15명(27%)은 정부에서 일한다. 나머지 8명의 응답자는 민간 및 준정부기구에서 근무하였다. 2명을 제외한 실무자 전원은 도시에서 근무하였다. 지방에서 근무한 2명은 대한민국정부 공무원이었다. 응답자는 전반적으로 교육수준이 높고, 35명(63%)이 박사 또는 석사 학위를 이수하였다. Figure 1은 응답자 중 2/3가 10년 이상의 경험이 있음을 보여준다. 4명의 참가자는 20년 이상 아동과 작업해왔다.

Figure 1. 아동복지/지원 경력 (N=56)



## 제공 지원 서비스

모든 응답자는 적어도 어떠한 형태로든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보고하였는데, 51명(91%)은 일대일 상담을 제공하고, 거의 3/4는 성 건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보고하였다. 32명(57%)은 의료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21명(38%)은 심리사회적 지원을 제공하였다. 4명의 응답자만이 다양한 SOGIE를 위한 특별한 지원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응답자에게는 그들이 제공한 지원의 유형과 그들이 이수한 심화연수에 대해 작성하도록 요청하였다. 54개 응답 중에 설명은 대개 3개 범주에 든다.

- **임상 심리학을 제공(52%):** 이 응답자들 중 대다수는 성폭력 관련 심화연수를 받은 것으로 보고하였고(n=19), 그 뒤로 트라우마(n=4), 여성의 권리(n=3), 가정 내 폭력(n=1)이 따른다.
- **기타 형태의 치료 상담을 제공(26%):** 이 응답자들은 성폭력(n=6), 피해자 지원(n=2), 페미니스트 관점 치료(n=2), 성관련 업무(n=2), 가정 내 폭력(n=2)에 교육을 받았다.
- **사회지원복지사(20%):** 이 응답자들은 위기 개입/현장지원(n=5), 성폭력(n=3), 트라우마(n=1), 멘토링(n=1)에 대한 연수를 받고 있었다.
- 한 응답자는 성폭력의 맥락 내에서 법적 지원 제공에 중점을 두었다.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 지원 서비스를 넘어 모든 응답자는 적어도 어떤 형태의 사회경제적 지원을 제공한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지원의 대부분은 실무자가 80%가 제공하는 법적 비용과 관련이 있다. 24%는 재통합 지원을 제공하고, 32%는 현금지원을 포함해 다양한 형태의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였으며, 21%는 내담자에게 식품이나 의류처럼 기본 공급품을 제공하였다.

대다수는 가족/보호자에게 지원을 제공한 63%와 채택 간호를 제공한 13%를 포함해 일종의 가족 지원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이보다 적긴 하지만 일부 응답자의 기관은 공식 및 비공식 교육에 접근성을 제공하였으나 29%가 비공식 교육 또는 직업 훈련을 제공하였고, 그 중 7명은 직접 교육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 반면 6명은 직업 교육을 제공하였다. 제3자 연구를 위한 지원을 제공한 기관은 없다.

## 성찰: 복지사의 교육 배경

본 표본의 복지사는 대부분이 학사 또는 박사 학위를 이수하여 교육 수준이 상당히 높다. 많은 응답자가 최소한 사회복지 교육을 이수하였으나(29%), 생태학적 맥락을 고려하기보다는 내담자와 작업에 ‘치료적’ 접근법을 훈련 받은 사람이 대다수로 판단되었다. 이는 표본추출편의의 결과일 수 있는 것이, 많은 참가자들이 병원에 위치한 해바라기센터에서 근무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석사 또는 박사 자격 분야가 임상심리학(n=19)과 범죄심리학(n=4)을 포함해 심리학 및 정신의학 전공으로(n=17) 국한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2명의 참가자는 법학에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1명은 교육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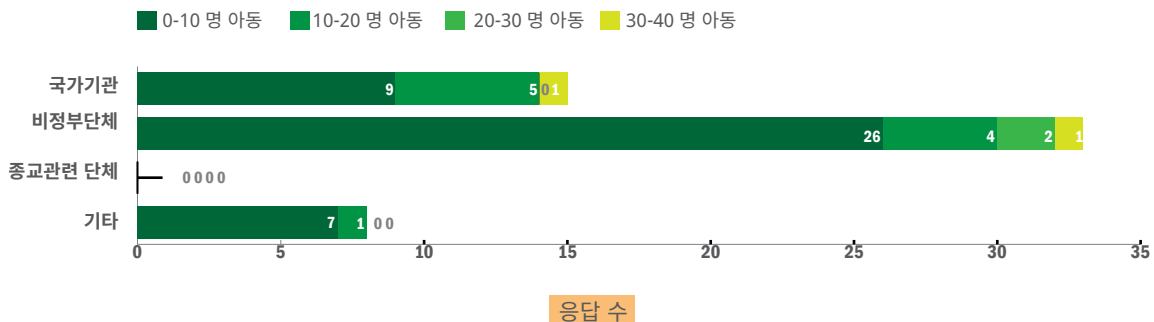
응답자의 전공을 고려할 때 성폭력과 외상에 명확한 중점이 있고, 많은 사회복지사가 구조적 및 성에 기반한 형태의 폭력에도 전문성을 겸비하고 있었다. 트라우마 대응에 있어 성폭력 관련 전문성이 풍부한 방법론을 제공하고 있으나 한국에서는 현재 남아의 성폭력에 관한 전문적 훈련 자체가 존재하지 않음을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성폭력에 관한 전문적 훈련은 여성과 여아의 경험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

## 총 담당 사례

참가자에게 총 담당 사례수를 질문하였다 (성착취를 경험한 아동과 경험하지 않은 아동 포함). Figure 2는 42명의 응답자(75%)가 1-10개 사례를 담당한다고 응답했다. 14명의 실무자 (25%)만이 10명 이상의 아동을 담당할 이력이 있었다. 정부 직위에서 근무하는 이들은 담당 건수가 높게 나타났고, 총 30-40명의 내담자를 담당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참가자들에게 내담자의 몇 퍼센트가 남아에 해당하는지 추정할 것을 요청하였다. 모든 응답자는 최소한 몇 명의 여아를 지원한 경험이 있었고, 총 56명의 표본 중 47명만이 남아를 지원한 경험이 있었다. 9명의 참가자는 그들 기관에서 여아에게만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였다고 보고했으나 그 중 2명은 기관 규제 때문에 아니라 남자 아이들이 도움을 찾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1명의 참가자는 기관 프로그램에서 트랜스젠더 청소년에게 특별히 지원을 제공하였다고 밝혔다.

Figure 2. 설문참가자(N=56) 사례 담당 건수



기관에서 아동을 전담으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였다고 보고한 응답자는 없었으나 응답자 중 15명은 담당 건수 중에서 절반 이상이 남성이었다고 보고하였다. 12명의 참가자가 담당 건수의 85-95%가 남성이었다고 보고하였다. 이 응답자들은 대부분 성 건강 지원 서비스와 일대일 상담에 중점을 둔 기관 소속이었다. 소속 기관에서 다양한

SOGIE의 젊은 사람들에게 구체적인 지원을 제공하였다고 보고한 응답자는 없었으나, 2명은 과거에 트랜스젠더와 논바이너리 내담자를 지원한 적이 있다고 나타났다. 대부분 남아를 지원하는 실무자들 중에 12명은 여성이었고, 2명은 남성, 1명은 논바이너리로 확인되었다.

## 성찰: 담당 사례

전체적으로 실무자는 담당 사례수 비율이 낮아 실무자와 내담자의 비율이 적절했다. 하지만 담당 사례수 크기를 내담자 성별과 비교하자 추세가 눈에 띄었다. 남아 지원 경험이 많은 실무자는 내담자의 수가 많은 경향을 보였다. 20명 이상을 지원하는 4명의 복지사들이 평균 68%의 남아를 담당했다. 연구 팀과의 토론을 통해 이러한 추세는 남아와 작업한 경험이 있는 실무자에게 아이들을 보내는 경향이 있으므로 그들에 대한 요구가 높았으리라 추정했다.

9명의 참가자는 여성 내담자만 지원하였고, 기관 3군데는 인원을 여성으로만 제한하였다. 반대로 인원을 남성으로만 제한하는 기관에 소속된 참가자는 없었다. 실무자가 모든 성별의 내담자를 돕는 것은 흔하지만 이 보고서는 남아들이 지원처를 파악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보여주는 광범위한 자료를 제시한다. 남아와의 대화를 통해 어떤 지원 서비스는 남아 내담자에게 제공하지 않음을 알게 되었고, 남아와 작업한 경험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의뢰는 흔히 이루어졌다. 한 남아의 부모는 아들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어려움으로 당혹감을 표현했다(7장 참고)

참가자 1/3 가량이 ‘다른’ 성별(예: 논바이너리 또는 트랜스젠더)의 사람들을 도왔다고 말했고, 4명의 참가자만이 소속 기관에서 다양한 SOGIE의 청소년에게 구체적인 지원을 제공하였다고 말했다.

## 남아 관련 사례

총 담당 사례수에서 참가자에게 성착취를 경험한 것을 알고 지원을 제공한 남아의 비율을 추정하도록 요청하였다. 남아를 지원한 응답자들은 그들이 돌보던 남아의 37%가 성착취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추정했고, 응답은 총 담당 건수에서 5%-100% 범위를 보였다(중앙값 10%). 이번 절에 포함된 나머지 분석은 담당 사례 내에서 성착취 경험이 있는 남아에 중점을 두었다.

Figure 3은 성착취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남아를 표시하고, 응답자의 추정에 따르면 평균 44%가 11-15세에 성착취를 경험하였고 35%는 16세 또는 17세에 성착취를 경험하였음을 보여준다.

Figure 3. 남아아동 피해 평균연령

남아 아동피해자의 성착취 피해 연령	평균	중앙값
0-5세	7.9%	5.0%
6-10세	24.3%	20.0%
11-15세	43.8%	40.0%
16-17세	34.3%	30.0%

성착취에서 가장 공통적으로 제공된 것은 금전(n=15), 음식(n=7), 주거지(n=5) 순으로 나타났다. 또 애정과 정서적 지원, 위력, 위협, 협박 등이 있었다고 답한 응답자는 8명이었다.

## 여아 관련 사례

참가자에게 성착취 피해를 인지하고 지원을 제공한 여아의 비율을 추정하도록 요청하였다. 응답자들은 그들이 돌보던 여아의 68%가 성착취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추정했고, 응답은 총 담당 건수에서 0%-100% 범위를 보였다(중앙값 75%). 이번 절에 포함된 나머지 분석은 담당 건수 내에서 성착취 경험이 있는 여아에 중점을 둔다.

Figure 4는 여아의 경우 응답자의 추정에 따르면 평균 43%가 11-15세에 성착취를 경험하였고 42%는 16세 또는 17세에 성착취를 경험하였음을 보여준다.

Figure 4. 여성아동 피해 평균연령

여성 아동피해자의 성착취 피해 연령	평균	중앙값
0-5세(추정비율)	6.5%	10.0%
6-10세(추정비율)	17.3%	20.0%
11-15세(추정비율)	42.6%	40.0%
16-17세(추정비율)	42.2%	40.0%

제공된 것은 남아의 경우와 차이를 보였으며, 금전(n=32)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주거지(n=8), 물건(n=6), 보안(n=1) 순으로 답하였다. 4명의 응답자가 여아를 대상으로 정서적 지원 또는 안정감을 비롯해 위력, 폭행 등이 있었다고 답했다.

## 가해자의 성별

성착취 경험이 있는 남아에게 지원을 제공한 설문조사 참가자(56명 응답자 중 47명)는 대략 83%가 남성 가해자였고 17%는 여성 가해자였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여아에게 지원을 제공한 설문조사 참가자(모든 참가자가 여아지원 경험이 있었다)의 답과 유사했는데, 그들은 담당사례의 가해자 중 약 81%가 남성이었고 19%가 여성이었다고 답했다. 참가자는 가해자의 국적과 관련해서는 남아와 여아 간에 차이가 없다고 추정하였는데, 대략 86%가 한국 국적이고 나머지는 외국인으로 추정하였다.

## 남아 관련 사례의 가해자

참가자에게 아래 Figure 5에 묘사된 남아의 성착취에 가장 흔히 발견되는 관계의 유형에 대해 질문하였다. 남성 가해자가 관여한 경우 27명의 참가자는 권한과 권력의 입지에 있는 남성(예: 교사 또는 종교적 인물)가 흔히 관찰되었다고 보고했다. 19명은 지역 타인 남성이 흔히 관찰되었다고 언급했다. 지역사회 구성원, 부모, 양부모 또한 확인되었다.

가해자가 여성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참가자들은 권위자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두번째로 가장 많은 응답은 지역사회 구성원이었다.

Figure 5. 남성 아동성착취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가해자가 남성일 경우 피해자와의 관계 (N=47)		
	n	%
권위자 (예: 교사, 종교 지도자)	27	57%
지역 타인 (내국인)	19	40%
지역사회 구성원 (18세 이상)	15	31%
지역사회 구성원 (18세 미만)	15	31%
부모/양부모	11	23%

가해자가 여성일 경우 피해자와의 관계 (N=47)		
	n	%
권위자 (예: 교사, 종교 지도자)	22	46%
지역사회 구성원 (18세 이상)	17	36%
그 외 친척관계 (18세 이상)	9	19%
지역 타인 (내국인)	9	19%
지역사회 구성원 (18세 미만)	7	14%

\* 참가자별로 3개의 응답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의 합은 100이 아니다.

## 여아 관련 사례의 가해자

참가자에게 여성아동성착취 사례에서 가장 흔한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질문하였다(Figure 6). 흥미롭게도 남아의 경우와 다른 추세가 관찰되었다. 참가자가 가장 많이 응답한 것은 지역 타인(n=29)이었고, 그 다음으로 부모/양부모가 많았다.



가해자가 여성인 경우 지역사회 구성원 이 가장 높았다.

Figure 6. 여성 아동성착취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가해자가 남성일 경우 피해자와의 관계 (N=56)		
지역 타인 (내국인)	29	52%
부모/양부모	28	50%
지역사회 구성원 (18세 이상)	19	34%
그 외 친척관계 (18세 이상)	12	21%
형제자매 (18세 미만)	9	16%
가해자가 여성일 경우 피해자와의 관계 (N=56)		
지역사회 구성원 (18세 이상)	17	30%
지역 타인 (자국민)	16	28%
그 외 친척관계 (18세 이상)	11	19%
부모/양부모	10	17%
지역사회 구성원 (18세 미만)	8	14%

\* 참가자별로 3개의 응답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의 합은 100이 아니다.

## 다양한 성 정체성의 청소년 사례

참가자에게는 다른 성별이나 논바이너리의 청소년과 진행한 작업을 설명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하였다. 12명의 참가자가 이 세션을 완료하였다.

그 중 대부분은 트랜스젠더 또는 논바이너리 아동에 대한 제한된 인식이나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일부는 트랜스젠더 또는 논바이너리 내담자와 작업한 경험이 없었다고 답했고, 2명은 그들이 지원한 트랜스젠더 또는 논바이너리 아동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였다. 주목할만한 점으로 두 응답자 중 한명은 “여자의 성별로 태어났지만 여자라고 불리고 싶지 않았던 아이를 지원한 적이 있다”(R96)고 말했고, 나머지 한 명은 “성전환 수술을 원하는 청소년 사례”를 언급했다(R130). 하지만 어느 응답자도 그들이 제공한 지원에 대해 세부사항을 제공하지 않았다.

나머지 응답자는 다양한 SOGIE 청소년들이 한국에서 직면하는 도전과제를 포함해 그러한 지원을 더 광범위하게 되돌아본다.

“논바이너리 아동은 그들 이야기를 듣는 사람 (상담가, 경찰 등)들이 자신을 지정된 성으로 인식하는 것에 대해 고통을 느끼는 경향이 있다. 성폭력에서 발생한 [트라우마] 고발 및 신고 절차 중에 그런 아동은 성별을 잘못 호칭하여 [다시 트라우마] 고통받거나 이를 우려하여 신고를 망설인다.” (R86)

다양한 SOGIE 청소년이 자신의 피해사례를 밝히더라도, 실무자의 경험과 다양성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직면하게 된다

“제3의 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성교육 상담을 하기는 힘들다. 상담가들조차 다양한 성 정체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상담가들은 성 정체성의 다양성과 그에 따른 교육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R130)<sup>43</sup>

다른 실무자들은 다양한 SOGIE의 아동이 직면하는 어려움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였고 성적 학대와 착취의 피해자로서 그들의 유일한 요구 또는 고찰사항을 최소화하거나 심지어 간과하는 것처럼 보였다.

“많지는 않지만 성폭력의 피해자인 한 성 정체성과 상관없이 지원을 제공한다. 외상 지원의 원칙은 성 정체성을 기반으로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R27)

또 다른 참가자는 청소년을 위한 성 정체성 문제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처럼 보였다.

“십대 내담자의 경우 자신의 성 정체성에 대해 확신하지 않는 것 같다. 일부 여자 청소년은 자신이 동성애자라고 말하고 같은 성별의 애인이 있으며, 자신의 성 정체성을 생각한 후에는 결국 남자와 결혼하게 된다. 청소년기는 아동이 자아 정체성에 혼란을 겪는 것처럼 성 정체성에도 혼란을 느끼는 기간으로, 혼란스러운 느낌을 받아들이고 자신을 하나의 감정으로 제한할 필요가 없음을 알려주는 것이 좋을 듯하다.” (R193)

43 원문: “성 교육적 상담 어려움, 제3의성? 다양한 성정체성에 대한 상담원 스스로 이해가 부족 - 성정체성 다양하는 것에 대해 인정하고, 교육이 필요함.”

## 관찰된 성착취 유형

참가자들에게 그들이 담당하는 남아와 여아에 대한 성착취 유형을 질문했는데, 직접 경험한 다양한

형태의 학대와 착취를 언급했다. 참가자 대다수는 남아의 성착취 생존자와 지식, 인식 및 경험이 현저하게 적다고 보고하였다.

### 여아 내담자:

- 80%가 성적인 목적으로 그루밍을 경험한 여아들을 직접 지원한 경험이 있었다.
- 2/3은 성적인 사진과 영상을 스스로 찍어서 공유한 여아들을 직접 지원한 경험이 있었다.
- 46%는 아동 성착취물(CSAM) 제작 중에 성착취를 경험한 여아들을 직접 지원한 경험이 있었다.
- 1/5은 성적 목적으로 인신매매를 당한 여아들을 직접 지원한 경험이 있었다.
- 3명의 사회복지사는 성착취 라이브스트리밍을 통해 착취를 당한 여아들을 직접 지원한 경험이 있었다.

### 남아 내담자:

- 절반 정도가 성적인 목적으로 그루밍을 경험한 남아들을 직접 지원한 경험이 있었다.
- 1/4은 성적인 사진과 영상을 스스로 찍어서 공유한 남아들을 직접 지원한 경험이 있었다.
- 7명의 응답자만 아동 성착취물(CSAM) 제작 중에 성착취를 경험한 남아들을 직접 지원한 경험이 있었다.
- 성적 목적으로 인신매매를 당한 남아들을 직접 지원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없었다.
- 성착취 라이브스트리밍을 통해 착취를 당한 남아들을 직접 지원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없었다.

## 남아와 여아에 관한 요인 제시

성착취 대상이었던 청소년들이 항상 대화로 도움을 요청하지는 않으며, 다른 이유로 도움을 구하고 지원자와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확보하고 나면 공개할 수 있다. 따라서 도움을 구할 때 남아와 여아가 제시한 문제에 대해 응답자에게 질문하였다. 두 집단의 대부분이 트라우마 혹은 다른 학대의 영향을 보고한 반면, 남아와 여아 집단간의 일부의 격차가 관찰되었다.

46명(82%)의 응답자가 남아에 대한 이슈를 제시해달라는 문제에 응답하였고, 18명(40%)의 응답자가 성착취와 학대의 영향 또는 외상의 형태를 설명하였다. 한 응답자는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피해자로서]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와 관련해 [내담자 간] 극심한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응답자들은 수많은 온라인 아동성착취와 관련된 문제를 설명했는데, 아동성착취물 제작과 온라인에 유포되는 사진에 대한 두려움도 포함된다. 이보다는 적지만 성적 성 관련(n=3), 관계(n=2), 성 정체성에 관한 혼란/우려(n=2), 성적 취향(n=1)도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2명의 참가자는 남아의 학교와 인생에 관한 문제를 언급했다.

55명의 참가자(98%)는 여아에 대한 이슈를 제시해달라는 문제에 응답하였고, 응답은 확실히 다양하게 나타났다. 53%(n=29)는 성착취와 학대의 영향 또는 외상의 형태를 설명하였다. 7명의 실무자는 그루밍의 보고된 사례를 비롯해 아동의 성적인 사진이 공유될 것이라는 두려움과 같은 온라인아동성착취 관련 문제를 설명하였다. 이보다 적지만 응답자들은 여아들이 처음에는 또래 관계(n=5) 관련 도움을 요청했다고 답했다. 소수의 응답자는 경제적 문제, 가정 문제, 아동성착취와 관련된 법률적 보상책, 여아 부모에 대한 지원, 성건강, 자해와 자살 생각과 관련해 도움을 구하는 여아들을 언급했다.

남아의 경우 제시하는 문제는 단순하고 일반적으로 설명되어 여아의 답과 미묘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주목할만한 점은, 남아의 경우 참가자들이 여아사례에서는 논하지 않은 젠더와 성에 관한 혼란이나 두려움을 포함한 성(sex and sexuality)과 관련된 이슈를 더 많이 이야기하였다.

## 예시 시나리오

실무자는 불평등한 권력관계, 성 규범, 기타 공통 취약성을 반영하는 성착취에 관한 4개의 가설 시나리오를 받았다. 참가자는 주어진 시나리오에 대한 질문에 답한 뒤 이어지는 추가 정보와 상황을 읽고 이어지는 질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각 시나리오에 따라 참가자에게는 만약 시나리오와 같은 아동을 지원한다면 어떤 지원절차가 있을지 질문하였다.

### “준”

**19세 남아 준이 17세 사촌 현을 촬영하면서 옷을 벗으라고 시키고 돈을 준다. 현은 아무 걱정 없이 동의한다.**

첫 번째 시나리오에서 19세 준이 17세 사촌 동생 현을 촬영하면서 옷을 벗으라고 시키고 돈을 주고 현은 아무 걱정 없이 동의한다는 짝막한 글을 응답자에게 제공한다. 4명을 제외한 실무자 전원인 현은 성적으로 착취당했다는 의견에 동의했는데, 4명 중 2명은 현이 피해자가 아니라고 말하였으며, 나머지 2명은 확실치 않다고 말했다.

**“이후에 준은 아무나 볼 수 있는(접근하는 데에 돈을 지불할 필요가 없는) SNS 계정에 영상을 게시하였다.”**

추가 공개로 2명을 제외한 전원은 준이 성착취를 저질렀다고 생각했는데, 2명 중 1명은 이에 반대했고 나머지 1명은 아동성착취물을 온라인으로 공유하는 것이 명백하게 아동성착취로 간주되는지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준 또는 현을 알지 못하는 숙이라는 사람이 국내 어딘가 위치하는 집에서 온라인으로 영상을 발견하여 시청한다.”**

이 정보를 받은 대다수 실무자(84%)는 아동성착취물을 시청하는 것이 성착취라고

평가했으나, 표본에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2명의 실무자가 숙이 성착취를 범하지 않았다고 말했고 7명은 불확실하다고 답했다.

실무자가 제시한 직접적 응답 또는 ‘지원절차’는 대개 표준 및 표면적으로 기술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응답을 포함한다.

- 모든 웹사이트 보고
- 영상 제한 및 삭제
- 영상 복사본 검색 및 삭제 지원
- (형사) 조사 및 법적 지원
- 가족 상담과 지원.

### “강”

**강은 7세 남아로, 어머니가 시골 마을에서 그날그날 벌어 생활한다. 강의 삼촌 춘은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언제나 가족을 금전적으로 지원해왔다. 최근에 강의 가족을 방문한 삼촌 춘이 강에게 무릎 위에 앉으라고 했다.**

이 정보를 받은 응답자에게 강이 성착취를 경험했다고 생각하는지 물었다. 1/3 이상이 강은 성착취를 당했다는 데에 동의했고, 약 2/3에 달하는 응답자는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30%는 성착취가 아니라고 말했고 24%는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강이 춘의 무릎에 앉아 있을 때 춘은 강의 은밀한 부위를 만지기 시작했다. 강의 어머니가 방에 들어오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한다. 춘은 강의 어머니에게 오늘 가족을 방문하게 되어 얼마나 기쁜지 인사를 하면서 돈을 건네준다.”**

2명을 제외한 모든 응답자(96%)가 춘이 성착취를 범했다고 생각했는데, 2명 중 1명은 성착취가 아니라고 말했고 나머지 1명은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강의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문을 닫고 집 밖으로 나가버렸다.”**

응답자의 84%가 강의 어머니도 성착취를 범했다고 생각했고, 5명은 그녀가 강을 착취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으며, 4명은 불확실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참가자가 응답한 지원절차는 표준적이었다.

- 강의 어머니를 상담하면서 성적 트라우마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지하고 재발을 막기 위한 보호대응을 교육한다
- 강의 안정을 위한 심리상담을 제공한다
- 가해자를 신고함으로써 보호조치를 취한다.

**“김”**

**김은 열심히 일하는 자신에게 자부심을 느끼는 16세 남자 청소년이다. 이웃 중에 희라는 어른이 농장에서 일손을 도와주면 돈을 지급하겠다고 요청했고, 기쁜 마음으로 도왔다. 김이 농장 주변에서 일을 할 때 희는 점심을 먹기 위해 김을 집으로 초대한다. 희는 김의 가까이에 앉아 이야기를 하면서 팔을 만졌다. 김은 매우 불편하게 느꼈다.**

대다수 응답자(84%)는 김이 성착취를 경험했다고 말했다. 이 경험은 성착취로 성립되지 않지만 희가 그녀의 직권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상황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응답자들은 시나리오에서 이러한 그루밍 행동을 파악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훌륭한 신호다. 4명의 응답자가 김은 착취당하지 않았다고 말했고, 5명은 불확실하다고 보고했다.

**“다음에 김이 농장일을 도울 때도 점심 시간에 같은 일이 일어났다. 이번에는 스리가 김의 허벅지를 만졌다. 김은 이것도 매우 불편했다.”**

좀 더 분명한 상황에서는 3명을 제외한 모든 응답자(95%)가 김이 성착취를 당했다고 생각했는데, 1명은 그렇지 않다고 답했으며, 2명은 불확실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대한 '지원 절차'나 대응의 대다수는 성인 이웃의 '의도'를 결정하는 것을 포함해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고, 몇몇은 경찰 수사를 제시했다.

**“송”**

**송은 15세 남자 아이지만 외모는 좀 더 성숙해 보인다. 그는 스스로를 게이로 생각한다. 주말에 송은 남자들을 만나는데 이들을 ‘남자친구들’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그들과 성관계를 갖고 돈과 선물을 받는다. 이러한 만남에 대해 질문하자 송은 그의 선택이니 다른 사람은 신경 꺼야 한다고 말한다.**

응답자 대부분(86%)은 송을 성착취 피해자로 올바르게 파악하였으나 4명의 응답자는 그렇지 않았고 나머지 4명은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송이 만난 “남자들”을 고려할 때 5명을 제외한 모든 응답자(91%)는 남성들을 가해자로 올바르게 파악했다.

이 시나리오에 대한 지원 절차는 다양하다. 일부 응답자는 매우 공감적인 반응을 제시하였는데, 1명은 자신의 성을 수용할 수 있도록 송과의 대화가 중요하며 착취의 특성을 좀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만남이 자연스러울지라도(동성간 성관계를 의미하는 듯) 성적 표현이 15세 아동에게 적절했는지, 성관계 후에 받은 돈과 선물이 보상의 의미인지, 성적 취향 문제가 있는지를 논하기보다는 피해자와 성적 행위의 타당성에 대해 상담한다.” (R59)

다른 응답들은 아동의 교육이나 지원 그리고 가해자에 대한 법적 소송에 중점을 두었다. 한 응답자는 “성 정체성과 상관없이 보상이 있는 성관계는 안전한 관계가 아님을 반복하여 교육하고,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 상담을 제공할

것”을 제시했다(R134).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구체적인 지원 서비스로 의뢰할 것을 제시했으며, 십대여성인권센터로 의뢰를 제시하는 한 명도 포함되어 있었다.

## “박”

박은 17세 아이로, 스스로를 트랜스젠더로 밝힌다. 박은 시골에서 살다가 가족과 이웃의 차별을 받는다. 박은 도시로 이사를 하지만 머물 곳을 찾지 못한다. 박은 일자리를 찾지 못해 노숙 상태이다. 박은 먹고 살기 위해 가끔 남자들, 때로는 여자들을 만나 돈을 받고 관계를 갖는다. 박은 이러한 삶이 힘들지만 임시적인 것이라고 받아들인다.

마지막 시나리오에서는 17세 트랜스젠더 박을 소개했다(성별을 의도적으로 모호하게 남겨두었다). 5명을 제외한 모든 응답자(91%)가 박을 성착취 피해자로 올바르게 표현하였고, 4명은 피해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1명은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일찍이 박은 매춘으로 체포되어 유죄를 인정한다.”

이러한 세부사항에 대해 응답자들에게 박이 성관계를 위해 만난 남자와 여자들이 박을 착취했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했다. 4명을 제외한 모든 응답자(93%)는 성착취를 저지른 것이라고 올바르게 믿었다. 제안한 응답은 아동의 성적 성향 또는 성 정체성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법적 지원과 성 정체성 상담이 필요하다”는 박의 성 정체성을 학대/착취와 관련된 요인으로 동일시하는 것처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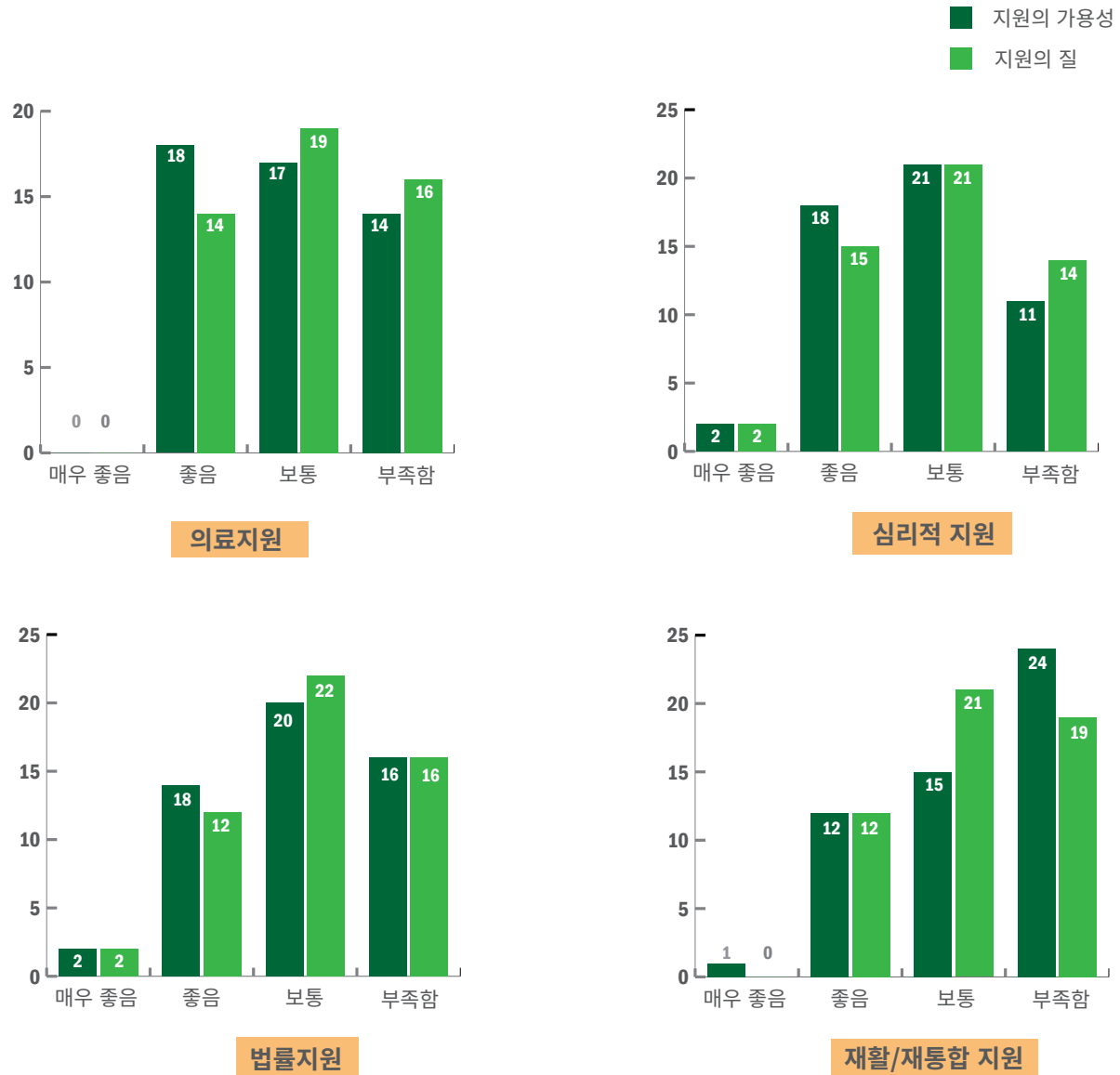
트랜스젠더 청년에게 더 문제가 되는 대응 중 하나는 그들의 정체성에 관한 개입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였다. “(아이가) 성 정체성에 대해 검사와 상담이 필요해 보이고, 보상이 있는 성관계에는 처벌이 필요하다는 걸 설명해야 한다.”

## 기존 지원 서비스의 가용성과 서비스의 질에 대한 의견

참가자에게 한국에서 성착취 경험이 있는 남아를 위한 기존 지원 서비스의 가용성과 서비스의 질을 평가해달라고 요청하였다. Figure 7은 응답자가 국가 전반적인 다양한 지원 서비스의 이용가능성과 질에 대해 낮음-중간 수준의 견해를 갖고 있음을 설명한다.



Figure7. 대한민국 기존 지원 서비스의 가용성(availability)과 서비스의 질(quality)



지원 서비스의 가용성과 질은 ‘좋음’과 ‘부족함’ 사이로 판단되었고, ‘매우좋음’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극소수였다. 의료지원과 심리적 지원은 ‘보통’ 점수를 받는 경향이 있었고, 재통합 지원은 가장 이용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 남아를 위한 지원 서비스의 제약

참가자들에게 남아를 위한 지원 서비스에서 질적인 제약이 발생하는 이유를 물어보았고, 그 답을 사회적 문제(통념, 편견), 실무자의 문제(경험이나 인식

부족), 남성(과 젠더)에 대한 이슈, 그리고 제도적 문제로 분류하였다.

- 사회적 문제:** 17명의 참가자(32%)가 다양한 가부장적 및 성 규범을 설명했다. 이는 피해자가 남자일 때 심각성을 최소화하거나 남아는 성폭행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생각을 비롯해 남아는 모든 섹스를 좋아한다고 추정하는 남성의 성성향에 대한 개념을 포함한다. 응답자는 남성의 희생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 가부장적 ‘불쾌감’을 언급하기도 했다. 한 응답자는 “

피해를 수치스럽다고 생각해 숨기는 문화”를 설명했다.

- **실무자의 문제:** 11명의 참가자(21%)는 남성 내담자와 작업한 경험 부족이나 인식 문제에 중점을 두었다(가끔은 남성은 지원 서비스를 모색하지 않는다고 언급하면서). 그들은 남성이 약하다거나 그들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결여되어 있다고 강조한다. 한 참가자는 여성만 피해자라는 인식을 지적했고, 또 한 명은 남아 위주로 사건이 발생할 때 실무자들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 **남성과의 문제:** 6명의 참가자(11%)는 남성이 공개를 꺼리는 것처럼 인식되어 남성과 문제를 설명했다. 이를 “남자들은 돕고 싶어 하지 않는다”로 설명했다. 또 다른 응답자는 “피해자가 스스로 신고하지 않으면 인정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썼다.
- **제도적 문제:** 6명의 참가자(11%)는 제도적 문제로 인해 서비스의 질이 제한된다고 언급했는데, 바로 기관들이 남아를 지원하는데 지원 또는 투자를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 참가자는 많은 지원 서비스들이 여성 피해자 전용이라고 설명했고, 2명은 남성 피해자의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언급했다.

## 서비스의 질적 제고

제약에 대한 질문 이후 참가자들에게 해결책을 제시하도록 요청했다. 이를 4개의 주제로 분류하였다.

- **인식:** 20명(38%)의 실무자는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나서서 신고하도록 장려하는 이니셔티브 또는 옹호 캠페인을 통해 남성 피해자에 대한 인식 개선을 제시하였다. 한 명은 “[아동성착취]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고, 용기를 내어 도움을 요청하는 데에 얼마나 많은 힘이 필요한지에 대해 스스로 인정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자기효능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R208)

- **제도적 또는 정책적 변화:** 16명(30%)의 실무자는 그들 사이에 같은 주제에 대한 전문성, 제도적 발전을 제시하였다. 일부 구체적인 해결책은 신고구조 개선, 남성 피해자를 더 잘 인지하기 위해 모니터를 민감화하는 사이버 수사 기법, 정부로부터 자금조달 및 더 나은 인식을 포함한다.
- **사회 및 사회적 변화:** 11명의 실무자(21%)는 남성을 인식하는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는데, 남성 피해자를 향한 대중의 사고방식을 전환하고 성 규범에 도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다양한 교육 형태:** 8명(15%)의 참가자가 직원을 위한 교육을 제시하였는데, 남성 내담자를 위한 외상 지원이나 전문가 교육을 예로 들 수 있다. 1명은 “성폭력으로부터 피해와 관련되는 한 성별과 상관없이 피해의 심각성에 대해 사람들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R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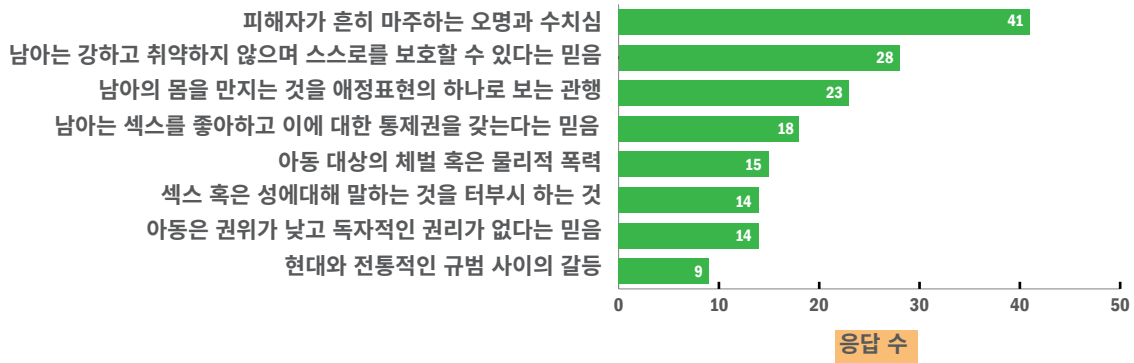
## 남아에게 영향을 미치는 취약 요인

참가자들에게 성착취에 대한 남아의 취약성에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광범위한 요인 목록을 2개 제공하고,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선택하도록 요청하였다. 취약 요인의 선정은 여러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다양한 범위의 배경에서 연구 및 실무의 결과를 기반으로 했다.

### 취약요인 1: 통념과 관행

응답자 대부분(73%)은 남아가 직면하는 오명과 수치심이 남아에게 취약 요인이라고 생각했다. 또한 공통적으로 “남자 아이들은 강하고 취약하지 않으며 스스로를 보호할 줄 안다”고 믿는 점과 “남아는 성관계를 즐기고 이에 대한 통제력을 가진다는 믿음”, 그리고 공개적으로 성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느끼는 불편함 등이 있었다.

Figure 8. 남아의 성착취 피해 취약요인이 되는 통념 혹은 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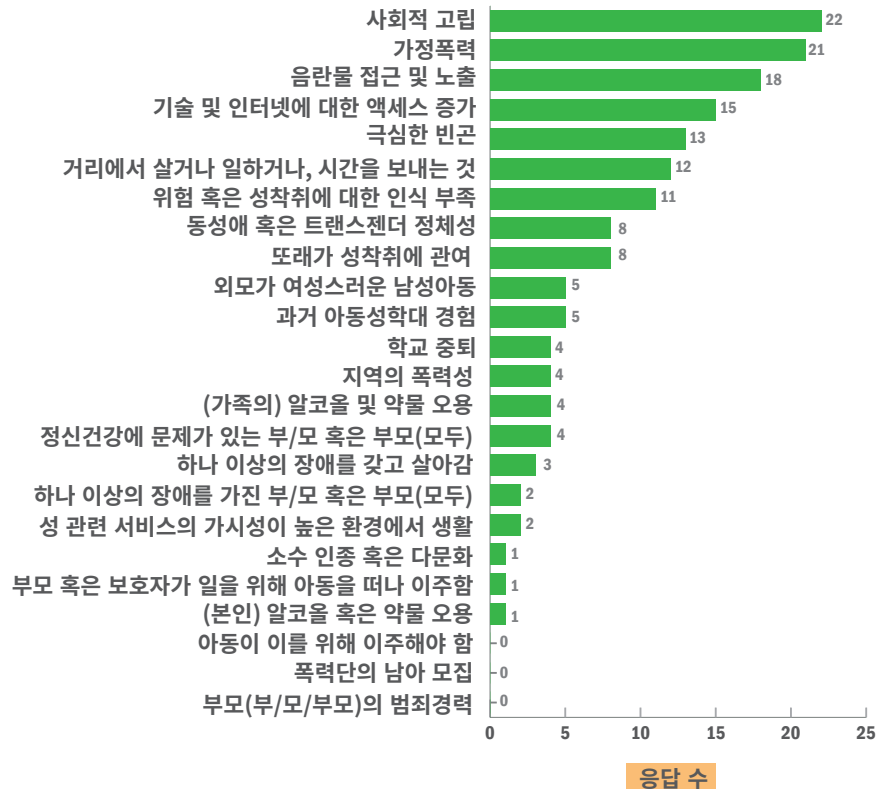
\* 참가자별로 3개의 응답을 선정할 수 있다.

## 취약요인 2: 사회 및 경제적 취약성

“극심한 빈곤”(23%), “거리에서 살거나 일하거나, 시간을 보내는”(21%) 것 등 경제적 요인이 전통적으로 취약성을 높이는 것으로 이해되지만 이는 가장 흔히 파악되는 취약성은 아니었다.

사회적 고립(39%), 가정폭력(37%), 음란물 접근 혹은 노출(32%)이 가장 흔하게 확인되는 사회 및 경제적 취약성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고립”은 설문조사에서 신뢰할 수 있는 관계의 보호자 또는 또래 관계의 결여로 정의되었다.)

Figure 9. 남아의 성착취 피해 관련 사회경제적 취약성



\*참가자별로 3개의 응답을 선정할 수 있다.

다양한 성과 성 정체성에 관한 취약성 요인은 더 낮게 응답하였다. 가장 적게 언급한 요인들로 “(가족의)알코올 및 약물 오용”, “(본인)알코올 혹은 약물 오용”, “하나 이상의 장애를 갖고 살아감”, “하나 이상의 장애를 가진 부모”가 있었다.

## 실무에서 발견하는 주요 취약요인

참가자들에게 업무 중 다양한 취약요인에 대응하는 방법을 설명하도록 주관식 질문을 제공했다.

응답 대다수는 남아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 취약요인에 대한 해결보다는 착취 혹은 학대 이후의 치료적 대응에 더 중점을 두는 것으로 보였다. 예를 들어, 사회적 고립과 가정폭력 등이 취약요인으로 가장 많이 언급됐음에도, 소수만이 환경적 요인들 - 남아의 가족 혹은 지역사회-의 개입을 언급하였고 대개 학대피해 이후 아동에게 교육적 개입을 제안하는 경향이 높았다.

이러한 중점은 설문대상의 대부분이 피해이후 지원을 담당하기 때문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방 및 취약요인 대응을 위한 인식개선 및 공공보건상의 개입은 남아성착취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주로 치료적 개입에 중점을 두긴 했으나, 응답자들 중 많은 수가 아동 내적의 오명과 젠더통념을 깨뜨릴 수 있도록 하는 공감적 치료의 필요성 또한 언급하였다.

일부 응답자는 남아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에 따른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했는데, 이는 성적 학대와 착취에 대한 남아의 취약성을 어느 정도 줄이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믿었다. 한 응답자는 성평등과 성적 권리를 교육함으로써 취약 요인을 줄이고자 하는 “성문화 교육 프로그램”(R22)<sup>44</sup>을 담당 기관에서 제공한다 답했다. 하지만 이러한 프로그램은 성 피해아동보다는 가해아동에게 주로 제공된다는

것도 언급했다. 응답자는 “남아는 상담에서 종종 가해자로 방문하곤 하지만(소년범 교육), 우리는 편견 없이 아동을 상담하려 한다”고 말한다. (R22)<sup>45</sup>

## 성찰: 성착취에 대한 남아의 취약요인

많은 지원 서비스들이 성착취 발생 후 임상적 지원에 중점을 두는 듯 보인다. 개인의 치료과정에서 지속적인 취약성을 다룰 수 있으나 남아의 전체적 삶의 생태계 (예: 가족과 지역사회 중심적인 지원 제공)를 고려하는 접근법이 더 큰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실무와 연구를 통해 취약성을 이해할수록 남아에게 집중한 예방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지식 증가는 실무자를 위한 훈련 개발과 효과적으로 남아들과 일하기 위한 전략으로 통합되어야 한다.

## 남아가 성착취 피해를 밝히기 어렵게 하는 장벽들

참가자에게 문헌연구를 통해 정리한 목록을 제시하며 남아가 성착취 피해를 밝히기 어렵게 하는 장벽요인을 선택하도록 하였고, 그 결과 두가지 주제가 눈에 띄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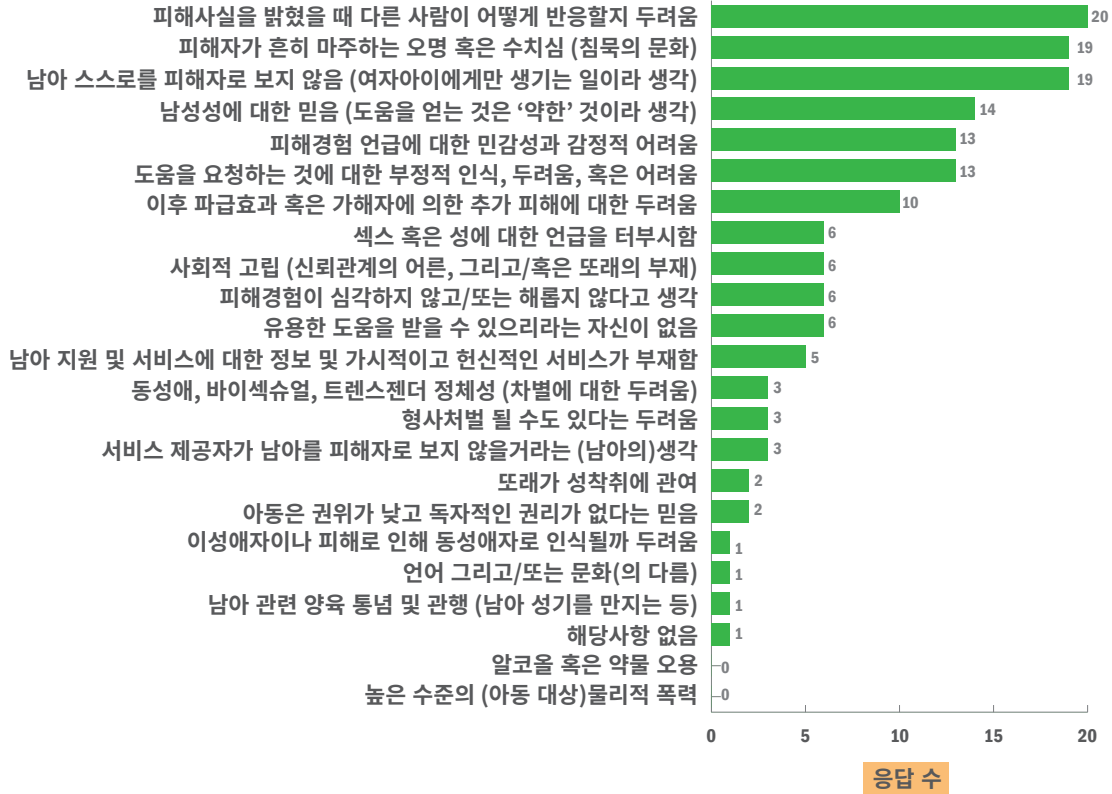
19명의 참가자(38%)는 남아들이 스스로를 피해자로 정의하는 것조차 꺼린다고 답했다. 마찬가지로 타인이 그들의 피해사실 공개에 어떻게 응답할 것인지에 대한 두려움도 가장 많이 언급됐다 (예: 그들을 비난하거나 처벌하거나 불신하거나 놀림을 당하는 등). 이러한 장애물은 남성과 여성 피해자가 공통으로 공유하지만 남성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인식과 남성성에 관한 성

44 원문: “우리 기관에서는 이런 젠더 불평등적인 요소를 예방하기 위해서 꾸준히 아동들을 대상으로 성문화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45 원문: “상담에서는 남성 아동은 가해자로 방문하는 경우가 더 많지만 (가해아동 교육 프로그램), 상담으로 오는 경우에도 되도록이면 편견을 갖지 않고 아동을 대하도록 노력한다.”

통념으로 복잡해질 수 있다. 15명(27%)의 참가자는 '약한 것이다'이 흔한 장애물이라고 언급했다. 사실 남성성에 대한 믿음(예: 도움을 얻는 것은 '약한 것이다')

Figure10. 남아가 성착취피해를 밝히기 어렵게 하는 장벽들



\* 참가자별로 3개의 응답을 선정할 수 있다.

두 번째 주제와 관련해, “피해자가 흔히 마주하는 오명 혹은 수치심”은 남아가 지원 서비스를 구한다는 사실을 밝히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으로 여겨졌다(34%). 이는 “피해경험 언급에 대한 민감성과 감정적 어려움”과 “가해자에 의한 추가 피해와 보복에 대한 두려움” 과 함께 분류할 수 있다. 연구에서는 이러한 장벽을 여성들도 흔히 경험한다고 나타낸다.<sup>46</sup>

### 장벽에 대한 실무자의 통찰

응답자에게 다시금 남아와 작업하면서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장벽요인에 대응하는 방법을 물었다.

취약성과 마찬가지로 응답자들은 주로 문제의 대응 측면에서 제공되는 지원에 중점을 두었는데, 지원, 상담 및 치료 제공을 가장 공통으로 설명하였다. 피해 사실을 밝히려는 청소년들은 시각적이고 효과적인 서비스를 주시하기 마련이므로 이는 매우 타당하다.

일련의 응답은 지원적 관계에 필요한 다양한 개인적 자질을 설명하였는데, 신뢰와 신뢰할 수 있는 관계 구축, 안전한 환경 조성 및 제공, 편견 없는 안전한 환경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일련의 응답은 다양한 주제에 대해 지원 실무자를 위한 교육에 중점을 두었다. 여기에는

46 엑팓 인터내셔널. (2017). Through the Eyes of the Child: Barriers to access to justice and remedies for child victims of sexual exploitation.



비밀유지, 경청, 확인과 포용, 격려, 공감, 자기비난 회피 지원, 죄책감 다루기, 두려움 다루기, 남아를 향한 존중 도모, 사회적 통념 논의, 성인지 감수성,

성문화 교육, 피해회복에 걸리는 시간 이해하기, 개인에 대한 존중감 도모하기가 포함된다.

## 성찰: 피해 공개장벽

한국에서 남성과 남아에게 요구되는 성 통념은 남아들이 지원 서비스에 접근하거나 피해를 밝히는 것을 막는 광범위한 요인과 직접 상관된다. 응답자는 설문조사에 걸쳐 다양한 변수에서 남성성이나 성 통념과 관련된 장벽을 강조하였다. 한 응답자는 “한국에서는 남성이 강하다는 일반적인 추측이 있고, 남자는 성착취의 피해자로 동일시하기가 힘들며, 설사 용기를 내더라도 주변 사람들 때문에 남성 피해자가 진단, 상담,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받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R50)<sup>47</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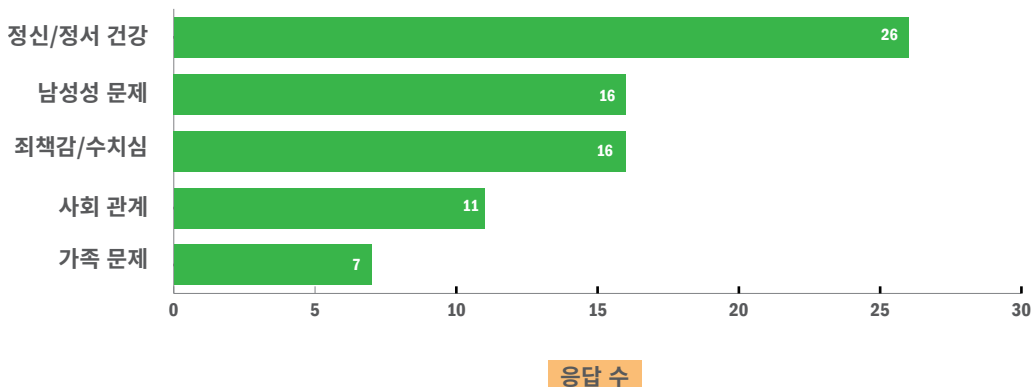
응답자는 성 통념으로 인해 남아들을 피해자로 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했다. 한 응답자는 “[남아와 관련해]연락하는 사람의 수가 매우 적고, 피해자 대신 성인 목격자가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다. 피해자가 경찰이 개입하는 사건은 망설이기 때문이다.” 응답자는 이러한 통념은 남아가 상황을 바라보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고 덧붙였다. “피해자는 남성이 성폭력의 피해자가 된다는 생각에 거부감을 느낀다.” (R116)<sup>48</sup>

## 가장 심각한 문제

지원 실무자들에게 “남아들은 자신들이 겪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라고 말하나요”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주관식으로 요청하였고, 이에 흥미로운 통찰을 얻을 수 있었다. 설문은 남아가 무엇을

말하는지 질문한 반면, 그에 대한 답변은 성착취피해 남아들이 쉽게 언급할 것 같지 않은 매우 전문적이고 구조화된 임상 및 정서진단과 제도개선 및 교육적 지원의 필요성 등이 주가 되었다. (Figure 11)

Figure11. 남아들이 겪는 가장 심각한 문제



47 원문: “한국에서의 남성은 강하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성착취 피해자라고 쉽게 말하기는 어렵고 용기를 낸다고 해도 주위의 시선들이 많이 의식이 되어 진료 및 상담, 심리치료 등의 지원 등을 받기가 원활하지 않을 것 같다. 남성은 강하여 스스로 보호할 수 있고 여성은 약해서 돌봐줘야 한다는 사회적 의식구조 변화가 필요하고 성착취 피해자는 본인들의 잘못이 아님을 알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용기를 줘야 한다.”

48 원문: “서비스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어려움 접촉 인원이 굉장히 소수이며 본인이 아닌 일반 성인 목격자에 의한 신고도 있음 경찰 단계로 넘어가는 것을 꺼림 남자가 성폭력 피해자가 된다는 것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큼 우선 접촉할 창구가 확대되는 것이 중요”

가장 두드러진 것은 사회복지사의 절반 정도(49%)가 트라우마, 성적 중독, 성 정체성에 대한 혼동 등 다양한 정신적 및 정서적 건강 문제를 들었다. 이후 약 1/3의 응답(29%)이 성별과 관련해 광범위한 문제를 설명했다. 또 30%는 죄책감과 수치심을 비롯해 자신을 피해자로 정의하는 것과 관련된 오명(그리고 낙인 찍히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설명했다. 가장 두드러진 주제는 아래에 설명되어 있다.

- **정신적/정서적 건강:** 복잡한 성적 트라우마의 정상화와 인지하지 못한 트라우마를 포함해 다양한 형태의 트라우마에 대해 중점을 둔 정신/정서적 건강 문제에 대한 응답. 이러한 응답 중 5개는 성 정체성에 대한 ‘혼동’을 포함했다. 불안, 우울증, 자살충동, 낮은 자존감, ‘의욕 상실’, 분노, 자기혐오감을 포함한 다양한 심리적 문제도 설명하였다.
- **남성성 문제:** 남성성과 관련된 문제로는 스스로를 방어하지 못했다는 내재화된 죄책감/수치심, 남성과 남아에 대한 제도적 ‘편견’ 등 외부 요인을 포함했다. 가장 흔히 설명되는 것은 자신의 말을 믿지 않고 피해자로 보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자신들을 비난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기가 까다롭다는 점이었다. 그 외 응답은 다양한 사회 및 문화적 ‘편견’이나 남성과 남아에 대한 추측을 중점으로 했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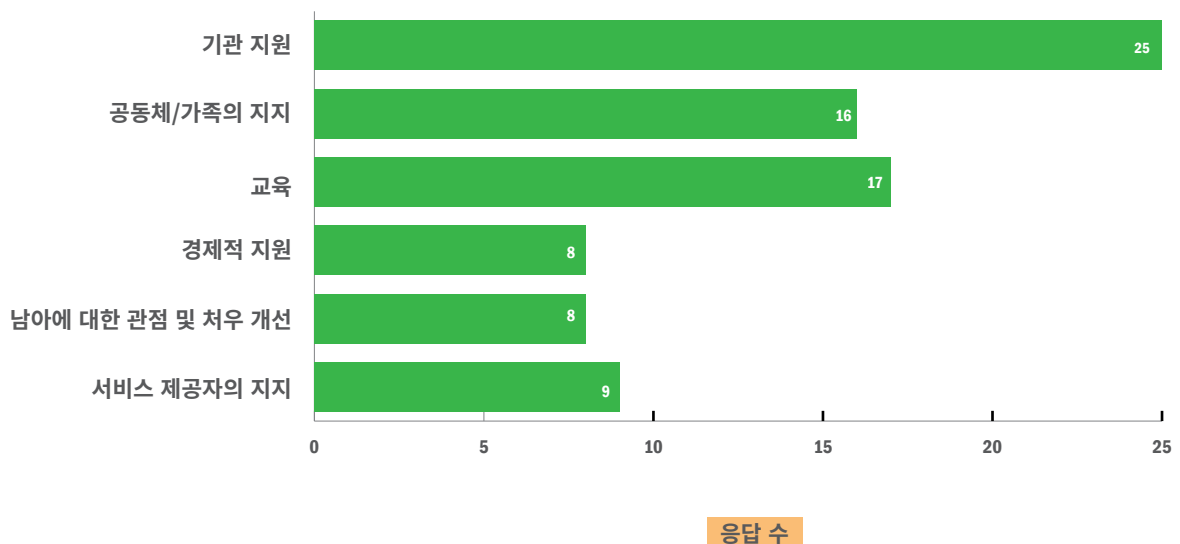
남아에 대한 사건은 적절한 사법개입이 없으리라 생각하며 가해자가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 느끼는 것을 포함했다.

- **죄책감/수치심과 오명:** ‘들키는 것’에 대한 두려움, 남자로서 자신을 방어하지 못했다는 것과 관련된 굴욕, ‘낙오자’가 될 것 같은 다양한 두려움을 포함해 오명에 대한 응답. 위에서 설명한 다양한 남성성 추측과 함께 이러한 감정의 잠재적으로 유의미한 상호연계를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 **사회적 관계:** 참가자는 사회적 위축과 고립, 타인에 대한 불신, 또래 집단에서 소통과 대립/갈등에 어려움을 포함해 남아의 사회적 관계 문제를 설명하였다.

## 가장 중요한 니즈(Needs)

참가자들에게 남아들이 가진 가장 중요한 니즈가 무엇인지 질문하였다. 제도적 지원이 가장 많이 보고되었고(47%), 심리적 지원에 특히 중점을 두었다. 응답자 1/3(32%) 정도는 부모를 비롯해 남아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교육적 니즈를 설명하였다. 또의 1/3 정도는 주거 안전성과 또래 지원을 포함해 지역사회와 가족의 지원을 설명했다. 이는 Figure 12에 실려 있다.

Figure12. 남성아동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



# 남아 생존자(SURVIVOR)들과의 대화

## ‘한국에서 남자 아이로 사는 것’

대화를 시작하기 전 라포형성을 위해 2명의 참가자는 살면서 경험하는 젠더통념을 탐구할 수 있게 설계된 두 가지 활동에 먼저 참여하였다. 첫 번째는 진행자들이 제공한 단서와 가상으로 만들어진 소셜미디어를 통해 유명 연예인 3명을 가려내는 것이었다. 또 추가활동을 통해 게시글에서 한국사회에 현존하는 젠더통념을 찾아보았다. 그러한 메시지 중 대다수는 비난적 및 비평적 태도를 반영했고, 특히 남성과 남아의 다양성, 민감도 및 취약성과 관련이 있었다. 추가 논의를

통해 남아들이 이를 성찰하고 ‘전통적 성 통범’에서 벗어나 사고하며 좀 더 수용적이고 포용적인 진솔과 메시지를 확인하도록 장려하면서, 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거나 해로운 통념에 대한 이의를 제시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흥미롭고 참여적인 활동을 통해 참가자들은 ‘안전한 거리’에서 성을 탐구하고, ‘젠더 그래프’라는 도구를 이용해 이러한 규범이 그들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공유할 수 있었다.

아래 사진은 ‘방탈출’ 활동으로, 3면의 화면을 따라 벽에 숨겨진 상자를 찾아서 열어야 하는 활동이다.







하여 흔히 '남자아이답다'고 생각되는 행동을 함으로써 약하지 않고 터프하며 세상 물정에 밝은 정체성을 확인시키려는 필요성을 반영한 행동을 보였다. 흥미롭게도 대화가 진행되면서 관계와 신뢰가 쌓일수록 이러한 행동은 줄어들었다. 관계형성 이후 성과 관련된 문제를 터놓고 더 깊게 탐구할 수 있었으며, 개인적인 이야기나 감정을 솔직히 이야기할 수 있었다. 궁극적으로 두 남자는 이러한 기대에 대한 감정과 인생 경험에 대해 더 많은 통찰력을 공유하길 바랐다. 이는 남자가 성과 관련된 문제를 안전하게 탐구할 수 있도록 비판적이지 않고 안전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화한다.<sup>49</sup>

## 남자가 도움을 구하고 받는 경험

안전하고 보호적이며 비판적이지 않은 대화에 참여한 남자는 진행자와 자신의 경험을 더 편하게 공유할 수 있었다. 젠더 그래프 활동을 통해 한국의 독특한 '젠더 관점'을 고려하여 그들의 인생에서 일어난 사건을 더 깊이 탐구하였고, 가족이나 친구를 비롯해 타인에게서 도움과 지원 서비스를 구한 경험을 공유하였다.

두 남자의 응답은 젠더 관련 문제가 도움을 구하는 경험에 확실히 영향을 미쳤음을 나타냈고, 젠더가 그들과 주변 지원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지하고 있었다. 한 남자는 “사람들이 남자는 피해자로 보지 않아서 도움을 구하기가 힘들었다”고 설명했다.

참가자들은 힘든 경험에 대해 개인적인 이야기와 회상을 공유하고 이러한 사건이 그들의 인생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공유하였다. 가령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거나, 직접 학대를 당하기 전에 온라인 그루밍에 노출되거나, 가까운 사람에게 성착취를 당하는 경우가 있었다. 처음에 남자는 그래프에 상세한 내용을 쓰기를 꺼려했으나 말로는

기꺼이 자세한 내용을 공유하고자 했고, 진행자가 이를 기록하도록 해주었다. 이러한 유연하고 지지적인 접근법은 특히 유용하다고 할 수 있는데, 남자들은 그들이 가장 편안한 방식으로 스스로를 표현하도록 지원 받는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진행자는 의도적으로 남자의 피해 관련 추적(심문하는) 질문을 하지 않았고, 그저 남자들이 공유하기로 한 내용만 듣고 받아들였다. 이는 남자들이 심리적으로 안전하고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었다. 두 남자 모두 대화가 진행되면서 상세히 내용을 공유하기로 선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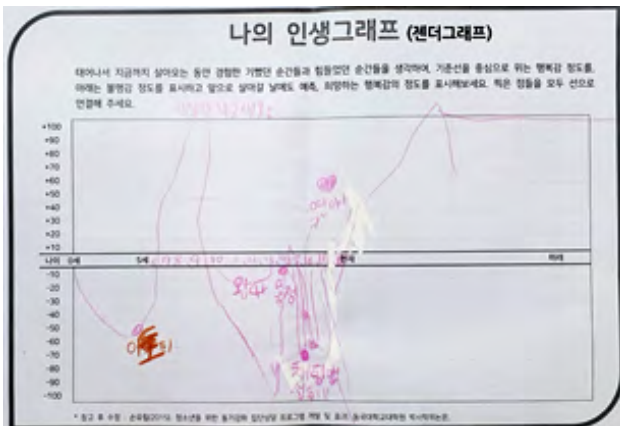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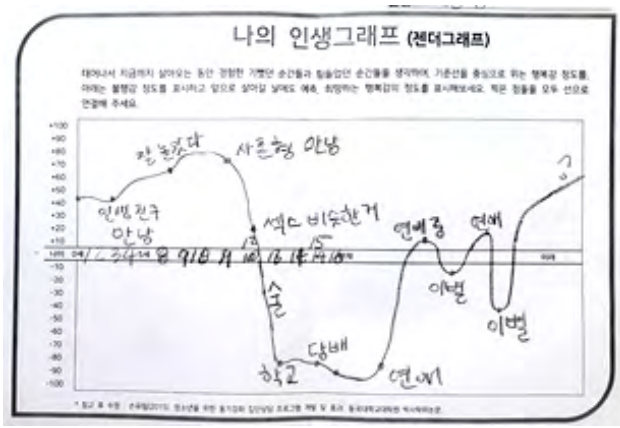
## 피해 발생 회피

두 남자는 성착취를 경험하고 각각 1년, 3년간 도움을 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둘은 비난을 받을 것을 두려워했고, 가족에게서 거절 당할 것을 걱정했다. 한 명은 처음에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 몰랐다고 말했다. 나머지 한 명은 처음에는 (온라인으로 연락해 그루밍을 경험하고 오프라인으로 학대당한 경우)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성착취였는지 인지하지도 못했다고 설명했는데,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자신이 '동의'했다고 인식했거나 적어도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볼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하면 경찰에게 처벌을 당할까 두려워했다.

“경찰이 저도 체포해 갈까봐 무서웠어요...”

“사람들은 남자를 피해자로 보지 않잖아요. 엄마에게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요.”

49 많은 배경의 실무에서 얻은 증거에 따르면 사회복지사는 처음에는 남자를 참여시키기 위해 노력하지만 그들과 '교감'하기가 어렵다는 걸 발견하는 건지도 모른다고 나타낸다.



위 사진은 워크숍에서 남아들이 완성한 ‘젠더 그래프’이다.

두 남자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부모나 선생님이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아채고 질문하여 지원을 제공하길 기대하고 바랐다고 설명했다. 그들은 정확히 무슨일이 일어난건지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이후 행동에서 많은 변화를 보였다 설명했다. 가령 학교 출석을 거부하거나, 음주 또는 흡연을 시작하거나, 성인용 데이트 앱을 사용하기 시작하는 등 위험을 무릅쓰는 행동을 하는 등이 해당했다. 뭔가 잘못됐다는 신호가 있었지만, 이를 누군가 눈치채거나 이해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도움의 외침보다는 ‘문제 행동’으로 오해하기도 했다. 어떤 측면에서는 그들 주변의 성인들이 아동의 피해에 대응할 수 있는 '기회의 상실'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인다.

“왜 알아채지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확실히 저한테 뭔가 잘못됐었거든요.”

“아무도 몰랐어요. 부모님은 제가 그냥 자퇴하려는 줄 아셨대요.”

다른 연구에서는 남아들이 착취당하고 학대당할 때 상당 기간 동안 공개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나, 문제적 혹은 반사회적으로 간주되는 행동을 통해 자신의 경험을 ‘외현화’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적절하지 않거나 문제 행동 자체를 다루는 치료 및 지원 프로그램으로 의뢰되기도 한다.<sup>50 51</sup> 그들이 경험한 성착취 및 학대에 적절한 지원을 받기 전에 남아들은 학교에서 괴롭힘, 무단 결석 혹은 우려를 자아내는 성적 행동을 포함해 다른 문제와 관련된 수많은 상담 프로그램과 교육과정으로 의뢰되었다.

## 온라인으로 도움 구하기

피해를 밝히고 적절한 도움을 구할 기회를 갖지 못한 남아들은 온라인으로 도움을 구하려 했으나 적절한 도움을 구하지 못했거나 다른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한 남자는 그가 “온라인으로 검색하기에 너무 어렵다”고 생각했음에도 정보를 찾아보았는데, “모든 센터는 여자아이들을 위한 곳”이었다고 말했다. 나머지 남자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이해하기 위해 도움을 요청하는 대신 성적 용어를 검색했는데, 그가 찾은 것은 음란물과 온라인 데이트 관련 ‘앱’과 웹사이트 뿐이었다.

## 도움을 구하고 지원 받기

결국 피해를 밝힌 남아와 부모들은 도움을 구하기 시작했으나 그 또한 쉽지 않았다. 지원 서비스 기관에서 부모에게 “저희는 여자아이들만 지원합니다”라고 말하거나, 다른 지원 서비스 기관으로 여러 차례 넘기기 일쑤였다.

50 Hilton 외 (2008). “I Thought it Could Never Happen to Boys: Sexual Abuse & Exploitation of Boys in Cambodia, an Exploratory Study.” 기관: 캄보디아의 사회복지사업(SSC).  
 51 아동 성폭력에 대한 시설 대응 조사를 위한 왕립위원회. (2017). Final Report: Volume 4, Identifying and Disclosing Child Sexual Abuse. 93.



한국의 법적 체제에서는 성착취 및 학대 피해자에 해당하는 남아와 여아는 동등하게 대해야 한다고 언급하지만, 아직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 보인다. 성 학대와 착취 피해아동을 지원하는 많은 기관들은 남아를 지원한 경험이 없어서 남아 사례를 수용하길 망설이며 다른 기관으로 의뢰하였다. 남아 중 한 명은 지적장애가 있었는데, 도움을 얻고자 연락했던 한 기관에서 그의 ‘독특한’ 상태, 즉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과 남아라는 이유로 지원을 제공하길 거부했다. 마침내 남아를 지원하던 기관으로 연계되어 심리적 지원과 법적 자문을 받을 수 있었다. 국제적 연구에서는 장애 아동이 착취 및 학대에 극도로 취약함을 나타내고, 모든 형태의 학대를 경험할 가능성이 몇 배나 높으며, 아동보호지원 서비스로 접근 시 아동과 가족은 상당한 장벽에 부딪힌다고 한다.<sup>52</sup>

지원 서비스의 목적은 적절한 지원자에게 피해아동을 연계하는 것이지만 남아들은 지원 서비스에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한다고 느꼈고, 별다른 성과 없이 다양한 지원 서비스로 연계되는 거절의 경험을 했다. 그들은 환영 받지 못하는 느낌을 받았다. 남아들은 기존 지원 서비스가 포용적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고, 성착취 및 학대피해 남아를 지원하는 데에 집중된 전담 지원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한 남아는 구체적인 지원 서비스를 언급하기도 했다.

**“여자 아이들만 지원하면서 왜 ‘전국’이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한 명은 이렇게 말했다.

**“남자 아이들을 위한 센터도 있으면 좋겠어요.”**

실무자 대상 설문조사 자료에서 보여주듯 실무자들 사이에 남아의 착취와 학대를 이해하는 수준이나 역량과 관련해 상당한 개선의 필요가 있다.

## 지원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남아의 인식

두 남아 모두 경험상 지원 실무자들 중 일부는 남아의 경우 여아처럼 심각하게 영향을 받지 않거나 빠르게 회복할 것이라고 여긴다고 말했다. 한 남아는 특히 남아를 위한 프로그램은 여아에 비해 기간이 짧았으며, 이유를 물었다. 나머지 한 명은 한 여자 상담사가 남아에게 중점을 두고 공감하는 대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와 학대 자체의 세부사항에 너무 집중하여 상담 경험이 좋지 않았다고 말했다.

**“저는 말로 표현하는 게 힘들었어요...그 분은 전문가시잖아요...제가 일일이 다 설명하지 않아도 저에게 일어난 일을 알 수 있었을 했어요.”**

전체적으로 그들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남아에게 기울인 주의가 부족했고, 그들이 연락을 위한 전문가들 중 일부의 역량에는 한계가 확인되었다.

## 가족, 친구 및 또래의 대응

남아들과의 대화에서 가족, 친구, 사회 구성원들의 대응과 지원을 알아보았고, 남아의 인생에서 더 광범위한 지원 체계의 중요성을 알아냈다. 성착취와 학대를 포함해 부정적인 경험을 한 아동에게서 회복탄력성을 도모하는 것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적어도 한 명의 무조건적으로 지지해주는 부모 또는 부모 대리인의 존재와 지원적인 사회망이 존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한다.<sup>53</sup>

피해를 밝혔을 당시 가족의 반응은 다양했는데, 성착취 대상이 된 아동이 마주할 여러 사회적 반응을 나타낸다. 한 남아는 아직도 부모님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전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52 장애아동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2015). *Literature Review*.

53 Masten, A.S. (2021). *Resilience in Developmental Systems: Principles, pathways, and protective processes in research and practice*. Ungar (Ed.), *Multisystemic resilience: Adaptation and transformation in contexts of chang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13-135에 포함.

이 아이의 아버지와 대화에서는 아들에게 적절한 도움을 구하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버지에게도 얼마나 스트레스를 야기하고 화나는 경험이었는지 알 수 있었다.

두 번째 남아는 피해 이후문제가 되는 행동(다른 사람에게 성적인 언어를 포함한 메시지를 보내는 행동)을 보였고, 결과적으로 아이의 어머니는 아들도 똑같은 행동을 했기에 아들을 피해자로 신고하는 데 회의적이었다고 밝혔다.

가족 외에, 두 참가자는 사고 시점 전후로 친구들에게 피해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자신의 경험을 숨기기로 했다고 보고했다. 한 남아는 최근에 학대 사실을 여자 친구들 몇 명에게 공개하면서 지원적 인 대응을 기대했지만 “잘 되지 않았다”며, 자신이 거짓말을 하고 과장한다 비난하여 결과적으로 더 고립되었다고 설명했다.

## 니즈(NEEDS)와 갭(GAP) 파악하기

도움을 구하는 경험을 공유하고 나서 참가자들은 나무에 중요한 요인을 나타내는 다양한 그림 카드를 이용해 건강하고 완전하게 자란 나무를 만들도록 설계된 ‘나무 만들기’ 활동을 시작했다. 물론 나무는 지원 서비스와 지원 니즈를 나타내는 데 사용되었고, 나뭇잎은 어려운 시기에 남아의 니즈를 나타내는 데에 사용되었으며, 다른 카드(태양, 영양소, 빗방울 등)는 채우고 충족시켜야 하는 구체적인 니즈와의 간극, 즉 갭을 나타낸다.

이 활동은 아동의 생각을 파악하는

데에 매우 성공적인 것으로 입증되었고, 남아들이 니즈와 갭에 대해 작성한 주요 설명과 용어는 아래 그림으로 시각화하였다. 몇 가지는 구체적이고 필수적인 개인적 니즈를 나타내는 것으로 관찰되었는데, 가령 구체적인 도움과 지도, 지원자와 지지자의 ‘자질’, 지원 서비스와 관련된 개선, 법률, 제도적 및 문화적 변화의 필요성이 포함되었다.

## 파악한 니즈와 갭

두 남아는 가족과 친구의 지원과 관련된 니즈와 갭, 명확한 정보와 남아를 위한 지원 서비스의 존재 및 가시성, 가해자 처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의 중요성을 논했고, 이는 아래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와 실무자를 위한 학습 기회로 해석할 수 있는 몇 가지 기본적인 중요한 니즈, 개인 및 기관의 대응에 관해 가능한 전략을 설명하며, 다양한 배경의 남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와도 비슷하다.<sup>54</sup>

## 친밀한 관계와 지원의 중요성

많은 니즈 중에서 남아들이 주로 찾는 것은 가족이나 친구처럼 친밀한 관계를 가진



54 엑팟 인터내셔널. (2021). Boys in Thailand would Stop Selling Sex if they Could.

이들로부터의 지원이었다. 그들은 그러한 관계에서 알아주고,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보호 받기를 원했다. 지원 실무자 설문조사 자료에 따르면 많은 실무자들이 남아는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추측했는데, 이는 어쩌면 남아의 피해를 대할 때 그들 스스로 가지는 불편함을 반영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한 실무자들의 응답은 아이들이 표현한 것과 상반됐다. 아이들은 문제를 계속 숨기고 싶어하지 않았고, 대신 그것을 누군가 알아채고 신고하거나 도와주길 바랐다. 터놓고 이야기하지 못한 것은 원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누구에게 이야기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었고, 일부 사례에서는 비난 받을 것 또는 처벌받을까 두려운 마음 때문이었다. 남아들은 그들이 힘들어할 때 부모가 알아차리지 못한 것에 대해 실망을 표하기도 했다.

**“제가 말은 안 했지만 알아차릴 수도 있었어요...근데, 물어보질 않았어요.”**

부모, 가족, 친구는 남아가 착취 또는 학대당했다 생각하기 힘들 수 있는데, 정신적 외상을 경험한 남아들이 피해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다양한 행동을 통해 자신의 고통을 외현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행동은 도움을 외치는 목소리나 근본적인 문제의 징후보다 ‘관심을 끌려는’ 반사회적 행동으로 고려되기 일쑤다. 남성의 성착취 피해와 도움을 구하는 행동은 강한 성 통념의 영향을 받기도 하는데, 남아들은 전형적인 학대 피해자의 이미지(순종적이고 수동적이며 눈물을 흘리고 대부분 여성에 해당하는)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이것을 피할 수 있다. 남아들은 그들이 받는 고통의 ‘단서’를 보였으나 간과되었다고 말하면서, 부모님들은 성착취와 학대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파악했다.

**“엄마는 제가 그냥 학교 가기 싫은 줄 알았대요. 엄마의 상상을 벗어난 일이었을 거예요.”**

## 실무자 포함 신뢰관계자

활동에서 또 다른 주요 주제는 남아가 현장 실무자들이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한다 느낀 것으로, 더 많은 훈련의 필요성을 암시한다. 한 남아는 자신의 경험을 설명할 올바른 단어를 생각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실무자가 자신과 착취에 대해 더 많은 지식이 있고 그가 경험한 상황에 대해 더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 명은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할 순 없었지만 상담사가 알아주었으면 했어요. 힘들었어요. 저에게 일어난 일을 말하기가 두려웠어요.” 남아는 그 상황을 이해하고 설명해주며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도록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았다고 설명했다.

한 남아는 생존자에게 매우 혼란스러울 수 있는 성적 학대에 대한 신체적 반응(예: 발기감)을 설명받고 제대로 이해할 기회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반응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조종하는 데에 사용하곤 하며, 아이 주변 사람들은 자발적인 참여로 오해하곤 한다.

남아들은 학대와 착취의 역학, 심리적 및 생리적 영향을 이해하고, 자신의 질문에 답을 해주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며, 차별과 비난 없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분명히 말했다.

## 성착취 예방 및 대응 교육

남아들은 학교에서 사춘기와 성에 대해 배웠지만 성적 학대 및 착취와 피해발생시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배우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그들에게 일어난 일이 성착취인지 알지 못했다고 말했으며, 스스로 대응하고 보호하는 방법을 알았더라면 나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남아가 성착취나 학대를 당할 가능성에 대해 알려주는 부모 교육 프로그램이 있었다면 그들의 문제를 적절하게 눈치채고 대응하기가 쉬웠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 대화 마무리하기

진행자들은 대화를 종료하기 전에 아동들이 정서적으로 지원을 받고 안정을 느끼도록 하였고, 중요하고 상징적인 활동을 계획했다. 첫 번째 활동은 ‘소금병(salt bottle)’ 만들기로, 남아들이 여러 색으로 된 소금과 자신을 위한 메모를 유리병에 넣고 ‘타임 캡슐’처럼 만드는 활동이다. 남아들은 포스트잇에 “10년 후에는 모든 성이 평등하면 좋겠다”와 “20년 후에는 성착취가 없었음 좋겠다”라고 썼다. 병을 밀봉하고 활동 참여의 기념으로 아이들이 병을 보관하였다.



마지막으로 남아들은 남아를 상대로 한 성착취 근절을 위한 지원을 강조하는 문구 또는 로고를 만들었다. 이 문구와 로고는 후드티에 새겨 후속 만남에서 건네주기로 하였다. 남아들은 대화과정을 검토하고 평가하기 위한 간략한 설문조사를 마치고, 과정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공유하였다. 그들이 한 말 중 일부를 아래에 공유하겠다.

“상담이랑 똑같겠지,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상담이 아니라서 마음에 들었어요.”

“이런 워크숍이 또 있을까요? 다시 하고 싶어요!”

남아들은 참여가 ‘재미’ 있었고 ‘다른 프로그램과 달랐다’고 말했다. 처음 계획한 것보다 더 오래 머무르고자 하였고, 향후에도 참여하려는 의사를 보였다. 많은 예상과 달리 남아들은 안전하고 지원적인 환경에서 민감한 주제에 대한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기꺼이 공유하고자 함이 분명해졌다.

# 법체계 분석

## 대한민국 법률에서 아동의 권리

대한민국은 성적 학대 및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형법 규정과 절차적 법을 채택하고 개정해왔다. 이를 통해 2장에 논한 국제협약의 의무를 대개는 준수해왔다. 하지만 법률적 간극이 존재하며, 아동에게 제공되는 법적 보호에 대한 개선의 여지가 있다. 이는 다음 절에서 상세히 논할 것이다.

대한민국 법률에 따르면 만 19세를 성인으로 한다. 하지만 아동은 많은 법에서 여러 용어를 이용해 정의한다.<sup>55 56</sup> 따라서 법률에 따라 ‘아동’, ‘아동청소년’, ‘청년’, ‘미성년자’, ‘청소년’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 여러 용어를 사용하지만 아동은 어떤 용어를 사용하는지에 따라 법률상 다르게 대해선 안 된다. 또 아동의 정의는 그것이 포함된 법률에 따라 다르다. 긍정적으로 보면 이러한 법률은 모두 18세 또는 19세 미만을 아동으로 정의하므로 일반적으로 국제적으로 수용되는 아동의 나이(18세 미만)<sup>57</sup>에 1년간 추가로 보호를 제공하곤 한다. 아동에 대한 모든 정의는 한쪽 성에 국한되지 않으므로 모든 성의 모든 아동을 지칭한다.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은 성별을 이유로 하는 어떠한 차별도 경험하지 않고 자라야 한다”고 명시한다. 따라서 이론상으로는 남아들이 한국에서 여아보다 덜 보호받아야 하는 법률상 이유가 일체 없다.

2020년에는 형법 개정을 통해 한국에서 의제강간 연령을 13세에서 16세로 높였다.<sup>58</sup> 남아와 여아에게 모두 적용된다. 법률에는 19세 미만의 아동이 13세 이상의 아동과 성활동에 관여할 경우 사기성 수단이나 위력 혹은 위협이 수반되지 않는 한 처벌이 없다는 예외 연령이 존재한다.<sup>59</sup> 따라서 13-16세 아동과 합의 하에 성활동에 관여한 자라 하더라도 19세 이상인 경우에만 기소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합의’를 정의하는 구체적인 기준이나 표준이 없어서 언제나 동의의 유무보다는 “사기성 수단”이나 “위력” 사용을 입증하는 데에 중점을 두곤 한다.<sup>60</sup> 이러한 사례에서는 기소자가 그러한 수단의 이용을 입증해야 함을 언급해야 한다.<sup>61</sup> 폭행, 위협, 무력, 속임수, 사기성 수단을 통해 아동을 강간한 경우에도 법률상 별도의 위법 행위를 정의한다.<sup>62</sup> 그러한 범주는 13세 미만<sup>63</sup>아동의 경우 10년 이상의 징역, 13-19세<sup>64</sup> 청소년의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것이다. 이러한 법에 의거한 추가 조항에서는 아동 성 학대를 불법화한다.<sup>65</sup>

지원 실무자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아래 Figure 13에서 묘사한 18세 미만 남아에 대한 동의 연령(의제강간연령)과 관련해 법적 보호에 대한 지식을 알아보았다. 23%가 대한민국 법률이 규정한다고 올바르게 답하였다. 응답자는 한국에서 또래간 합의에 의한 성관계의 범죄화를 회피하는 예외 연령을 정한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했고, 29%만이 올바르게 답을 하였다.

55 대한민국 정부. (2016). *Civil Act*. Article 4.

56 일반적으로 한국에서는 국제 연령 시스템보다 2년이 빠른 역연령 시스템을 이용하지만 대한민국 법률에 의거하여 열거된 모든 연령은 공통적으로 받아들이는 국제 연령 시스템을 나타낸다.

57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1989). Article 1.

58 대한민국 정부. (2016). *Criminal Act*. Article 305.

59 상게서.

60 탁틴내일. (2021) 퍼스널 커뮤니케이션.

61 상게서.

62 대한민국 정부. (2020).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Youth against Sex Offences*. Article 7.

63 대한민국 정부. (2019).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Sexual Crimes*. Article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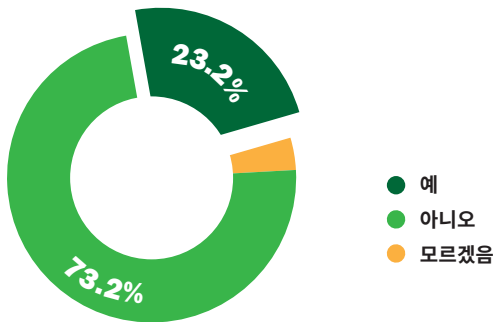
64 대한민국 정부. (2020).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Youth against Sex Offences*. Article 7.

65 대한민국 정부. (2020).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Youth against Sex Offences*. Article 7. 대한민국 정부. (2019).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Sexual Crimes*. Article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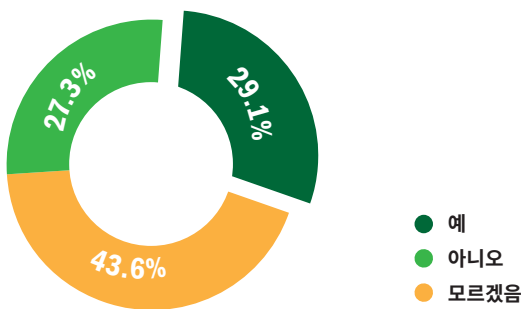


Figure13. 대한민국의 법적 성적동의(의제강간)연령

성적동의(의제강간)연령 인지



제외연령 조항 인지



대한민국 법률에는 모든 범죄의 시도행위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명시하는 형법 조항이 없다. 대신 형법에서는 시도행위가 처벌이 가능한 범죄의 경우 해당 조항에 구체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한다.<sup>66</sup> 따라서 아동성착취 범죄를 저지르려는 시도행위는 처벌 가능한 위법행위가 아니므로 아래와 같이 그러한 시도를 범법행위로 간주하는 구체적인 범죄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아동성착취 가해자가 자신의 행위를 변명하기 위한 변호로 피해자의 연령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도 가능하다. 사실상 형법 제13조에서는 “범죄의 주요 요소를 구성하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저지른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고 명시한다.<sup>67</sup> 또 제 15조에서는 “특히 심각한 범죄를 구성하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저지른 행위는 심각한 범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강조한다.<sup>68</sup> 하지만 제14조에서는 가해자가 정상적 주의에 태만한 경우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다고 규정한다.<sup>69</sup> 그러한 태만을 입증해야 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그러한 변호는 아동성착취 사건에서 널리 성공적으로 사용되어왔다.<sup>70</sup> 형사 범죄가 발생하려면 피해자가 13세 미만이었다는 사실을 가해자가 알면서도 강간하였음을 검사측이 입증해야 한다고 명시하는 2012년 대법원 판결에서 나타난다.<sup>71</sup>

**처벌과 관련해 한국은 아동성착취 범죄에 관대한 처벌과 약한 대응으로 비난을 사왔다.**

사실상 2019년에 한국에 대한 관찰 마무리에서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 성착취 및 학대로 유죄 판결을 받은 성인 가해자에게 보호 관찰을 포함한 관대한 선고<sup>72</sup>”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대한민국 법원은 소송에서 자백하여 유죄를 인정하거나 초범 범죄자에게는 처벌을 덜어주는 경향이 있다고 언급했다.<sup>73</sup> 또한 현황 증거에서는 그것이 진정한 속죄로 간주되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사과 편지를 쓰면 처벌을 완화해줄 수도 있다고 제시한다.<sup>74</sup> 사실상 이러한 편지를 쓰는 방법에 대한 조언이 온라인으로 유포되고 있으며, 대신 작성해주는 지원 서비스도 있다.<sup>75</sup> N번방 사건 이전에는 대한민국 법원들이 아동 성착취와 관련된 범죄에 무거운 처벌을 선고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사건은 해당 문제에 너무 많은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고, 법원은 이러한 유형의 범죄에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기 시작했다.<sup>76</sup> 한국 양형위원회에서도 대한민국 법원에 성적 학대에 관한 선고 지침을 제공한다. 이러한 지침에 따르면 가해자에게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성

66 대한민국 정부. (2016). *Criminal Act*. Article29.

67 상계서. 제13조.

68 상계서. 제15조.

69 상계서. 제14조.

70 탁틴내일. (2021) 퍼스널 커뮤니케이션.

71 대한민국법원. (1984). *Supreme Court Decision 2012Do7377*.

72 아동인권위원회. (2019).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combined fifth and sixth periodic reports of the Republic of Korea*.

73 탁틴내일. (2021) 퍼스널 커뮤니케이션.

74 상계서.

75 오마이스타뉴스. (2020). *가해자 앞날 창창해서*” 판사 한마디에 웃는 성범죄자들.

76 탁틴내일. (2021) 퍼스널 커뮤니케이션.



범죄 재범이거나, (아래에 논한 바와 같이) 학대를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 직종에 종사하고 있거나,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남용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중요요소 간주되므로 더 무거운 양형을 선고할 것이다.<sup>77</sup>

한국에서 아동은 의무적으로 초등교육에서 6년, 중등교육에서 3년, 총 9년 간 학교에 다녀야 한다.<sup>78</sup> 한국에서 법적으로 경제활동이 가능한 연령은 15세로 정한다.<sup>79</sup> 또 15-18세 청소년의 근무 시간은 일 7시간 또는 주 35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한다.<sup>80</sup> 마지막으로, 18세 이하 아동, 청소년은 도덕성이나 건강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장에 고용되지 못하도록 한다.<sup>81</sup> 성노동으로서 성착취와 연계되거나 성매매 관련 시설에 연계된 경우 아동의 도덕성에 유해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특히 중요하다.

## 남아가 구체적이고 맞춤형 조치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국제협약들은 성별과 상관없이 모든 아동을 성착취로부터 전반적으로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모든 주 당사자들이 아동의 이익을 최선선에 두는 탄탄한 법률과 효과적인 정책을 통해 같은 수준의 보호를 제공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동권리협약 제34조에서는 주 당사자들이 “모든 형태의 성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도록 요한다. 주 당사자들은 다음을 방지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한다. 1) 불법 성활동에 아동의 참여를 강요하는 행위, 2) 성매매 및 기타 불법 성적 관행에서의 아동 착취, 3) 음란물을 통한 아동 착취.<sup>82</sup> 이는 “주 당사자들은 성착취 및 성적 학대를 포함해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 행정적,

사회적 및 교육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하는 제19조로 뒷받침된다.<sup>83</sup>

이러한 취약성을 유념하여 현 연구에서는 남아를 한국 법체계 내에서 어떻게 보호하는지 평가하고자 한다. 각 절은 아동성착취가 발생할 수 있는 맥락에 관한 법률을 분석하고, 해당 시 남아에게 특히 중요한 구체적인 조항을 강조할 것이다. 다행히 대한민국 법률은 모든 아동에 중점을 두고 형법 또는 소송법 내에서 남아와 여아를 구별하지 않는다. 가능하다면 법률상 제공하는 보호가 어떻게 실용적 이행에 반영되는지 조명할 것이다.

## 성매매를 통한 아동 착취

성매매에 아동 착취가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사건으로 조건만남을 들 수 있다.<sup>84</sup> 이것은 ‘조건부 데이트’로 대략 해석되는 용어다. 2016년에 성매매에 가담하거나 가출한 198명의 응답자(모두 19세 미만)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61.8%(122명)가 조건만남에 가담했.<sup>85</sup> 또 122명 중에서 87.9%가 금전을 대신 받았고, 39.3%가 그들이 원하는 물건을 받았다.<sup>86</sup> 해당 설문조사에서는 성착취를 경험한 응답자(173명) 중 84.4%(146명)가 가출 경험도 있음을 밝혔다. 또한 48.6%(84명)은 생존을 위한 돈을 버는 수단으로 성매매에 가담하였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성통념으로 인해 아이들은 다른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기를 바랐고,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했다.<sup>87</sup>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는 성별로 분리되지 않고 모든 아동을 참조하였으며, 성매매에서 착취와 관련해 직면할 수 있는 취약성이 존재함을 강조한다.

77 한국 양형위원회.(n,d). *Crimes of Sexual Assault*.

78 대한민국 정부. (2018). *Framework Act on Education*. Article 8.

79 대한민국 정부. (2019). *Labour Standards Act*. Article 64.

80 상계서, 제69조.

81 상계서, 제65조.

82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1989). Article 34.

83 상계서, 제19조.

84 대한민국 정부. (2017). *Survey on the sex tra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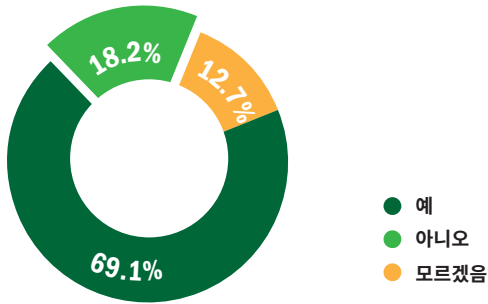
85 상계서.

86 상계서.

87 상계서.

아래의 Figure 14는 대한민국 법률에서 남아를 성적으로 착취하는 것과 관련해 지원 실무자 설문조사에서 얻은 응답을 설명한다. 응답자 중 69%가 한국에서 돈을 목적으로한 성활동에 18세 이하 남아를 관여시키는 것이 범죄행위라는 것을 정확히 파악했다.

Figure 14. 성매매에 의한 남성아동성착취 범죄화



한국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는 성매매를 설명하는 데에 “성매매”라는 용어를 사용한다고 명시하고, 이는 자금, 귀중품 및 기타 자산 이익을 얻거나 약속하는 대가로 성관계 및 실제 삽입이 이루어지지 않는 성활동에 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sup>88</sup> 아동을 수반하는 사례에서는 “자산 이익”으로 고려하는 대상을 사례별로 결정하는데 이는 판사의 해석에 따라 좌우된다.<sup>89</sup> 동법 제 4조에서는 그러한 행위를 금하므로 국내에서 성매매를 불법으로 한다.<sup>90</sup> 성매매에 관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2021년 9월 기준으로 \$2,575 USD) 이하의 벌금형, 경범죄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sup>91</sup> 하지만 동법에서는 성매매에 관여하도록 권유 또는 유인당한 “청소년”까지 성매매 피해자 명단에 포함시키며, 이러한 피해자는 일체 처벌을 받지 않도록 명시한다.<sup>92</sup>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2020년 개정 전에는 그렇지

않았으며, 성매매에서 착취당한 아동은 자신의 착취에 관여하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다.<sup>93</sup>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영향을 받았는지 정확히 다른 통계는 없지만 지역 아동 권리 기관에서는 심각한 문제로 간주했고, 연구에서는 경찰들이 일부 아동을 “성매매에 자발적 참여”하였다며 “비행청소년”으로 몰기도 했음을 입증하였다.<sup>94</sup> 법률 개정 후 현재는 이러한 아동을 피해아동 및 청소년 지원센터로 연계하며, 교육과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를 제공한다.<sup>95</sup>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도 위법 행위가 포함되어 있어 성매매를 통한 착취와 관련된 범죄로부터 아동을 광범위하게 보호한다. 동법 제14조에서는 폭행이나 협박, 또는 선불금이나 그 밖의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이들을 곤경에 빠뜨리거나 사기, 무력, 또는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하여 아이들로 하여금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는 행위를 금한다.<sup>96</sup> 그러한 범죄를 범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가해자가 그러한 범죄에 대해 보수를 받거나 요구하거나 약속한 경우에는 징역 7년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다.<sup>97</sup> 또 사업 목적으로 아동을 성매매에 유인하거나 유도하는 것을 금한다.<sup>98</sup>

뿐만 아니라 제13조에서는 아동에게서 성적 지원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을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그러한 범죄에 대해 1-10년의 징역 또는 2천 만원(2021년 9월 기준으로 \$17,170 USD) 벌금의 처벌을 받는다.<sup>99</sup> 성매매를 목적으로 아동을 유인하거나 권유하는 것을 금하며, 이러한 범죄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 만원(2021년 9월 기준으로 \$8,584 USD)<sup>100</sup> 이상의 벌금형에 처한다.

88 대한민국 정부. (2014). *Act on the Punishment of Arrangement of Commercial Sex Acts*. Article 2 (1).  
 89 탁틴내일. (2021) 퍼스널 커뮤니케이션.  
 90 대한민국 정부. (2014). *Act on the Punishment of Arrangement of Commercial Sex Acts*. Article 4.  
 91 상계서, 제21조.  
 92 상계서, 제2조 4항 & 제6조.  
 93 대한민국 정부. (2020).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Youth against Sex Offences*. Article 38.  
 94 탁틴내일. (출판 예정) 2021 사안 보고서. ‘비행’ 또는 ‘관여한 아동·청소년’으로 분류되면 피해자로 간주되지 않아 지원을 받을 자격이 없음을 주목한다.  
 95 대한민국 정부. (2020).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Youth against Sex Offences*. Article 38  
 96 상계서, 제14조.  
 97 상계서.  
 98 상계서.  
 99 상계서, 제13조.  
 100 상계서.  
 101 상계서.

피해자가 16세 미만이거나 장애아인 경우 원심의 절반에 해당하는 형이 가중된다.<sup>101</sup>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에서는 “알선영업행위”와 관련된 다양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sup>102</sup> 아동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아동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가 모두 범죄에 해당한다.<sup>103</sup> 그러한 범죄에 대한 처벌은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5천만원(2021년 9월 기준으로 \$42,923 USD) 벌금형이 선고되지만 영업으로 하는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sup>104</sup> 아동의 성을 사는 것에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것도 금한다.<sup>105</sup> 마지막으로, 영업으로 제3자에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한 행위도 범죄에 해당한다.<sup>106</sup> 영업으로 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2021년 9월 기준으로 \$42,923 USD)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 외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2021년 9월 기준으로 \$25,754 USD)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sup>107</sup>

성매매에서 아동 성착취와 관련된 범죄의 경우, 시도만으로 불법화되는 유일한 범죄는 아동에게 폭행이나 협박, 또는 선불금이나 그 밖의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이들을 곤경에 빠뜨리거나 사기, 무력, 또는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하여 아이들로 하여금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는 경우다.<sup>108</sup> 이는 우려를 야기하는 부작용으로, 매춘을 통해 착취되지 않도록 아동에게 제공하는 보호는 대한민국 법률에서 다루는 성매매에서 광범위한 성착취 범죄 목록을 다루도록 그러한 조항을 확대하여 개선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법원은 아동을 수반한 성 범죄를 다룰 때 피해자 연령의 무지를 변호로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데에 더 엄격하지만, 위에서 논한 형법 조항들은 그러한 범죄에 여전히 적용될 것이므로 아동성착취를 수반하는 사건에서 변호로 사용 가능하고 실제로 사용한다.<sup>109</sup>

## 온라인 아동성착취

온라인 아동성착취는 한국에서 점점 더 문제가 커지고 있다. 가해자는 아이들을 채팅방에서 접근하여 아이들의 사진을 퍼뜨리겠다는 위협을 통해 더 많은 아동 성착취물(CSAM)을 제작하도록 아이들을 갈취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sup>110</sup> 또 수많은 매체의 관심을 받아 결국 2020년 성범죄를 규정하는 법을 개정시킨 여러 사건, 특히 N번방 사건은 본 보고서 앞부분에서 논하였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범죄가 남아에게 영향을 미치는 범위와 정확한 특성을 강조하는 자료는 부족한 현실이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sup>111</sup>”은 “컴퓨터나 기타 커뮤니케이션 매체에 표시되는 영화, 영상, 게임 소프트웨어, 사진, 이미지 등” 노골적인 성적 행위에 연루된 아동 또는 아동으로 보이는 사람이나 표현물의 묘사로 정의된다. 다행히 “표현물”의 포함은 실재하지 않는 아동의 실제 같은 현실적인 이미지를 비롯해 디지털로 생성한 아동성착취물도 다루도록 사용할 수 있다. 아동의 표현물은 대중이 볼 때 아동으로 보이거나 인지되는 자료라고 명시한 2019년 법원 판결에서 입증한다.<sup>112</sup> 이는 판사에 의해 사례별로 결정될 것이며, 자료, 개인의 목소리, 말하는 방식, 태도, 상황적 환경이나 배경, 영화나

102 상계서. 제15조.

103 상계서.

104 상계서.

105 상계서.

106 상계서.

107 상계서.

108 상계서. 제14조.

109 탁틴내일. (2021) 퍼스널 커뮤니케이션.

110 미국 국무부. (2020). [Trafficking in Persons Report](#).

1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사건번호: 2020고합294 & 2020고합4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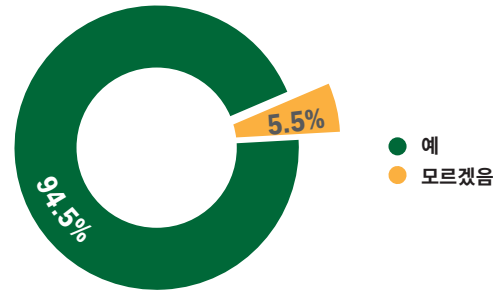
112 대한민국법원. (2019). [Supreme Court Decision 2015Do863](#).

이미지의 스토리라인에 묘사되는 사람의 외형에 대한 설명이나 신체적 발달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할 것이다.<sup>113</sup> 하지만 이러한 정의에서는 음성 자료와 같이 영상 외 형태로 된 자료는 명시적으로 다루지 않아 OPSC가 제공하는 국제 기준과 완전히 일치한다고 말할 수 없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음성 형태로 된 음란물 유포도 불법화한다.<sup>114</sup> 음란물이 정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역시 충분하지 않으며, 그러한 자료의 유포만 범죄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아동성착취물과 관련된 다양한 행위를 금한다. 제11조에서는 아동성착취물 제작·수입 또는 수출을 불법화한다.<sup>115</sup> 이는 범죄행위의 시도까지 불법화하는 유일한 온라인 아동성착취 관련 범죄에 해당한다.<sup>116</sup>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성착취물을 판매, 대여, 배포 및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는 것도 범죄행위에 해당한다.<sup>117</sup> 이러한 행위는 모두 5년 이상의 징역 처벌 대상이 된다.<sup>118</sup> 영리 이외의 목적으로 아동성착취물 자료를 배포, 제공, 광고, 공연히 전시 및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을 아동성착취물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 역시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sup>119</sup> 마지막으로 아동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아동성착취물을 구매, 소지 및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sup>120</sup> 이러한 조항이 온라인 환경에서 일어나는 행위에도 적용된다고 명시하지 않지만 N번방 사건과 같이 세간의 이목을 끄는 판결에서 추론할 수는 있다.<sup>121</sup>

아래 Figure 15는 대한민국 법률에서 아동 성 학대 자료의 범죄 관련성에 대해 지원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답변을 보여준다. 한국에서

아동성착취물을 유포하거나 공유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이 “소지”하는 것만으로 불법이라는 데에 모든 응답자가 올바르게 답변하였다. 3명의 응답자만 이를 몰랐다고 말했다.



아동을 음란 행위에 참여하도록 고용하거나 야기하거나 강요하는 행위를 불법화하는 구체적인 법률은 없지만, 아동을 음란행위에 관여시키거나 그러한 행동을 알선하거나 아동을 상대로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방법으로 성희롱 및 학대를 범하는 행위<sup>122</sup>를 금하는 아동복지법에 의거하여 다룰 수는 있다. 이어서 부분적으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다루는 바와 같이 아동성착취물 제작을 목적으로 아동을 알선하는 범죄로 다룰 수도 있다. 하지만 녹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배제되고 아동성착취물 제작을 목적으로 한 행위만 불법에 해당하므로 불충분하다. 또한 다 알고도 그러한 음란행위에 관여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불법화하는 규정도 없다.

아동성착취물과 관련된 조항은 아동 성 학대를 라이브 스트리밍하는 사례에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법률상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으므로 그러한 사례를 명확하게 불법화하도록 업데이트되어야 한다. ‘온라인 그루밍’과 관련해서도 법률상 구멍이 존재한다. 최근에는 아동성착취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목적으로 성인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아동을 만나려는 의도적인

113 상계서.  
 114 대한민국 정부. (2019).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Article 44-7.  
 115 대한민국 정부. (2020).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Youth against Sex Offences.* Article 11.  
 116 상계서.  
 117 상계서.  
 118 상계서.  
 119 상계서.  
 120 상계서.  
 1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사건번호: 2020고합294 & 2020고합486.  
 122 미국 국무부. (2020). *Trafficking in Persons Report.*

제안을 금하는 조항도 없다. 하지만 국회 구성원들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이러한 범죄를 포함시키도록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2021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기대된다.<sup>123</sup>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섹스팅을 통해 학대 또는 착취적 상황에서 아동성착취물을 제작하도록 강요 받은 아동은 피해자로 간주되고 처벌에서 면제될 것이다.<sup>124</sup> 하지만 아동이 그러한 아동성착취물 유포에 가담한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될 것이다. 법률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2명의 아동이 합의하여 섹스팅한 경우는 법률상 처벌받지는 않지만 대신 가담한 아동들은 특별 성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sup>125</sup> 하지만 아동이 사업 목적으로 아동성착취물을 공유하거나 유포한 경우 대한민국 법률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2020년 N번방 사건 이후 한국 법률은 성착취 범죄와 관련된 범죄를 포함시키도록 개정되었다. 따라서 성적 욕구나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자료(영상 또는 사진)이나 그 사본을 이용해 타인을 위협하거나 협박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sup>126</sup> 하지만 이러한 범죄는 일반죄라 아동을 겨냥하지 않는다.

온라인 아동성착취에 관한 마지막 요점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인터넷 지원 서비스 제공자는 아동성착취물을 감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거나 그 유포를 막거나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못할 경우 최대 3년 징역 또는 최대 2천 만원 이하의 벌금(2021년 9월 기준 \$17,169 USD)에 처함을 들 수 있다.<sup>127</sup> 하지만 이러한 처벌은 인터넷 지원 서비스 제공자가 이러한 의무 이행에 태만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을 때에만 적용되며,<sup>128</sup> 현실은 징역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고 고작해야 벌금형에 처한다.<sup>129</sup>

## 성적 목적의 아동 매매

대한민국에서 남아에게 영향을 미치는 성적 목적의 매매에 관한 연구 부족으로 인해 그 규모를 정확하게 추산하기가 힘들다. 미 국무부 인신매매 보고서에서는 가출 청소년이 특히 불법 거래 상인의 먹이감으로 취약하다고 보고하였다. 또 이러한 아이들은 바, 나이트클럽, 그 외 유흥업소에서 성착취를 당한다.<sup>130</sup>

한국에서 인신매매와 관련된 법률은 다수의 법조항에 걸쳐 분포되어 있고, UN 인신매매 의정서에서 규정하는 범죄와 완전히 일치한다고 말할 수 없다. 형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그리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조항은 모두 아동을 인신매매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는 조항들을 포함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는 “아동과 청소년 인신매매” 범죄를 다룬다. 해당 조항은 아동이 아동성착취물 제작 사실이나 성매매 행위의 피해자가 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도 아동을 매매하거나 외국으로 출국시키거나 외국에서 한국으로 입국시키는 행위를 모두 불법화한다.<sup>131</sup> 그러한 범죄에 대한 처벌은 5년 이상의 징역 대상이 된다.<sup>132</sup> 안타깝게도 이 조항만으로는 아동을 매매 범죄로부터 완전히 보호하지 못한다. 해당 조항에서 매매 수단을 입증하도록 요하지 않지만(예: 사기, 기만, 강요 등), 아동의 매매, 출국 및 입국과 같은 행위만을 다루므로 UN 인신매매 의정서에서 매매 범죄의 모든 구성요소를 다루지 않는다. 또한 조항에서는 국경과 국제 범죄만을 다루므로 국내 인신매매 범죄는 불법화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해당 조항에서는 인신매매를 목적으로 한 아동성착취물 제작이나 성 관련 지원 서비스 매매 행위만을 포함하므로 모든 유형의 성착취를 포괄적으로

123 탁틴내일. (2021). 퍼스널 커뮤니케이션.

124 대한민국 정부. (2020).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Youth against Sex Offences*. Article 2.

125 탁틴내일. (2021). 퍼스널 커뮤니케이션.

126 대한민국 정부. (2020).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Youth against Sex Offences*. Article 14-3.

127 상계서. 제17조.

128 상계서.

129 탁틴내일. (2021). 퍼스널 커뮤니케이션.

130 미국 국무부. (2020). *Trafficking in Persons Report*.

131 대한민국 정부. (2020).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Youth against Sex Offences*. Article 12.

132 상계서.



다루지 않는다.

형법에 의거한 추가 조항을 이용해 아동 매매에  
관여한 범죄자를 기소할 수도 있다. ‘인신매매’에  
관한 제289조에서는 추행, 성관계, 결혼 또는 이익을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하는 행위를 불법화하고,  
그러한 범죄에 대해 1-10년의 징역을 선고한다.<sup>133</sup>  
또한 성매매 또는 성착취를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하는 범죄자는 2-15년의 징역형을 받을  
것이다.<sup>134</sup> 해당 조항에서는 그러한 범죄 처벌  
시 조치를 입증하도록 요하지 않고 ‘성착취’를  
목적으로 좀 더 광범위하게 포함시키지만 사람의  
매매만 금하고, 단독 조항으로는 인신매매에 대한  
국제적으로 인정 받는 정의를 준수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또한 해당 조항은 모든 연령의  
피해자와 관련된 범죄를 겨냥하고, 아동이 피해자인  
경우 더 무거운 형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인신매매죄의 추가 요소는 제287조와 288조에서  
다룬다. ‘미성년자 약취 또는 유인’에 관한 제287  
조는 위협, 무력, 강압, 사기, 기만 및 유인하여  
미성년자에 대한 통제력을 얻어서 유지하는 것을  
범죄로 정의한다.<sup>135</sup> 이러한 범죄와 관련된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sup>136</sup> UN 인신매매  
의정서에서 인신매매에 사용된 수단은 아동  
인신매매 범죄의 경우 절대 입증하도록 요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기 때문에 이 조항은 불충분하다.  
제288조에서는 무엇보다 추행, 간음, 결혼, 영리,  
성매매 및 성착취에 가담하려는 목적으로 사람을  
위협, 무력, 강압, 사기, 기만 및 유인하여 통제력을  
얻고 유지하는 것을 금한다.<sup>137</sup> 다시금 해당 조항은  
모든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그 수단이 범죄를  
구성하도록 입증해야 하고, 아동에게 전적인 보호를  
제공하지 못한다. 마지막으로 제292조는 인신매매  
피해자를 수수 또는 숨기는 행위, 제287-289조까지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하는

행위도 불법화한다.<sup>138</sup>

마지막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아동과 관련된 특정 행위를 아우르는  
‘성매매를 겨냥한 인신매매’라는 정의를 포함한다.  
이 정의에 따르면 아동을 성적으로 매매할 목적으로  
이송하거나, 음란행위를 하거나, 아동을 통제하는  
와중에 성관계나 다른 음란행위를 묘사하는 사진,  
영상 등의 대상으로 아동을 이용하고 대신 금전이나  
귀중품을 제공 및 약속하는 것을 인신매매로  
간주한다.<sup>139</sup> 이러한 행위를 위해 아동을 고용하거나  
이동시키거나 숨기는 것을 인신매매로 간주한다.<sup>140</sup>  
형법에 의거하여 직면한 문제와 비슷한 맥락에서  
인신매매 수단은 아동을 수반하는 범죄의 요소로  
간주되므로 국제법과 일맥상통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마지막으로 동법 제4조에서는 성적 목적을  
위해 사람을 인신매매에 알선하거나 권유하거나  
유인하거나 강압하여 성적 목적의 인신매매를 위한  
장소, 자금, 토지 및 자본을 제공하는 것을 금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와  
형법 제289조를 이용해 아동 인신매매를 처벌할  
수 있으나 해당 조항들은 인신매매 범죄를 겨냥한  
것이다. 따라서 성적 목적으로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만으로 대한민국 법률에서 불법화한다고 말할  
수 없다.

인신매매의 구성요소 대다수는 대한민국 법률에서  
다루지만 죄를 지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수준의 증거를 필요로 한다. 특히 형사법 제287  
조와 288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신매매 범죄에 포함된 범죄의 경우,  
아동이 인신매매 대상인지 결정하는 데에는 그  
수단을 입증하도록 요한다. 이는 분명 UN 인신매매  
의정서와 상충되는 내용이므로 제거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인신매매에 관해 위에서 논한 모든

133 대한민국 정부. (2016). *Criminal Act*. Article 289.

134 상계서.

135 상계서. 제287조.

136 상계서.

137 상계서. 제288조.

138 상계서. 제292조.

139 대한민국 정부. (2014). *Act on the Punishment of Arrangement of Commercial Sex Acts etc*. Article 2.

140 상계서.



조항에서는 범죄의 시도 역시 처벌될 수 있음을 언급하는 것이 중요하겠다.<sup>141</sup>

## 여행 및 관광을 통한 아동 성착취

대한민국에서 여행 및 관광을 통한 아동성착취(이하 SECTT)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므로 이러한 맥락에서 성착취가 어떻게 일반적으로 아동에게, 특히 남아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말하기가 까다롭다. 해외 투어는 한국인이 외국을 여행하여 SECTT에 참여하도록 “황제 투어”라는 이름으로 광고된다.<sup>142</sup> 2020년 미 국무부 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한국인 남성들이 아동성착취 범죄에 관여하려는 목적으로 베트남, 캄보디아, 몽골, 필리핀을 여행한다고 보고하였다.<sup>143</sup> 하지만 같은 해에 정부는 해외에서 SECTT에 참여하는 한국인 남성에 대한 형사 수사 또는 고발에 대해서는 일체 보고한 바가 없다.<sup>144</sup> 불행히도 국내에는 범죄에 대한 인식 수준이 매우 낮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중요한 문제로 취급하지 않는다.<sup>145</sup> 이러한 범죄가 한국의 아동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부족하다고 해서 국내에 그러한 범죄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여행 및 관광 산업을 규정하고 관련 형사법 조항을 적용하도록 보장하는 것이 이러한 맥락에서 아이들이 성적으로 착취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

대한민국 형법에는 여행지나 관광지에서 아동 성착취를 특정하여 다루는 범죄를 포함한 조항이 없다. 성활동에 아동을 관여시키기 위한 기회를 만들거나 도모하도록 명시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의도한 여행 알선이나 이송 조직은 한국에서 법적으로 검거되기 어렵다. 또한 아동과 직접 작업하는 봉사자의 이용을 규정하는 조항이

없고, 여행 및 관광 산업 내에서 운영되는 기업이 아동보호를 위한 국가 강령을 준수하도록 법에서 요구하지도 않는다.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법인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유죄가 될 수 있음을 한국대법원에서 인정하지 않는다.<sup>146</sup> 따라서 기업이 특정 범죄에 가담하면 법인 자체가 아니라 기업 대표자가 피고가 된다.<sup>147</sup> 하지만 대한민국 법률에 의거한 특정 범죄의 경우 법인이 공동 처벌 조항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주로 벌금형으로 이루어진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서는 법인 대표가 성매매<sup>148</sup> 또는 온라인 아동 성착취<sup>149</sup>와 관련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개인 피고가 처벌을 받고 사업체는 벌금형을 받는다.<sup>150</sup> 하지만 법인은 그러한 범죄를 막고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의 태만을 입증할 수 있을 경우에만 그러한 처벌형을 받을 것이다.<sup>151</sup> 법인이 아동성착취 범죄에 대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합법적으로 가능하지만 흔히 이루어지지는 않는다.<sup>152</sup> 사실상 본 연구 과정에서는 그러한 범죄의 책임이 법인에게 있는 법원 사례를 찾을 수 없었다.

대한민국 법률에 의거하여 특정 아동성착취 범죄의 명시적 광고를 규정하는 특정 조항이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에서는 이러한 범죄와 관련된 정보 제공을 비롯해 미성년자가 성을 파는 행위를 금한다.<sup>153</sup> 또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성매매를 광고하는 자들을 처벌한다.<sup>154</sup> **하지만 성매매에 아동의 착취와 관련한 범죄만 다루고, 모든 아동성착취 관련 범죄의 광고 또는 도모를 금하지 않는다. 추가적으로 관광 기업들이 마케팅 및 홍보 자료에 SECTT 관련해 불법 행위를 경고하는 문구를 포함시키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은 없다.**

141 대한민국 정부. (2016). *Criminal Act*. Article 294; Government of Korea. (2020).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Youth against Sex Offences*. Article 12.

142 탁틴내일. (2021). 퍼스널 커뮤니케이션.

143 미국 국무부. (2020). *Trafficking in Persons Report*.

144 상계서.

145 탁틴내일. (2021). 퍼스널 커뮤니케이션.

146 대한민국법원. (1984). *Supreme Court Decision 82Do2595*.

147 상계서.

148 이는 동법 제14조, 15조에 열거된 범죄이다.

149 이는 동법 제11조 (1) (2) (3) (4) (6)항에 열거된 범죄이다.

150 대한민국 정부. (2014). *Act on the Punishment of Arrangement of Commercial Sex Acts etc*. Article 32.

151 상계서.

152 공식 이사, 전국매춘방지연합(2021). 퍼스널 커뮤니케이션.

153 대한민국 정부. (2020).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Youth against Sex Offences*. Article 15.

154 대한민국 정부. (2014). *Act on the Punishment of Arrangement of Commercial Sex Acts etc*. Article 20.

성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은 출입국 관리법 조항을 적용하여 입국을 금할 수 있다. 동법 제11조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경제적 또는 사회적 질서와 도덕성을 해치는 행동에 심각하게 관여한 것으로 간주되는” 외국인인 한국에 들어오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sup>155</sup> 또한 여권법에 의거하여 외교부는 2년 이상 징역을 선고 받은 범죄를 저지른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여권 발급을 거절할 수 있다.<sup>156</sup> 하지만 아동성착취물을 시청, 소유 및 구매, 성매매를 목적으로 아동을 유도하거나 권유하거나, 성착취범죄를 범한 경우 모두 1년 이상의 징역 대상이 되므로 동법에 적격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형사소송법에 의거하여 모든 혐의가 제기된 범죄자는 보석으로 풀려난 경우 법무부 허가 없이 국외를 여행할 수 없다고 명시한다.<sup>157</sup> 성 범죄자의 입국이나 출국 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지만 경찰청은 외국에서 성매매에 관여한 자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전달한다.<sup>158</sup>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성매매를 제안하는 것으로 알려진 투어운영자의 입국을 거부하고, 외국에서 성매매로 유죄 판결을 받은 한국인의 출국을 금한다.<sup>159</sup> 하지만 이러한 조치는 벌금 이상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에게만 적용된다.<sup>160</sup>

## 아동의 조혼 및 강제결혼

아동 조혼 및 강제결혼(CEFM)은 당연히 여아에게 치우치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긴 하지만 남아 역시 이 문제로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2019년에 세계적으로 총 1조 1,500만 명의 남자 아이와 청소년이 18세가 되기 전에

결혼을 했고, 그 중 2,300만 명은 15세가 되기 전에 결혼을 했다.<sup>161</sup> 결혼하는 남아들은 ‘가장’의 역할을 하고 가정에 대한 책임을 짊어지도록 사회적 압력이 늘어나는 것을 경험하고 궁극적으로 아동기는 일찍 끝이 난다.<sup>162</sup> 아동조혼은 전통적으로 한국에서 큰 문제로 간주하지 않았지만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2019년에 한국에서 거주하는 이주민 지역사회에서 미성년자 결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였다.<sup>163</sup> 이는 아동조혼이 국내에서 더 흔히 있는 일이 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탄탄한 민법 및 형법 조항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한국 내에서는 결혼을 주관하는 규정을 민법조항에서 찾을 수 있다. 국내에서 이에 경쟁하여 운영되는 관습 또는 종교적 법체계가 없기 때문에 결혼에 대한 민법조항이 모든 종교에 일관되게 적용된다. 민법 제807조에서는 만 18세<sup>164</sup>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긍정적으로 보면 한국 법률에는 아동에게 결혼을 허락하는 예외는 없다. 대신 성년의 나이가 한국에서는 19세<sup>165</sup>이므로, 18세 청소년이 결혼을 한다면 19세가 되기 전까지 보호자 동의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가끔 18세가 부모나 보호자 동의 없이 결혼할 때가 있는데 그러면 결혼은 무효화될 수 있다.<sup>166</sup> 하지만 당사자의 19번째 생일로부터 이미 3개월이 지나거나 혼인 당시 여성 당사자가 임신한 상태인 경우 혼인 무효 선언이 적용되지 않는다.<sup>167</sup>

한국에서는 그러한 상황에서 아동의 결혼을 허용하진 않지만 아동과 결혼을 유도 또는 강요하거나 고의로 결혼시키는 행위를 불법화하는 법률은 없다. 형법 제289조에서는 사람을 매매하는

155 대한민국 정부. (2014). *Immigration Act*. Article 11.

156 대한민국 정부. (2017). *Passport Act*. Article 12.

157 대한민국 정부. (2020).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98.

158 공식 이사, 전국매춘방지연합. (2021). 퍼스널 커뮤니케이션.

159 상계서.

160 상계서.

161 UN 뉴스. (2019). *Around 23 million boys have married before reaching 15; ‘we can end this violation’ says UNICEF chief.*

162 엑팓 인터내셔널. (2020). *Summary Paper on Child, Early and Forced Marriages as a Form of, or Pathway to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Bangkok: ECPAT International.

163 아동인권위원회. (2019).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combined fifth and sixth periodic reports of the Republic of Korea.*

164 대한민국 정부. (2016). *Civil Act*. Article 807.

165 상계서, 제807조.

166 상계서, 제816조.

167 상계서, 제819조.

행위, 특히 결혼을 목적으로 매매하는 행위를 금하므로 이러한 형법의 인신매매 조항을 특정 강제결혼 행위에 적용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sup>168</sup>

과거에는 가해자가 성범죄를 저질러서 기소되지 않을 방법으로 결혼을 사용했다.<sup>169</sup> 하지만 긍정적인 법률 개선을 통해 특히 고소 대상이 되는 범죄에서 성 범죄를 배제시키면서 2013년에 성범죄를 포함한 다양한 법률을 변경함으로써 더 이상 국내에서 이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sup>170</sup>

## 치외법권과 범죄인인도

지난 수십 년 간 여행과 관광산업의 성장과 함께 개인이 해외를 여행하면서 아동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기가 쉬워졌다.<sup>171</sup> 따라서 아동성착취 범죄의 맥락에서 역외적용이 매우 중요해지는데, 이는 관할법원 밖에서 자국 시민에게 또는 자국 시민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국내법을 적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국가들이 아동 성 범죄자를 위한 피난처가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가 법률에서 OPSC의 제4조에 따라 아동성착취 범죄에 대한 역외적용을 완전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sup>172</sup> 마찬가지로 범죄를 저지른 곳에 주요 목격자와 증거가 존재할 가능성을 감안하면 범죄자의 기소 노력을 지원하는 데에는 범죄인인도가 반드시 필요하다.<sup>173</sup>

형법 제2조에 따르면 한국에서 한국 시민이나 외국인이 범한 모든 범죄는 처벌이 가능할 것이다.<sup>174</sup> 또한 한국은 “대한민국영역 밖에서 범죄를 저지른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기소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속지적 관할권이 적용된다.<sup>175</sup> 따라서 적극적인 속지적 관할권 덕분에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영역 밖에서 자국민이 행한 범죄행위(모든 아동성착취 범죄 포함)를 기소할 수 있다. 한국 법률에서는 이에 더해 수동적 속지적 관할권도 적용시킨다. 즉, 대한민국은 외국인이 해외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범죄를 저지른 경우 행위가 발생한 시점에 대한민국법률에서 불법화하는 범죄를 처벌할 것을 의미한다.<sup>176</sup>이 조항은 형법에 의거하여 저지른 범죄에 특별히 적용되지만, 제 8조에서는 이러한 조항이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한 다른 모든 법에서 제공하는 범죄에 적용된다고 명시한다.<sup>177</sup> 따라서 대한민국 법률의 여러 조항에 포함된 기타 아동성착취 관련 범죄는 모두 이러한 치외법권 조항에서 다룰 것이다. 위의 내용에 더해 형법에서는 특정 범죄에 대해 보편적인 역외적용이 적용될 수 있다.<sup>178</sup> 외국인이 해외에서 범한 범죄는 한국에서 처벌이 가능하며, 피해자가 한국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라는 의미다. 아동성착취 범죄와 관련해 이러한 보편 관할권은 형법 제 287-292조에서 다루는 인신매매 범죄에도 적용될 것이다(위에서 상세히 논한 바와 같이).<sup>179</sup>

대한민국 법률에 의거하면 범죄자는 기소, 재판 및 처벌을 목적으로 요청국에 인도할 수 있다.<sup>180</sup> 인도 가능한 범죄로는 한국과 요청국 양국에서 징역 1년 이상의 처벌을 받은 모든 범죄를 포함하므로 아동성착취와 관련된 모든 범죄가 해당될 것이다.<sup>181</sup> 따라서 범죄자 인도 소송에 쌍방범죄성의 원칙이 적용되어 범죄자가 인도되려면 대한민국 법률과 요청국의 법률에 의거하여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이 가능한 상태여야 한다는 의미다.

168 대한민국 정부. (2016). *Criminal Act*. Article289.

169 탁틴내일. (2021). 퍼스널 커뮤니케이션.

170 대한민국 정부. (2016). *Criminal Act*. Article306. Government of Korea. (2019).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Sexual Crimes*. Article 15.

171 엑팟 인터내셔널. (2020). *Summary Paper on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in Travel and Tourism*, 1.

172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2000). Article 4.

173 엑팟 인터내셔널. (2016). *Global Study on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in Travel and Tourism*.

174 대한민국 정부. (2016). *Criminal Act*. Article2.

175 상계서, 제3조.

176 상계서, 제4조.

177 상계서, 제8조.

178 상계서, 제296조의2.

179 상계서.

180 대한민국 정부. (2017). *Extradition Act*. Article 5.

181 상계서, 제6조

대한민국 법률에 포함된 모든 아동성착취 범죄는 최소 선고 요구사항을 초과하지만, 요청국에서 아동성착취 범죄에 대해 더 관대한 선고를 내릴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범죄인인도법 제 3-2조에서는 해당 법률과 상충되는 조항의 범죄인인도조약에 대해 조약이 우선한다고 명시한다.<sup>182</sup> 쌍방범죄성을 요하지 않는 미국<sup>183</sup> 및 일본<sup>184</sup>과 범죄인인도조약에서 일어난 경우다.

또한 범죄인인도법은 가해자가 대한민국 국민일 경우 인도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sup>185</sup> 이 사례는 2020년에 미국과의 기능적인 본국 송환 협정에도 불과하고 한국에서 세계 최대 아동성착취 웹사이트 중 하나를 운영한 죄명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자의 송환을 거절한 사건을 들 수 있다. 한국에서 이미 18개월 선고를 받았지만 미국은 관련 타 죄목의 기소를 위해 그의 본국 송환을 요청하였다. 하지만 서울 고등법원은 이 요청을 거부했고, 아동 성착취와 관련된 향후 수사를 돕기 위해 한국에 가해자를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했다.<sup>186</sup>

## 사법집행과 보상에 대한 접근성

### 국가신고체계 및 신고의무

대한민국 법률에 의거하여 특정 전문가가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아동 학대를 인지하거나 의심하는 경우 아동보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를 해야 한다.<sup>187</sup> 그러한 의무가 있는 전문가는 광범위하며, 의료진, 교육진, 아동보호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아동보호시설에서 근무하거나 성범죄 피해자와 일하는 자를 포함한다.<sup>188</sup> 하지만 누구든 이러한 범죄를 신고 “할 수는 있으나” 해당 역할에 고용되지 않은 민간 시민에게는 의무요건이 아니다.<sup>189</sup>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0조의2에서는 아동 학대를 신고한 자에게 어떠한 불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명시함으로써 아동 학대죄 신고자를 보호한다.<sup>190</sup> 위의 의무는 일반적으로 아동 학대와 상관되지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러한 전문가들은 아동을 상대로 이루어진 성범죄를 인지하게 되면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한다.<sup>191</sup> 또 동법 제 35조에서는 신고 의무가 있는 전문가들은 그러한 범죄를 신고해야 할 의무와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 예방과 관련해 교육자료를 제공 받아야 한다.<sup>192</sup>

법정 대리인과 아동 피해자는 어떠한 형태든 아동 학대를 범한 사람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제기할 수 있다.<sup>193</sup> 민법조항에 따르면 아동을 법률 행위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sup>194</sup>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단독으로 법률 행위를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을 통해서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sup>195</sup> 일반적으로는 부모나 양부모가 아이에 대한 부모의 권한을 갖고 있으며, 법정 대리인으로 간주된다.<sup>196</sup> 부모 또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부재한 경우 법원은 미성년자를 위한 법정 대리인을 후견인으로 임명해야 하고, 후견인은 “부모의 권한을 가진 사람과 동일한 권리 및 의무”를 갖는다.<sup>197</sup>

182 상계서, 제3조의2.

183 대한민국 정부. (2002). *Treaty of Extradition between Korea and Japan*. Article 2.

184 대한민국 정부. (1999). *Extradition Treaty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Article 2.

185 대한민국 정부. (2017). *Extradition Act*. Article 9.

186 투데이 코리아. (2020). *Analysis of the ruling sentence for rejection of repatriation 'Why' did Son Jung-woo remain in Korea?*

187 대한민국 정부. (2019).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hild Abuse Crimes*. Article 10.

188 상계서.

189 상계서.

190 상계서, 제10조의2.

191 대한민국 정부. (2020).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Youth against Sex Offences*. Article 34.

192 상계서, 제35조.

193 대한민국 정부. (2019).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hild Abuse Crimes*. Article 10-4.

194 대한민국 정부. (2016). *Civil Act*. Article 5.

195 대한민국 정부. (2017) *Civil Procedure Act*. Article 55.

196 대한민국 정부. (2016). *Civil Act*. Article 909 & 911.

197 상계서, 제945조.

익명 고발도 의심이 가는 아동성착취 사건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될 것이다.<sup>198</sup> 그 절차와 관련해 경찰청장은 각 경찰서장에게 성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사법경찰관을 지명하도록 한다.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성범죄의 경우 소송을 시작하기 위해 고소를 요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므로, 경찰관은 신고서를 수령하는 즉시 수사를 시작해야 한다.<sup>199</sup> 어느 출처로든 획득한 정보를 기반으로 검사에게 아동성착취 직권에 의한 수사를 시작하도록 요구하진 않지만 검찰총장은 각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이 성범죄 전담 검사를 지명하도록 요한다.<sup>200</sup>

한국에서 아동성착취와 관련된 범죄로 유죄가 선고된 사람이라면 데이터베이스에 개인정보 및 그들의 범죄와 관련된 정보가 있다.<sup>201</sup> 또 법원은 피고가 아동인 경우 또는 공개를 해선 안 되는 특별한 상황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러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신상정보공개명령을 내릴 수 있다.<sup>202</sup> 법원은 공개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리고, 공개하는 정보는 성범죄를 저지를 사람들을 확인하여 그러한 범죄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데에 사용되어야 한다.<sup>203</sup>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아동과 직접 작업하는 자를 고용하는 과정에서 성 범죄 이력 조회서를 제출하도록 요한다.<sup>204</sup> 그러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는 10년간 그러한 직종에서 근무하지 못하도록 제한된다.<sup>205</sup> 하지만 이러한 제약은 특정 영향을 받은 가해자에게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일부 사람들은 너무 엄격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sup>206</sup> 특히

의사들은 이후 직업의 유지가 불가능하다며 이러한 제약에 반대 목소리를 내온 것으로 관찰되었다.<sup>207</sup> 이로 인해 재범 위험이 낮은 것으로 고려되는 사람은 예외로 하는 새로운 버전의 법안이 만들어졌다.<sup>208</sup> 하지만 무엇이 ‘위험이 낮은’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없다. 재범과 관련해 위험 평가를 실시해올 수 있으나 결정은 대개 판사의 재량에 남는다.

한국에서도 아동성착취 범죄의 기소에 법률상 한계가 존재함을 언급하여야 한다. 이러한 공소시효는 법률상 규정하고, 범죄를 저지르고 최대 경과 시간, 즉 범죄자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시작할 수 기간을 지정하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살인이나 강간과 같은 특정 범죄의 경우 이러한 공소시효에서 제외된다.<sup>209</sup> 하지만 대다수 아동성착취 범죄는 이러한 공소시효의 적용을 받는다. 이는 형사소송법에 규정되고,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해 25년부터 시작해 최대 5년 이하의 처벌이 가능한 범죄에 대해 1년까지, 경범죄 징역, 과태료, 압수 등을 열거한다.<sup>210</sup> 아동성착취 범죄의 경우 범죄에 대한 선고의 심각성에 따라 공소시효가 5-10년까지 적용된다. 아동성착취 아동 피해자의 경우 이러한 공소시효는 범죄가 발생한 일자가 아니라 아동이 성인이 되는 날짜에서 시작된다.<sup>211</sup> 성착취 피해아동은 피해를 밝히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한다.<sup>212</sup> 이러한 경우 성범죄에 대한 짧은 공소시효로 사법적 조치가 좌절되기도 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언제든 원할 때 공개할 수 있도록 아동성착취 관련 모든 범죄에는 공소시효를 두지 않을 것을 권장한다.

198 대한민국 정부. (2019).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hild Abuse Crimes*. Article 10.

199 대한민국 정부. (2019).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Sexual Crimes*. Article 26.

200 상계서.

201 대한민국 정부. (2019).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Sexual Crimes*. Article 42.

202 대한민국 정부. (2020).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Youth against Sex Offences*. Article 49.

203 상계서, 제55조.

204 상계서, 제56조.

205 상계서.

206 탁틴내일. (2021). 퍼스널 커뮤니케이션.

207 탁틴내일. (2021). 퍼스널 커뮤니케이션.

208 대한민국 정부. (2020).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Youth against Sex Offences*. Article 56.

209 대한민국 정부. (2020).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Youth against Sex Offences*. Article 20.

210 대한민국 정부. (2020).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249.

211 대한민국 정부. (2020).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Youth against Sex Offences*. Article 20.

212 엑팟 인터내셔널. (2017). *Through the Eyes of the Child: Barriers to Access to Justice and Remedies for Child Victims of Sexual Exploitation*. 엑팟 인터내셔널. (2017). 58.



한국의 국제적협약의 관련해 위에서 논한 바와 같이 커뮤니케이션 절차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를 비준하지 않았으므로 국내 법적 구조에서 아동을 상대로 한 범법행위를 효과적으로 다루지 못할 때 아동이 국제 법적 구조에 호소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을 저해할 수 있다.

## 아동 친화적 사법체계

한국 법률은 아동 피해자가 접근할 수 있는 사법제도를 만들기 위해 소송절차 접근법을 조정하는 조항을 많이 포함하기도 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성범죄 피해 사례에서 수사기관과 법원은 피해자가 편안하게 진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고, 가능한 한 수사절차, 검사 및 판결 회수를 적게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한다.<sup>213</sup> 또한 성적 학대 피해를 입은 아동을 영상 촬영을 통해 진술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기록은 수사 전체 과정에 걸쳐 활용할 수 있다.<sup>214</sup> 또한 형사소송법에서는 아동성착취 피해자 또는 아동을 영상이나 기타 전송방식을 통해 조사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sup>215</sup>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또한 아동성착취 피해자를 수반하는 사례에서 “피해자가 함께 착석할 수 있는 피해자와 대리인 관계의 사람”의 존재를 요구한다.<sup>216</sup> 이 조항은 심리학자, 상담사, 또는 NGO 소속 전문가 직원이 소송절차에 걸쳐 아동과 동행하여 지원하도록 허용하는 데에 사용된다.<sup>217</sup>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해서도 동일한 조항을 다룬다.<sup>218</sup> 이 법률에서도

성범죄 피해자가 13세 미만일 경우 법원은 목격자 조사에 중개인이 지원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sup>219</sup>

위에 더해 한국 법률에서는 법적 소송에 관여하면서 아동 피해자와 목격자의 사생활을 보호하려고 노력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31조에서는 성적 학대와 관련된 소송에 관여하는 아동 피해자 또는 목격자와 관련해 개인적이거나 기밀성 정보를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공개하는 것을 금한다.<sup>220</sup> 또 이 조항에서는 그러한 정보를 신문사, 출판물 및 정보통신망에 공유하는 것도 명시적으로 금한다.<sup>221</sup> 해당 법률을 어길 시 심각성은 7년 이하의 징역과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반영된다 (2021년 5월부로 \$44,172 USD).<sup>222</sup> 다시 말하지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하여 모든 성범죄 피해자에게도 유사한 조항이 적용된다.

법정 대리와 관련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아동 피해자에게 법적 소송 절차에 걸쳐 자신을 대변하고 지원하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sup>223</sup> 범죄피해자 보호법에서는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모든 범죄 피해자에게 법적 지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한다.<sup>224</sup> 또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가는 성폭행 피해자들에게 법률 상담 지원 서비스와 법정 대리를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sup>225</sup> 아동성착취 사례에서 아동의 경우<sup>226</sup> 변호사의 법정 대리가 무료이며, 변호사는 주로 NGO 또는 경찰관이 지명한다.<sup>227</sup> 피해자가 경찰에게 변호사 지명 요청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보고하면 이 절차는 법무부 예산에 속한다.<sup>228</sup>

213 대한민국 정부. (2020).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Youth against Sex Offences*. Article 25.

214 상계서, 제27조.

215 대한민국 정부. (2020).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165-2.

216 대한민국 정부. (2020).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Youth against Sex Offences*. Article 28.

217 탁틴내일. (2021). 퍼스널 커뮤니케이션.

218 대한민국 정부. (2019).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Sexual Crimes*. Article 34.

219 상계서, 제37조.

220 대한민국 정부. (2020).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Youth against Sex Offences*. Article 31.

221 상계서.

222 상계서.

223 상계서, 제30조.

224 대한민국 정부. (2017). *Crime Victim Protection Act*. Article 7.

225 대한민국 정부. (2018). *Sexual Violence Prevention and Victims Protection Act*. Article 7-2.

226 대한민국 정부. (2016). *Legal Aid Act*. Article 7.

227 탁틴내일. (2021). 퍼스널 커뮤니케이션.

228 상계서.



반면 NGO에 소속된 피해자는 여성가족부의 무료 법률 지원 프로젝트를 통해 변호사가 지정될 수 있다.<sup>229</sup> 아동성착취 범죄를 전담으로 다루는 형사사법체계는 없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지방 법원장 또는 고등 법원장이 성범죄를 전담하는 재판부를 지정해야 한다”고 명시하지만, 이는 모든 성범죄를 지칭하고 구체적으로 아동의 성착취를 지칭하지는 않는다.<sup>230</sup>

## 회복과 재통합

한국 법률에는 아동성착취 피해자가 회복과 재통합의 권리를 즐길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에 이용할 수 있는 조항이 많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아동보호기관을 설립해야 하고, “상담, 의료, 학대당한 아동을 위한 교육, 학대당한 아동의 가족을 위한 사후관리”를 포함하여 조치를 제공해야 한다.<sup>231</sup>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가가 성적 학대의 모든 피해자 아동에게 모든 신체적 및 정신적 회복에 필요한 상담 및 의료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sup>232</sup> 또한 동 법률 제46조에서는 상담 및 복지센터가 피해자 아동의 회복에 연관된 수많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명시한다.<sup>233</sup> 여기에는 적절한 의료시설과 피해자 연계, 아동이 사회로 돌아오도록 돕는 재활 지원, 소송 절차에서 적절한 법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 및 대한법률구조공단과의 연계가 포함된다.<sup>234</sup> 아동성착취 범죄의 모든 피해자는 본 법률에 의거하여 지원 서비스로 접근할 권한을 가진다.<sup>235</sup>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는 지원

시설의 생성 및 업무에 대한 개요를 설명하는 조항도 포함한다. 이러한 지원 시설에는 무엇보다 숙소를 제공하고, 의료 및 법률 지원 서비스에 지원과 상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가진다.<sup>236</sup> 외국인 역시 이 법률에서 제공되는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sup>237</sup> 하지만 이 법률은 성매매와 인신매매에서 착취와 관련된 범죄의 피해자만 다루는 정의, 즉 “영리를 목적으로 한 성행위” 피해자만 지칭한다.<sup>238</sup> 또한 이 법률 조항은 피해자를 위해 일반적으로 제공하므로 아동만 단독으로 다루지 않는다.

아동 성학대 피해자를 특별히 다루는 센터도 몇 군데 있다. 여성부에서 설립한 해바라기 아동센터는 성적 학대를 당한 아동 피해자 전용 상담, 의료 지원 및 심리적 치료(병원과 협력하여), 법적 지원, 사후관리 지원을 제공한다.<sup>239</sup> 2019년부터 국내에 39개의 센터가 있었다.<sup>240</sup> 39개 센터 중 16 군데는 성폭력 또는 가정폭력에 대해 위험 중재와 지원을 제공하였고, 8군데는 청소년과 아동을 위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15군데는 원스톱 센터에 해당했다.<sup>241</sup> 이러한 센터에서 제공하는 지원 서비스는 남아와 여아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의 2020년 성과 보고서<sup>242</sup>에 따르면 2020년 해바라기 센터에 방문한 남성 피해자 수는 총 927명이었고, 그 중 13세 미만은 438명, 19세 미만은 185명으로 나타났다.<sup>243</sup>

이러한 조항에도 불구하고 2019년에 한국에 대한 마무리 관찰에서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 학대를 전문으로 하는 지역아동보호기관, 보호소, 상담사, 심리학자, 변호사가 부족할 뿐 아니라 학대 피해자인 장애 아동이나 이주 아동을 위한 보호소를 포함해 전문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우려를 표했다.<sup>244</sup>

229 상계서.

230 대한민국 정부. (2019).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Sexual Crimes*. Article 28.

231 대한민국 정부. (2018). *Child Welfare Act*. Article 46.

232 대한민국 정부. (2020).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Youth against Sex Offences*. Article 37.

233 상계서, 제46조.

234 상계서.

235 상계서, 제2조.

236 대한민국 정부. (2018). *Act on the Prevention of Commercial Sex Acts and Protection, etc. of Victims*. Article 10-11.

237 상계서, 제3조.

238 상계서, 제2조.

239 여성가족부. (n.d). *Preven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 Children and Support for the Victim*.

240 EMD. (2019). *The 15th anniversary ceremony of the opening of the Seoul Sunflower Center*.

241 탁틴내일. (2021). 퍼스널 커뮤니케이션.

242 여성가족부. (2020). *Sunflower Center Operation Performance in 2020*. [한국어에서 번역].

243 2020년에 해바라기 센터에 참여한 다른 남성 피해자는 19세 이상이거나 연령이 알려지지 않았다.

244 아동인권위원회. (2019).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combined fifth and sixth periodic reports of the Republic of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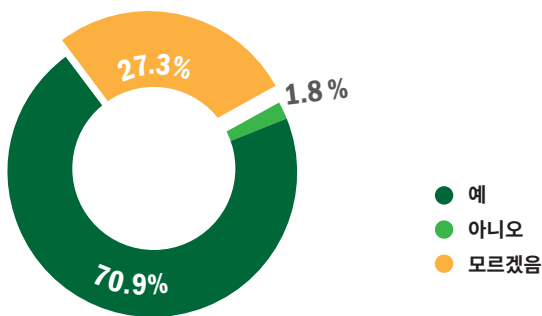
## 법적 보상

한국에는 아동성착취 아동 피해자가 형사소송에서 보상을 요구하도록 해주는 조항이 없다. 일반적으로 보상을 요구하길 희망하는 피해자는 상담 지원 서비스, 법적 및 의료 지원(위에서 논한 조항에서 제공한 바와 같이)을 활용하여 형사소송을 진행할 것이고, 이후 별도의 민사 소송을 제기할 것이다.<sup>245</sup>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sup>246</sup> 제751조에서는 범죄가 경제적 피해를 야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보상을 허용한다.<sup>247</sup> 하지만 민사소송은 시간이 너무 오래 소요되고, 피해자가 이런 방식으로 보상을 추구하는 경우는 드문 것이 현실이다.<sup>248</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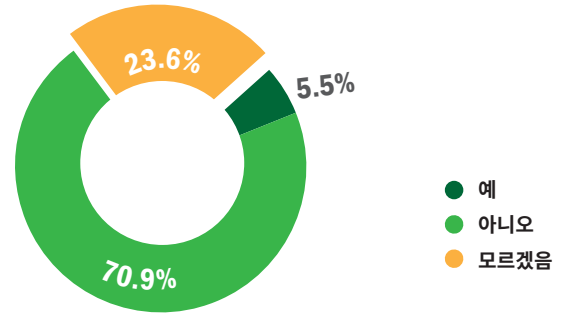
Figure 16은 한국에 아동 피해자들은 민사 및 형사 재판 소송에 걸쳐 공식적인 금전적 보상을 추구할 수 있다고 올바르게 묘사해왔음을 나타낸다. 사회복지사 대다수는 이용 가능한 보상 자금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명의 사회복지사만 한국에서 보상을 받은 젊은 남성(18세 미만)에 대한 지식이 있었다.

Figure 16. 아동성착취 피해자 재정적 보상 유무

### 법적보상관련 지식



## 법적보상 경험



또 범죄피해자 보호법에서 제공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범죄피해구제기금”에도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sup>249</sup> 나아가 법률에서는 그러한 문제에 대해 한국에서 조약을 맺은 국가 출신의 외국인 피해자도 그러한 자금을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한다. 따라서 관련 비자가 없는 피해자 또는 한국과 조약을 맺지 않은 국가 출신의 피해자는 그러한 자금을 접근할 수 없을 것이다. 실무에서는 아동성착취 피해자가 이 법률에서 규정하는 자금을 수령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sup>250</sup> 또한 아동권리기관들의 발언에 따르면, 법률/의료 지원과 상담 등의 형태(위에서 다룬 바와 같이)로 지원을 제공하므로 판사들이 추가보상은 불필요하다고 간주한 적이 있다.<sup>251</sup> 나아가 일화적 증거에서는 피해자가 기소 후 추가적인 법적 소송에 관여하길 원치 않으면서 이러한 방식으로 보상을 추구하는 것을 단념시키곤 한다고 제시한다.<sup>252</sup>

245 탁틴내일. (2021). 퍼스널 커뮤니케이션.

246 대한민국 정부. (2016). *Civil Act*. Article 750

247 상계서, 제751조.

248 탁틴내일. (2021). 퍼스널 커뮤니케이션.

249 대한민국 정부. (2017). *Criminal Victim Protection Act*. Article 16.

250 공식 이사, 전국매춘방지연합. (2021). 퍼스널 커뮤니케이션.

251 상계서.

252 상계서.

# 논의

## 젠더 통념

세계적으로 연구원들은 성착취를 당한 남아들이 대중과 지원실무자에게서 직면하는 인식을 비롯해 젠더통념이 그들의 취약성과 경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와 관련해 다양한 분석 수준을 포함하여 남아의 성착취의 역학에 점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sup>253</sup>

한국에서는 남자답게 행동하고 느껴야한다는 남성성에 대한 대중적인 개념이 남아의 성착취 경험을 복잡하게 만든다. 이러한 인식은 종종 여아는 약하지만 남아는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해야 한다는 가부장적 신념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다. 설문조사를 진행한 지원 실무자 중 한 명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가부장 사회는 남아가 자신의 상처를 숨기는 문화를 조성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만날 때마다 성별과 상관없이 자신의 상처를 극복하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도록 돕고 싶습니다.”**  
(R61)<sup>254</sup>

이러한 인식은 우리 설문조사의 지원 실무자에게서 강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 응답자들은 남아가 자신의 경험에 대해 타인에게 이야기하고 도움을 찾는 데에 방해되는 요소로 남아들이 피해자로서 경험할 수 있는 오명과 수치심을 꼽았다.

## 남아에게 미치는 영향

지원 실무자, 그리고 우리가 대화를 나눈 2명의 남아는 냉정하고 '남성답게 행동'하고 나약함 또는 '남자답지 않은' 감정의 표현을 피하는 것이 한국에서 팽배했다고 언급했다. 자료에서도 이것을 강하게 입증하는 예시들을 보였고, 또래 및 타인과의 관계를 통하거나 다양한 방법으로 젠더통념을 강요함을 입증하였다. 대화를 나눈 두 남아는 '게이'로 불리거나 '남자답지 못한' 것으로 생각하는 두려움을 표했는데, 동성애 혐오는 실제 성적 취향과 상관없이 모든 남아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젠더통념은 성착취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나약함을 표하는 요건이 남아에게 장애물이 된다는 의미다.

실무자들은 타인이 아동의 피해사실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도 남아들이 굉장히 두려워하며, 남자로서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해 비난 받을 것을 걱정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러한 두려움 중 대부분은 가령 폭행이 일어나게 '두어서' 비난 또는 처벌을 받거나, 스스로를 보호하지 못해(특히 가해자가 여성인 경우) 놀림을 받거나, 말을 믿어주지 않는 것과 같이, 남자(그리고 여자)의 행동을 요구하는 엄격한 젠더 통념과 관련되어 있다. 또 그들은 남아가 스스로를 피해자로 보기를 꺼리거나(예: '여자 아이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감정적으로 학대의 영향을 받으면 '진짜 남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대해서도 공통적으로 언급했다. 한 실무자는 남성 피해자에 대한 피해와 가부장제도를 연결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253 UNICEF. (2020). [Research on the Sexual Exploitation of Boys: Findings, ethical considerations and methodological challenges.](#)

254 원문: “여성 아동에 비해 남성 아동 피해를 접하는 경우가 드물다. 피해가 적어서 그러는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피해가 드러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가부장적인 사회의 모습은 남아들에게 피해를 숨기도록 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 같다. 한 명의 피해자라도 만나게 된다면 성별 여부를 가리지 않고 이러한 피해에 대해 아동이 극복하고 자신의 삶을 찾아가도록 돕고 싶다.”

**“피해자가 피해를 인정하도록 두지 않는 남성적 문화. 가해를 정당화하는 문화.”(R59)<sup>255</sup>**

성착취와 성적 학대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직접적이고 장기적인 심리, 신체, 사회, 경제적 결과를 야기할 가능성을 가진 것으로 인식된다. 성착취를 경험한 남아는 전체적으로 정신 건강 수준이 낮고,<sup>256</sup> 이는 우울증, 불안증, 무력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이어질 수 있다. 성착취 경험은 복합외상<sup>257</sup>과도 관계가 있어서 성착취 경험을 통해 기존의 복합외상이 강화되는 증상을 보인다. 복합외상은 감정조절의 파괴를 포함해 다양한 영향을 미치며, 위축, 공격성, 충동성, 적대감, 감정 기복, 자기위안의 불능, 주의력 문제 등 다양한 행동 및 기분 영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sup>258</sup> 한국의 맥락에서 이러한 영향과 남아를 지원하는 방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며, 가족과 보호자 지원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남아 대상 프로그램의 가용성이 미치는 영향**

한국에서 아동 성착취와 관련된 이론, 데이터, 전략, 실무, 피해자 지원 및 지원 서비스 개발은 보통 페미니스트 관점을 통해 발전되어오곤 했고, 그로 인해 당연히 비대칭적으로 여성과 여아에게 중점을 둔다. 하지만 이 모델은 주로 남아와 남성을 가해자로 덮어씌우는 경향이 있다.<sup>259</sup> 그러한 개념화는 이해할 순 있지만 남아 피해자를 비가시적으로 만드는 경향도 있다. 그러므로 피해자 지원 모델에 피해를 입은 남아를 수용하기 위한 조정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

우리가 대화를 나눈 2명의 생존 남아는 젠더통념이 그들이 경험한 성착취에 대응하는 데에 개인으로 그들에게 부여한 제약을 분명히 이해하는 것을 입증하였다. 그들의 경험은 도움 요청에 대한 거절도 포함했는데, 일부 아동의 지원 서비스는 “여아 전용”이고, 여러 기관에 반복적으로 연계되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한 남아는 경험의 결과로 인해 “사람들이 남자 아이들을 피해자로 보지 않아서 도움을 요청하기가 까다로웠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러한 의견은 설문조사를 한 실무자의 발언에도 반영되었다.

**“한국에서는 남성이 강하다는 편견이 있고, 남자는 성착취의 피해자로 동일시하기가 힘들며, 설사 용기를 내더라도 주변 사람들 때문에 남성 피해자가 진단, 상담,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받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R50)<sup>260</sup>**

남아가 경험하는 취약성을 어느 정도 줄여줄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 남아를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아동성착취에 따른 구체적인 니즈에 대응해야 할 필요성은 두 남아와 일부 실무자가 모두 언급하였다. 남아의 경우 더 강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일환으로써 구체적인 남아 친화적인 지원 서비스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실무자는 이번에 한국에 남아를 위한 일부 전문가 프로그램의 존재에 대해 언급했으나 이는 주로 가해자에게 중점을 두고 있고, 아동은 문제적 또는 유해한 성적 행동을 가진 것으로 고려한다고 언급했다. 아동성착취를 경험한 남아들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반항 청소년”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sup>261</sup> 한 실무자는 그들

255 원문: “피해 사실 확인이 어려운 사건을 피해로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남성문화,가해자가 정당화 되는 문화 인터넷 성착취 구조에 대한 법마련(규제, 처벌) 피해 사실에 대한 적극, 지속적인 지원”

256 UNICEF. (2020). *Research on the Sexual Exploitation of Boys: Findings, ethical considerations and methodological challenges.*

257 Cole, J. Sprang, G, Lee, R, Cohen, J. (2016). *The Trauma of 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 of Youth: A comparison of CSE victims to sexual abuse victims in a clinical sample.*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31(1), 122-146.

258 UNICEF. (2020). *Research on the Sexual Exploitation of Boys: Findings, ethical considerations and methodological challenges.*

259 탁틴내일. (2021). 퍼스널 커뮤니케이션.

260 원문: “한국에서의 남성은 강하다는 생각이 있기때문에 성착취 피해자라고 쉽게 말하기는 어렵고 용기를 낸다고 해도 주위의 시선들이 많이 의식이 되어 진료및 상담, 심리치료등의 지원등을 받기가 원활하지 않을것 같다. 남성은 강하여 스스로 보호할수 있고 여성은 약해서 돌봐줘야된다는 사회적 의식구조 변화가 필요하고 성착취 피해자는 본인들의 잘못이 아님을 알수있도록 격려해주고 용기를 줘야한다.”

261 일부 아동은 유해하거나 문제가 되는 성 문제를 보이는 아동을 위해 고안된 사법 제도 부문에 연계된 전문가의 ‘성적 비행 청소년’ 프로그램(초창기 용어 사용)으로 의뢰된다.

기관 내 성평등과 성적 권리 교육을 가르침으로써 취약성 요인을 다루는 것을 목표로 하는 “성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언급하지만, 프로그램에서는 착취의 위험에 있는 약한 사람이나 피해자보다는 성적 가해자로 동일시되는 남아청소년과 주로 작업한다고 언급했다. 응답자는 “남아는 상담에서 종종 가해자로 방문하곤 하지만(소년범 교육), 우리는 편견 없이 아동을 상담하려 한다”고 말한다.<sup>262</sup>

## 실무자에게 미치는 영향

실무자는 젠더통념의 영향을 받지만 언제나 그것을 또는 그것이 태도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의식하진 못할 수 있다. 가령 남아를 대할 때 이와 관련된 실무자의 공통된 대응과 관찰은 ‘남자 아이들이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다’라거나, ‘공개를 하지 않는다’가 있다. 두 상황 모두 남아가 공개하기에 편안한 지원 서비스가 아니었다는 의미로 읽을 수 있다.

남아를 포함시키는 젠더 관점에 대한 미묘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 구체적인 증거기반 프로그램은 그들의 부재가 눈에 잘 띄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제약을 극복하도록 모든 실무자의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는 데에 중점을 두어 남아를 위한 젠더 감수성을 높일 필요성이 분명해 보인다.

소수의 실무자들의 말에 따르면, 실무자는 거의 여성이므로 남자 아이들이 편안하게 느끼지 않아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지 않는 편 이라고 했다. 성폭행 분야에서 수많은 이유로 여성 피해자는 여성에게서 받는 지원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가해자가 대부분 남성이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은 공통적으로 받아들여지지만, 남아에게 자동으로 같은 가정을 내려선 안 된다(가해자 역시 남성인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누군가 자신의 외상에 대해 이야기하려는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유익한 역학적 관계는 너무나 많으며, 하나의 요인으로 선택권을 줄이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 수가 있다. 결과적으로 여아와 마찬가지로 남아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이러한 지원자의 성별을 선택하도록 선택권을 제공하는 것을 선호할 수 있다.

특히 대화를 위한 참가자를 파악하려는 시도에서 연구 팀의 경험은 이러한 관점으로 알려준다. 팀은 남아의 착취와 학대에 대해 낮은 수준의 신념과 인식, 그 의의와 심각성에 대한 우려와 제한된 이해에 직면했으며, 일부 경우에는 문제와 관련해 공감 부족을 보이기도 했다.

## 남아의 가족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강하고 지원적인 사회망은 생존 회복탄력성에 있어 핵심이다.<sup>263</sup> 한 남아는 본인의 피해사실이 가족에게 절망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어떻게 부모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그들에게서 전적인 지원을 받게 되었는지 설명했다. 남아의 아버지는 그 사건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야기하고 속상하게 만들었는지 밝혔고, 이는 도움을 받기가 어려운 현실로 악화되었는데, 그의 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 서비스를 파악하기까지 기관 5군데에 연락을 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사례의 남아는 자신의 튀는 행동이 도와달라는 외침이었음을 설명했지만, 그의 어머니는 그가 문제라고 생각해서 도움을 찾는 과정에 그를 돕기를 꺼리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전자의 경우 몇몇 친구들에게 그의 착취 사건을 최근 공개했다고 설명했는데, 학교에 있는 여자 친구들에게 지지적 반응을 희망하며 밝혔으나 그가 거짓말을 하고 과장한다고 비난 받게 되어 더 고립되는 결과가 야기되었다.

공개와 관련된 연구에서는 남아들이 가족과 또래에게서 받는 다양한 반응을 확인하였는데, 대다수는 도움이 되기는커녕 공개 사실에 부적절한

262 원문: “상담에서는 남성 아동은 가해자로 방문하는 경우가 더 많지만 (가해아동 교육 프로그램), 상담으로 오는 경우에도 되도록이면 편견을 갖지 않고 아동을 대하도록 노력한다.”

263 M. Ungar (Ed.), *Resilience in Developmental Systems: Principles, pathways, and protective processes in research and practice*. 뉴욕: 옥스포드 대학 출판사. 113-135.



반응을 포함해 그들에게 더 많은 상처를 입히기 쉽다는 결과를 보였다.<sup>264</sup> 전체적으로 공개 후 또는 학대로부터 회복 후에 남아들은 사회적 지원에 중점을 둔 대응보다는 타인에 의한 판단을 경험하는 경향을 보였다.<sup>265</sup>

우리 연구에서는 피해 남아의 보호자가 지원 서비스로부터 혜택을 받고, 남아 착취의 역학을 이해하며, 자신의 감정(죄책감, 수치심, 분노 포함)을 극복하며, 그들이 경험한 고립을 줄이도록 돕고, 자녀를 지원하도록 도울 것이라고 나타났다.

## 남아들의 지원 탐색 경험

### 온라인 상 지원 모색

지원 서비스의 '직접적' 지원이 없는 남아들은 온라인 지원을 어떻게 찾아보았는지 설명하였으나, 남아에게 적절한 도움이 되지 못했거나 오히려 다른 위험에 직면하였다. 따라서 남아의 성착취와 관련된 온라인 상의 지원 접근성은 낮게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가시성의 부족도 중요하며, 남아가 "환영 받지 못하고" 고립된 것으로 느끼게 해 남아의 감정에 기여하였다.

### '연계'되고 오해 받거나 환영 받지 못하는 느낌

본 연구는 동일한 대응 시스템에 상당히 다른 관점을 밝혔다. 두 남아와의 대화에서 그들은 그저 다른 지원 서비스로 전달되는 것처럼 느꼈고, 실무자가 남아를 지원한 경험이 없어 보이거나, 실제로 문의했던 아동지원기관들이 여아에게만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무자는 이를 남아를 지원할 수 있는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많은 아동보호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지원절차 설명에서 대개 심리적 지원을 위한 의뢰와 '전문가 연계 서비스'를 비롯해 경찰 조사나 아동을 가정에서 격리시키는 것처럼 법적 대응에 강하게 중점을 둔다. 이러한 대응은 이해할 만하지만 대화를 위한 지원적이고 배려심 있는 관계를 찾는 남아의 직접적 지원 요구를 간과하는 것은 사실이다.

실무자는 모범 실무로 간주할 수 있는 것(아동을 적절한 전문가에게 연계하는 시스템)을 피해 남아(사실을 밝히고 지원을 찾기까지 수년이 걸렸을지 모르는)의 눈을 통해 볼 때는 환영 받지 못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음을 언급하는 것이 유용하겠다. 두 남자는 적어도 1년간 피해 고백과 도움 요청의 지연을 보였고, '도움 요청'의 경험은 처음에 그들을 환영 받지 못하다는 느낌을 받게 만들었다. 이러한 기본적인 의뢰 패턴은 조심스럽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경험은 지적장애가 있는 한 남아에게 특히 중요한 것으로 보였는데, 지적장애를 가진 '독특한 상태'와 남아라는 사실 때문에 한 기관에서 지원을 거부당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장애아는 착취와 학대에 극도로 취약할 것으로 인정된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장애가 없는 아동에 비해 모든 유형의 학대를 경험할 가능성이 몇 배가 높으며, 장애가 있는 아동과 그 가족도 아동보호지원 서비스에 접근하려 할 때 상당한 장애물에 직면할 것이라는 국제 연구의 결과를 반영한다.<sup>266</sup>

남아는 이야기 또는 피해사실을 밝히기 원하지 않는다는 실무자의 언급과 관련해, 실무자의 전문적 자격이나 학위와 상관없이 남아는 신뢰를 쌓아오지 않은 타인에게 연계될 경우 '마음을 닫아버리거나' 이야기를 나누기가 두려울 수 있다고 언급했다. 결국 아동은 언제 이야기를 할 것인지, 누구를 믿고 이야기를 할 것인지 결정할 것이다. 트라우마 치료는 아동의 회복에 반드시 필요할 수 있으나 이러한 개입이 항상 최선의 주요 대응은 아니다. 오히려

264 엑팟 인터내셔널. (2021). *Global Review of the Existing Literature on the Sexual Exploitation of Boys*. 방콕: 엑팟 인터내셔널.

265 상계서.

266 Global Partnership on Children with Disabilities. (2015). *Literature Review*.

성착취 피해 남아에게 지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을 물었을 때, 그들이 피해사실을 밝힌 대상의 공감과 포용을 가장 중요시하였다.<sup>267</sup> 연구에서 여아에 대해 입증한 바와 같이 남아도 편견이나 비난 없이 믿고 받아들여지길 원하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원하며, 그들이 그런 경험을 한 유일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길 원하고, 자신의 고민들을 진지하게 받아주기 원한다.

남아대상 성착취에 대한 연구에서는 때때로 남자 아이들이 문제 혹은 반사회적 행동을 통해 그들의 내적 고통을 외현화할 수 있다고 나타내는데 그에 따라 적절하지 않거나 행동 자체의 원인을 교정하는 치료 및 지원 프로그램에 배정되곤 한다.<sup>268 269</sup>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있음을 확증한다. 연구한 실무자와 남아 모두 남아가 다른 문제와 관련된 프로그램이나 ‘교정교육과정’으로 의뢰될 수 있다고 답했는데, 가령 학교에서의 괴롭힘, 무단결석, 문제되는 성적 행동 등이 그러한 문제에 포함된다. 한 실무자는 남아들이 언제나 적절한 처치를 받는 것은 아니어서 오해에 직면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아동을 병리화하는 부적절한 대응을 야기한다고 인정했다.

“아동 피해자 주변 사람들(부모, 교사 등)이 남아에 대한 피해를 인정하지 않고 반항적인 사례로 생각해서 성착취 [경험] 이후 [해롭거나] 비행적인 성적 행동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야기하고, 그에 따라 미래에 아동을 잠재적 가해자로 보는 경향이 일어난다. 아동은 이에 영향을 받는다.” (R118)<sup>270</sup>

## 성착취를 밝힐 때 어려움들

연구에서는 남성이 아동기 성적 학대 경험을

누군가에게 말하거나 성인이 되어 성폭행피해를 보고하는 것은 여자보다 남자가 훨씬 적음을 나타낸다.<sup>271</sup> 5장에 언급한 바와 같이 대화를 나눈 2명의 남자는 누군가에게 사실을 공개하는 용기가 생기기까지 1년 이상이 걸린 이유를 설명했다. 침묵을 지킨 이유는 그들 탓을 할 것만 같은 두려움, 일어난 일에 대한 혼동과 불확실성(예: 일어난 일이 잘못되었음을 이해하지 못함), 어디에 신고하고 누구에게 말해야 안전한지 모르거나, 가족이 거부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포함했다. 또 학대를 공개할 때 경찰에 잡힐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설명하기도 했다. 두 남자는 그들의 부모나 교사가 뭔가 잘못되었음을 눈치채길 바랐고, 행동의 변화를 통해 무언가 잘못됐음을 암시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을 이해받지 못했고, 도움의 요청보다는 ‘문제 행동’으로 오인을 받았다.

두 남자는 지원 서비스에 참여하면서 그들의 문제에 대한 통찰력과 상당한 자기인식을 보였고, 제공 받은 대응의 한계도 설명했으며, 실무자의 이해 부족에 대해 언급했다. 그들은 누구도 이해하거나 상황을 설명해주거나 그들의 감정을 성찰하도록 돕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한 명은 실무자와 처음 만났을 때 자신의 정신적 외상 경험을 설명할 올바른 단어를 찾기가 극도로 어려웠고, 말을 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지원 실무자는 그러한 행동이 말을 하고 싶지 않거나 실무자의 성별 문제로 간주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현실에서 그는 실무자가 남아와 성착취, 그가 경험한 것에 대해 더 많은 지식과 이해를 겸비할 필요가 있고, 그가 자신을 표현하도록 도와주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저는 말로 표현하는 게 힘들었어요...그분은

267 Hilton 외 (2008). “I Thought it Could Never Happen to Boys: Sexual Abuse & Exploitation of Boys in Cambodia, an Exploratory Study.” Organization: Social Services of Cambodia (SSC).

268 상계서.

269 엑팓 인터내셔널. (2021). *Global Review of the Existing Literature on the Sexual Exploitation of Boys*. 방콕: 엑팓 인터내셔널.

270 원문: “피해아동의 주변(부모, 교사 등)인이 남아의 피해에 대해 크게 인식하지 않고 오히려 일탈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커 성착취 피해 이후 가해행동이나 비행행동 발생에 대한 염려가 큰 경우도 발생하여 피해자로 보기보다 잠재적 가해자로 보는 경향도 발생. 이에 피해아동 또한 영향을 받기도 함.”

271 아동 성폭력에 대한 시설 대응 조사를 위한 왕립위원회. (2017). *Final Report: Volume 4, Identifying and Disclosing Child Sexual Abuse*. 93.

전문가시잖아요...제가 일일이 다 설명하지 않아도 저에게 일어난 일을 알 수 있었으면 했어요.” 두 번째 남아는 피해 상황에서의 비자발적 신체반응에 대해 설명받을 기회가 없었다고 언급했다. 이를 다룰 기회가 없이 그의 유일한 방법은 이를 ‘성적흥분’으로 혼란스럽게 해석하는 것이었다. 그는 이러한 혼란스러운 감정을 성찰할 기회가 있었다면 자신이 피해자였음을 확실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아의 이야기는 남아성착취의 역학, 심리적 및 생리적 영향을 이해하는 사람으로부터의 지원 필요성을 분명 강조한다. 한국의 실무자들의 전문성은 높은 수준이지만, 남아지원에 있어서는 실무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추가적인 훈련과 지원이 상당히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 사회복지사는 남아성착취 관련 인식이 변화함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인다.

“남아 피해 사례는 여아 피해에 비해 드물다. 피해가 적어서라고 생각했지만 보고되지 않은 피해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다.”(R61)<sup>272</sup>

## 안전한 환경 조성하기

성적 학대나 성폭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피해경험을 털어놓는 것은 남아의 생각과 감정, 그가 사는 환경, 그의 말이 신뢰받고 지지받을지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 등에 영향을 받는다. 또 많은 경우에 있어 침묵은 피해 아동에게 보호기재로도 작용하므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것인지 결단이 매우 힘든 일임을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안전과 비밀이 유지된다거나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다는 표시가 분명하지 않으면 목소리를 내어서 얻는 것이 거의 없을 것이다. 피해를 밝히는 건 일회성보다는 하나의 절차이므로 시간, 인내심, 기술, 그리고 공감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지원자의 능력을 요한다.

아동이 지원실무자, 심리학자, 상담가에게 연락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의뢰 과정을 고려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모든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거나 이것을 편하게 느낄 것이라고 추측하는 건 현명하지 못하다. 일부는 문제행동을 통해 지원 서비스 또는 (그들의 동의 없이 의뢰 가능한)교육을 받기도 하는데, 이는 처벌로 인식될 수도 있다. 부분적으로는 아동이 관계를 형성하고 경험을 나누기에 안전한 장소로 느끼도록 돕는 것이 어렵기도 하다. 하지만 지원 실무자의 대응은 실무자가 관계를 쌓는 어려움보다는 아동이 도움을 받는 경험의 어려움에 중점을 두었다. 일부 응답자는 아동이 피해를 밝히는 과정의 복잡성에 대해 이해가 제한된 것으로 보였다. 예를 들어, 누군가는 “성폭력의 피해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 사건을 받기 때문에 이것[실무자에게 피해에 대해 얘기하는 것]은 힘들지 않다”(R40)고 말하는데, 의뢰를 연계했다고 해서 아동이 피해에 대해 논할 준비가 된 것은 아니다.

연구 팀은 남아의 이야기를 경청할 수 있는 대화 과정을 성찰하였고, 그들의 경험에 대한 상당한 통찰력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그들의 감정 및 필요와 그들 주변 사람들이 인식하고 대하는 방법 간에 격차를 발견하였다. 두 남아 모두 피해 경험을 계속 숨기고 싶지 않다고 강력하게 나타냈고, 대신 그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이해하며 돕고 지원해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탈맥락화된’ 아동

한국의 법률과 정책에서는 모든 아동을 위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고, 이론에서는 남아를 차별하지 않지만, 사실상 성착취를 당한 남아를 지원하는 방법에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증거가 있다. 많은 배경과 마찬가지로 이 역시 드문 일은 아닌데, 지원 서비스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남아 친화적’이거나 구체적인 남아의 요구를 유념하고 설계되지 않은 것이 보통이기

272 원문: “여성 아동에 비해 남성 아동 피해를 접하는 경우가 드물다. 피해가 적어서 그러는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피해가 드러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273 모든 아동을 위한 가족(Family for Every Child). (2018). *Caring for Boys Affected by Sexual Violence*.

때문이다.<sup>273</sup>

설문조사에 참여한 지원 실무자 대다수는 성착취에 대한 구체적인 치료 및 정신건강개입을 설명하였다. 가상의 아동 보호 시나리오를 비롯해 다른 많은 질적 정보를 통해 응답자들은 아동 성착취에 대해 생각하고 설명하며 대응하는 임상적 방법들을 설명했다. 그들의 교육과 경험을 고려할 때 그들의 업무(그리고 사고)는 트라우마와 대응에 대한 생태적 이해보다는 개인의 치료 모델에 중점을 두는 경향을 보일 수 있다.

성착취 및 학대의 위험요소와 취약성, 그리고 '예방'에 대해 묻자, 지원 실무자 대다수는 학대 후 상담 개입을 설명하였고, 아동의 가족이나 지역사회 내에서 예방적 또는 위험완화적 고찰사항은 대개 간과하였다. 남아의 성착취에 관한 구체적인 훈련이 한국에서 접하기 힘들다는 점을 감안하면 놀라운 일이 아닐지도 모른다.<sup>274</sup>

지원 서비스를 찾는 남아의 두려움을 고려할 때 일부 남아에게 임상 접근법이 꽤 도전적일 수 있다. 한 남아는 도움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자기

자신이나 자신의 감정, 요구 및 우려보다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과 학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너무 중점을 둔다고 느꼈음을 언급했다.

이를 생각하면, 현재 시스템은 전문가와 '치료'에 너무 중점을 두고 아동의 직접적인 요구에 맞추어 남아가 피해사실을 직접 털어놓을 수 있는 대상(예: 그들을 믿고 경청하며 판단하지 않고 진지하게 받아줄 사람)에 대한 것은 간과한다고 볼 수 있다.

설문조사를 진행한 지원 실무자는 제도적 지원 서비스를 남아들의 가장 “중요한 요구”로 인식하고 (47%) 심리적 지원 서비스에 중점을 두었으며, 나머지 1/3(32%) 정도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적 지원을 설명하였다. 이는 앞서 말한 두 남아의 발언과 상반된다. 대신 그들은 남아의 성착취에 대한 이해, 지식 및 신뢰, 그리고 그들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가족에게 이야기를 하도록 힘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지원자의 바람직한 자질과 행동으로 설명했다. 남아들은 또 실무자들이 그들을 비난하지 않고, ‘차별 없이’ 주의를 기울이며, ‘긍정적인 관점’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 성찰: 전문가 교육과 필수교육의 필요성

### 다양한 관점:

설문조사를 진행한 일부 실무자는 전문화된 교육의 필요성을 인정하였으나 대다수는 그렇지 않았다. 일부는 남아의 요구가 여아의 요구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제시하면서 외상에 대한 원칙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답했다. 외상피해에 있어서 남아와 여아가 비슷하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설문참가자의 이러한 응답은 그들이 남아대상 성착취 및 학대의 역학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남아를 위한 지원 서비스 개발 및 제공에 있어 젠더와 성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한 이슈인지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남아가 도움을 구하길 주저한 이유가 부분적으로는 남아 성착취와 학대에 대한 실무자들의 인식과 이해의 제한이 원인이었다는 언급으로 뒷받침되었다. 남아는 실무자들이 남아와 학대에 대한 ‘분명한 지식과 이해’를 갖고, 질문에 답을 줄 수 있으며,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며, ‘차별과 비난’ 없이 그들을 참여시켜야 할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sup>275</sup>

274 탁틴내일. (2021). 퍼스널 커뮤니케이션.

275 2021년 6월 탁틴내일과 개인적인 소통에서 남아 학대와 착취에 관한 교육이 “존재하지 않고” 해당 부문에서 대부분의 역량 개발은 한국인 여성의 권리 그룹을 포함해 조직에서 제공한 “페미니스트 교육”을 기반으로 한다.

‘전문가’ 서비스와 교육 자원은 세계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반면, 포용적 젠더 관점을 통해 성 착취, 학대 및 폭력을 탐구하고 남성의 경험을 고려하는 집중 교육을 제공할 때는 사회복지사, 서비스, 그에 따라 남아/남성/가족의 삶에 변혁적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암시한다.

한국의 지원 실무자 코호트는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자들이지만 ‘젠더 관점’을 통한 남아의 착취와 학대에 대해 학습하고 그들의 업무에 이를 적용시킬 실질적인 기회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교육은 변함없이 여아와 여성의 요구에 중점을 둔다. 증거에 따르면 지원 실무자는 특정 임상적 시각을 통해 남아가 직면하는 복잡하고 중복적인 사회적 문제에 접근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인다. 그러한 구체적인 개별화된 처치 모델이 항상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젠더 관점과 남아에 관한 접근법을 포함시키기 위해 기존 교육을 검토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하는 일로 보인다.<sup>276 277 278</sup>

‘전문적’ 서비스와 교육 자원은 세계적으로 제한되어 있지만, 실증에 따르면 만약 성착취, 학대, 폭력에 대한 젠더포괄적인 관점이 도입된다면 지원 실무자 및 서비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남아, 남성,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의 삶까지도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

변화되는 모델을 기반으로 한국의 실무자들은 다음 주제를 고려해야 한다.

- ‘다른 성’을 탐구하고, 성과 가부장제가 그들의 착취와 학대에 대한 남아 및 사회의 반응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탐구한다
- 남아, 남성, 성적 학대 및 착취에 관한 미신과 신념
- 성착취 및 학대와 SOGIE 등 다양한 젠더의 사람들
- 남아의 생물학적/심리사회적 발달
- 성착취에 대한 위험과 취약성
- 남아의 성착취와 학대의 징후
- 남아에게 성착취와 학대가 미치는 영향(개인, 가족, 관계, 지역사회 등)
- 남아가 안전하게 피해를 밝힐 방법
- ‘효과적인 소통과 남아의 참여’
- 성착취 남성 피해자 가족 및 보호자 지원
- 남자 아이들의 성과 장애의 교차

마지막으로, 기존 및 새로운 실무와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가치와 관점에 성찰을 장려하도록 성찰 및 참여적 (설교하지 않는) 방법을 통해 교육을 적용하고 도모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실무자가 남아를 참여시키는 방법과 그들이 제공하는 지원 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전략, 지침 및 일상 실무의 발전과 긴밀하게 연계되어야 한다.

## 취약 집단

설문조사 자료에서 지원 실무자가 가장 낮은 빈도로 언급한 취약요인 중에는 ‘가족 내 약물 또는 알코올 오용’과 남아 본인의 약물 또는 알코올 오용이

있었다. 마찬가지로 ‘한 가지 이상의 장애를 갖고 사는 것과, ‘한 가지 이상 장애가 있는 부모’는 실무자 3명과 2명이 각각 요인으로 밝혔다. 이는 실무자의 직접 경험을 나타낼 수 있지만 국제적 연구와 실무에서는 약물사용과 성착취 간 상관관

276 난민법 프로젝트. (2020). *The Loud Silence: The plight of refugee male survivors of conflict-related sexual violence.*

277 Living Well. (n.d.). ePortal.

278 First Step Cambodia. (n.d.). *Capacity Building Program.*



계<sup>279</sup>를 제시하고, 장애가 있는 아동은 그 위험이 크며, 아동이 보호지원 서비스에 접근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제시한다.<sup>280</sup> 이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은 저자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남아의 경험으로, 지적 장애로 인해 지원을 찾기가 힘들었다고 설명했다.

가정 외 보육시설에 거주하거나 집이 없는 남아, 가출을 했거나 거리에서 생활하는 남자 청소년은 성착취에 매우 취약함에도<sup>281 282</sup> 설문조사에서 지원 실무자들이 가출을 최우선 취약성으로 인식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마찬가지로, “게이, 양성, 또는 트랜스젠더로 보이는 것(과 이에 따른 오명과 차별에 대한) 두려움”도 선택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었지만 주요 취약성으로 언급되기도 했는데 청소년들이 사회 및 가족의 거부와 차별, 법 집행 또는 실무자의 차별적 대우와 학대, 빈곤과 실직 노숙, 가족 및 지역사회 폭력에 취약하기 때문이다.”<sup>283</sup>

## 결론

본 연구는 한국에서 성적으로 착취 또는 학대를 당한 남아청소년을 위한 지원 서비스의 종류와 특성에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결과에서는 종종 임상 접근법에서 남아를 지원함에 있어 접근법을 넓힐 수 있도록 성별에 민감하고 포용적이며 ‘남아 중심적’인 접근법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을 나타낸다. 2명으로만 구성된 표본이지만 대화를 나누는 남아들은 개선의 여지에 대해 상당히 수준 높은 지침을 제공하였다. 남아의 단기 및 장기적 요구를 충족하도록 더 넓고 유연하고 가시적이며 접근 가능한 지원 서비스 범위의 필요성도 포함한다.

남아 생존자들과의 대화에서 사용된 젠더 민감적이고 특화된 방법론(사진참고)은 매우 효과적으로 확인됐고, 연구 및 실습 배경에서 지속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성인과 아동 간 힘의 격차를 줄이고 안전하고 강화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절차로 인해 남자 아이들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방식으로 자신의 경험, 생각 및 느낌을 솔직하게 공유할 수 있었다. 남아들에게 통제권을 부여함으로써, 남아들은 전과 달리 편하게 그들의 생각과 감정을 공유할 수 있었고, 내용 또한 보다 포괄적이고 맥락화되었으며 고유의 사회적 환경을 포함했다.

설명한 바와 같이, 착취 피해 남아에게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접근법은 없다. 또한 각 아동의 요구가 독특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며, 그의 사회적 환경 내에 그를 둘러싼 사람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원의 개입은 유연해야 한다. 피해 아동이 원하는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선 아동과 그의 가족 및 지인과의 협력을 통해 도출한 니즈와 위험요인을 피해지원 시스템을 제고함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젠더 통념이 해당 주제에 관해 남아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인식도 결여되어 있다. 표본에서 아동성착취 전공은 흔하지 않았으나 전공이 있는 경우 여성과 여아를 피해자로 강조하는 관점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맥락을 감안할 때 당연히 남아를 취약하게 바라보기가 어렵다. 젠더 관점의 초점을 수정하여 실무자가 남아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더 잘 인지할 필요가 있다.

279 엑팓 인터내셔널. (2021). *Global Review of the Existing Literature on the Sexual Exploitation of Boys*. 방콕: 엑팓 인터내셔널.

280 Chynoweth, S., J. Freccero & Touquet H. (2017). ‘Sexual Violence against Men and Boys in Conflict and Forced Displacement: Implications for the health sector’. *Reproductive Health Matters* 25, 51. 90–94

281 UNICEF. (2020). *Research on the Sexual Exploitation of Boys: Findings, ethical considerations and methodological challenges*.

282 Josenhans, V., Kavenagh, M., Smith, S., & Wekerle, C. (2020). *Gender, Rights and Responsibilities: The need for a global analysis of the sexual exploitation of boys*. *Child Abuse and Neglect* 110 (1).

283 상계서.

# 권고사항

## 학습 1 :

젠더통념은 남아들이 덜 취약하고, 회복이 빠르며, 아동성착취는 여아를 대상으로 하므로 남아의 피해는 심각하지 않다는 추측을 잘못 뒷받침한다.

젠더통념과 사회의 전반적 통념을 기반으로 할 때 한국에는 남아의 착취와 학대를 둘러싸고 강력한 오해가 있다. 이것이 종합적으로 '침묵의 문화'에 기여한다.

### 부모, 보호자 및 지역사회:

- **성별, 성, 성정체성과 관련된 젠더통념을 비평적으로 성찰한다.** 부모와 보호자는 남아들이 아동성착취에 취약하며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현실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이해하도록 한다.
- 아동성착취 징후를 인지하고 적절하게 대응, 보호 및 지원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 정확한 정보 및 지원**을 부모에게 제공한다. 부모가 좀 더 유익한 방법으로 빠르게 대응하고, 아이를 탓하는 행동을 피하며, 친절과 비난하지 않는 지지를 제공하도록 돕기 위한 자원을 제공한다.
- **성적 학대, 착취, 동의, 성과 성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편안하게 다룬다.** 남아와 시간을 들여 이야기를 경청하고 나누면서 그들이 가진 질문에 답하기 위해 양질의 참여적 자원을 갖도록 돕는다. 남아는 성적 주제에 대해 호기심을 보이므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답을 찾을 때는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 실무자:

- 일반화된 젠더기반폭력의 렌즈를 넘어서 성평등과 그 의미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키고, 기존의 역량 강화와 담론을 통합한다.
- 남아 아동성착취 관련 포괄적 교육을 개발 및 제공하여 기존의 경험과 전문지식을 보유한 실무자들의 역량강화에 기여한다. 구체적인 교육과 평가는 실무자와의 추가 연구를 실시하여 개발에 적용한다

- 모든 성별을 포함한 접근법, 남아 학대와 착취에 관한 연구, 학습 및 성찰을 모든 실무자를 위한 기본 교육 오리엔테이션 및 지원에 적용하고, 아동성착취 징후 또는 남아들의 취약성과 지원의 필요성을 전달하는 방법을 포함시킨다.
- 부모 혹은 아동관련 실무자대상 증거 기반 포괄적 정보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다(예: 교사, 유치원 직원, 사회복지사, 상담사 등). 부모와 그 외 보호자들 간에 남아의 성착취에 대한 인식 제고는 착취가 발생할 때 빠르게 눈치채고 행동하도록 도울 뿐 아니라 예방 조치를 취하도록 돕기도 한다.
- 성적 학대와 착취를 다루어야 할 책임이 있는 공무원, 관련 지원 서비스 및 책임자에게 남아를 포용하는 프로젝트와 전략을 파악하고 개발하도록 돕기 위한 훈련을 제공한다. 이러한 훈련은 남아와 부모들이 향후 지원 서비스 개발에 적극 기여하기 위해 효과적이고 참여적인 감독 및 평가 시스템을 개발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 시민사회집단, 사회복지기관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은 (예: 학습공동체) 지방, 지역 및 국가적으로 (기존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협력해야 하고, 아동을 지원하는 실무자는 주기적으로 만나 경험을 공유하고 남아와 남성과 그들 가족을 위한 지원 서비스 및 자원 개발에 기여해야 한다 이러한 공동체는 모든 피해자가 적절한 지원을 받도록 보장하기 위해 생존자 및 그들을 대변하는 기관과 협력해야 한다.

## 법 집행:

- **법 집행 공무원들 간 피해자 식별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SOGIE 정체성의 청소년들을 포함해 남성 피해자에게 식별 확인 격차를 줄이는 데에 중점을 둔다.
- **모든 경찰관, 기타 ‘응급 요원’이 남아의 성과 관련된 문제를 이해하고 취약성을 좀 더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젠더 민감성 훈련**을 제공한다.
- **특별 훈련을 받은 경찰관은** 남성 피해자의 수요에 좀 더 민감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학대와 착취를 경험한 남자 아이와 청소년을 친절하고 민감하며 존중으로 대하도록 경찰관을 위한 교육과 지침을 검토하고 개정한다.** 남성 가해자는 여성 피해자와 같은 긴급성과 정의로 처벌하고, 기존 지원 서비스에 남성을 포함시키며, 성착취를 당한 남아는 주거지나 다른 공동체 자원을 갖도록 보장한다.

## 학습 2 :

남아는 도움을 요청하기가 어렵고 도움을 받기는 더 힘들 수 있다.

- 남아는 실무자와 그들 주변에 교사와 같은 사람들이 다른 절차에 남아를 참여시키거나 다른 지원 서비스로 연계하기 전에 시간을 들여 아이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구축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 **남아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와 관련된 지원 서비스의 ‘가시성’을 보장한다.** 남자 아이들이 도움을 구하기가 훨씬 쉽다고 생각하도록 남자 아이들을 전용으로 한 헬프라인과 온라인 지원 자원을 제공한다. 이는 남아들이 시간을 보내는 장소에 있는 포스터, 미디어 캠페인, 남아가 사용하는 SNS 이용, 적극적 지원 등을 포함한다. 이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 ‘침묵의 문화’를 부수는 데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 **남아에게 약점이 아니라 강점의 신호로 도움 요청을 재정의하고, 접근 지원 서비스의 ‘이익’을 강조한다** (안전성, 비난하지 않는 지원, 의료 조치 등).
- 누가, 무엇을, 왜, 어떻게를 중심으로 분명한 메시징을 발전시키기 위해 **남자 아이들과 긴밀하게 협력한다.** (너는 누구니, 무엇을 이용할 수 있니, 동기는 무엇이니,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유가 무엇이니, 안전하게 비밀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접근할 수 있니, 남자 아이들에게 어떤 혜택이 있는지).
- 남자 아이들은 **남아와** 그들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안정적이고 풍부한 지원시스템** 개발과 이행을 권고했는데, 이는 보호자들 또한 아동을 지지하고 문제를 대응하는데 도움을 요하기 때문이다.
- **사생활, 유연성, 지원에 대한 비밀 접근성** (포스터, 미디어 캠페인 등)을 다룬다.
- **남자 아이들이** 정확한 정보를 안전하게 학습 및 접근하고 학대/착취의 위험을 완화할 수 있도록하고, 정체성 및 성적 취향에 대해 **학습하고 (안전하게) 탐구하는 안전한 온라인 환경을** 제공한다.
- **남자 아이들은** 성평등과 남아만의 취약성과 요구를 인정하는 **(온라인) 지역사회에 대한 필요를 강조하였다.** 이를 실시하면 남자 아이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도움을 모색하기 쉬울 것이라고 믿는다.
- **남자 아이들을 환영하는 공간을 만든다** - 남아에게 중점을 둔 지원 서비스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이용한다. 가능하다면 각각의 시간과 독립된 입구를 제공하여 사생활,

비밀을 유지하고 안전을 도모한다. 다른 직원들도 남자 아이들을 ‘환영하도록’ 교육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다(예: 안내 데스크 직원, 경비요원 등).

- ‘근무시간 외’ 유연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예: 남자 아이들이 시간을 보내는 지역사회와 공간에 ‘등록(drop in)’ 지원 서비스와 적극적 지원).

### 학습 3 :

사회복지사는 학대를 경험한 남아를 파악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이에 직면하면 친밀감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다.

#### 남아의 구체적인 요구를 인정하는 전문화된 통합 지원 서비스

- 교육과 인식개선을 통해 성착취 피해 남아들은 간혹 외현화된 문제행동이나 '비행'으로 인해 '가해아동' 프로그램 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시킨다. 또한 이러한 행동들은 도움을 요청하는 피해자의 상태로도 볼 수 있음을 알린다.
- **남자 아동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실무자들을 전원 교육한다** - 대부분 실무자들은 여아나 여성지원 경험이 많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에 따라 실무자가 우려, 추측, 두려움을 극복하고 기술과 자신감을 갖도록 능력을 부여한다. 지원 실무자를 교육하는 데에는 그들이 남자 아이들을 주로 가해자로 보는 경향이 있음을 유념하여 남성 범죄를 학대 및 착취 경험의 불가피한 결과로 정상화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교육에서는 남자 아이들도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 **진정한 아동 참여와 선택을 보장한다.** 프로그램과 개입은 ‘아동에게’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과 함께’ 이행해야 한다. 아동은 실무자와 작업 성과에 관여하고 중요하다는 느낌을 받아야 한다.
- **인식 개선 활동과 캠페인을 쉽게 도움에 접근하는 기회에 연계시킨다.**
- **학대와 착취에만 중점을 두지 않는다** - '한명의 인간'으로서, 남자 아이들은 아동성착취 경험만으로 정의되지 않음을 명심한다.
- 말하는 데에만 의지하지 않고 남아들이

생각을 표현하도록 돕는 도구와 활동을 이용해 활동과 **에너지 표출의 필요를 인정한다.** 가령 도구의 활용, 그리기, 쓰기, 운동과 신체 활동이 포함된다. 이는 남자 아이들을 참여시키고, 에너지와 불안을 채널링하며, 실무자와 친밀감을 형성하는 데에 유용할 수 있다.

- **가족이나 그 외 지원하는 인물들과 협력하고,** 지원 계획에 적절하게 포함시킨다.
- **다양한 사람을 고용한다.** 다양한 관점과 경험이 있는 직원 채용을 우선시한다. 공감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은 중요하다. SOGIE 등 다양한 젠더의 아동 청소년이 비슷한 삶의 경험을 갖고 있거나 남아의 감정과 경험에 상당히 공감해줄 수 있는 실무자를 만난다면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이다.
- **창의적인 사람을 고용한다.** 새롭고 공감적인 접근법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문제에 대해 제도적, 법적, 심리적 접근법에 의존하지 않는 새롭거나 다양한 방식(틀을 벗어난)으로 사고할 수 있는 창의적인 실무자를 필요로 한다. 이는 남아를 위한 지원서비스 제공에 초점을 두어야 하며, 제공된 서비스(활동)들은 본 연구를 위해 탁틴내일 직원이 설계 및 진행한 워크숍과 같이 창의적이고 상호적이어야 한다.
- **기존 훈련 내용과 방법론을 검토하고 개정하여** 남아의 문제를 포함시키도록 하고, 심도 있는 학습 교육과정을 개발하기 위해 실무자의 교육과 욕구분석을 도모한다.
- 남아의 경험을 포착하고 지원 서비스 개발에 반영하기 위해 **질적 M&E 시스템을 검토하고 수정한다.**

- **남아를 위한 좀 더 적절하고 대세에 맞는 지원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며** 이는 모든 전문가가 남아와 어떻게 관여하고 관계를 언제 어떻게 갖는지, 또는 남자 아이와 청소년의 요구에 맞춘 프로그램을 어떻게 이행하는지에 대해 더 나은 지침과 절차 개발을 포함한다. 남아를 위한 전문가 지원 서비스가 필요하겠지만 그것이 유일한 대응이 되어선 안 된다.
- **남아가 그들의 요구를 충족하도록 새로운 지원 서비스 개발에 참여시킨다.** 창의적 지원 서비스 개발을 상상하고 설계하며 계획하기 위한 아동과 청소년 전담반 설립을 통해 실현할 수 있다.

### 관계 형성과 포용적 접근법

- **친밀감과 신뢰 구축에 중점을 두고 남아와 작업 시 더 창의적이고 참여적인 접근법을 선택한다.** 잠시 아이와 ‘앉아서’ 성의껏 이야기를 경청한다. 남아가 피해사실을 털어놓는다면, 이는 많은 생각과 두려움을 거친 결과이다. 아동을 대함에 신중을 기하고 아이가 알지 못하는 전문가에게 함부로 사례를 말기지 않는다. 아이를 상대로 하기 보다는 아이와 함께 활동한다.
  - **모든 아동은 자신의 문제, 요구, 생각 및 해결책을 표현하고 공유하도록 적극 장려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개인과 기관은 이 문제를 둘러싸고 ‘침묵의 문화’를 바꾸고, 남아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을 막거나 방지하는 행위를 중단할 필요가 있다. 남자 아동이 원하거나 느끼는 것을 추측하는 대신 위험에 처해 있거나 착취 또는 학대 피해 아동을 대상으로 좀 더 참여적인 연구를
- 진행하는 것이 좋다. 그들의 인생 경험에서 이루어진 권고사항과 진정한 참여의 개념을 수용해야만 한다.
  - **기존 프로그램은 모든 아동과 청소년의 학대 및 착취를 다루는 포용적인 접근법을 채택할 필요가 있고, 여기에는 여아, 남아, 다양한 SOGIE의 개인들이 포함되어야 하며, 장애 아동과 가족의 요구도 다루어야 한다.** 우리는 부모, 지원실무자, 법 집행 공무원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을 포함해 우리에게 책임이 있음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 **남아를 위해 더 강력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반복된 연계를 최소화하는 작업 과정 및 운영 절차를 개선하며, 아이에게 관여해야 하는 ‘새로운’ 사람들의 수를 줄인다.**
  - **지원센터는 남아지원이 가능한 전문가를 두어** 아이들이 여러 센터를 방황하며 ‘돌아다니지 않고’ 더 쉽게 자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마련하는 것이 좋다.
  - 남아의 요구를 충족하도록 설계된 **남아 전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용 센터**도 제안되었다. 모든 센터에 전문가를 고용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힘들 수 있음을 인정하여 이런 경우 남아를 전용으로 하는 공식 센터를 한두 군데 마련하는 편이 수월할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 **기존 지원센터는 아동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남아를 위한 지원 서비스 제공에 특히 중점을 두며, 제공된 지원 서비스는 탁틴내일 직원이 설계하고 진행 한 워크숍 과 마찬가지로 창의적이고 상호작용적이어야 한다.**

## 학습 4 :

**학대피해 남아의 도움요청을 복잡하게 만드는 시스템적 격차가 있다.**

### 법적 개선을 위한 권고사항:

- 인신매매 범죄를 다루는 법률에서는 아동을 완전히 보호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함을

명시한다. 최근에는 아동 범죄의 인신매매적 요소가 여러 조항에 걸쳐 만연하고, 범죄를 입증하는 데에 필요한 것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한다. 범죄의 일부 요소는 인신매매



수단을 입증하도록 요하고, 나머지 요소는 그러한 증거를 요하지 않는다. 이는 UN 인신매매 프로토콜과 일치하지 않으며, 국제법에 의거하여 명료성과 보호를 제공하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또한 아동의 매매를 단독 범죄로 범죄화함으로써 '아동 인신매매'와 '아동 대상 성매매'를 적절하게 구별하여 범죄 규정을 개선할 수 있다.

- 형사법에 의거한 조항은 아동성착취와 관련된 모든 범죄의 시도는 처벌 가능한 범죄로 간주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개정되어야 한다.
- 또한 형사소송에서 피해자 연령을 타당한 구실로 간과하는 가능성을 제거하도록 법률을 개정할 수도 있겠다.

## 구체적인 법적 변화를 위한 권고사항

- 아동의 의사소통 절차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선택의정서를 비준한다.
- 아동 성범죄 가해자가 피해자 연령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범죄 행위에 대한 핑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형법을 개정한다.
- 한국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성매매"범죄와 관련하여 "자산 이득"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실히 한다.
- 아동을 상대로 한 성착취 범죄를 저지르려는 시도는 일체 범죄화한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제공하는 아동성착취물의 정의를 시각 외 자료(오디오, 녹취록 등)를 포함시키도록 확대한다.
- 아동 성착취 라이브 스트리밍이나 성적인 목적의 아동 대상 온라인 그루밍을 명시적 그리고 포괄적으로 불법화하도록 법률을 개정한다.
- 성적인 목적의 아동 인신매매와 관련된 법 조항을 강화하고, UN 인신매매 의정서를 준수하도록 확보한다. 예를 들어, 아동은 인신매매에 동의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가 아동인 사례에는 인신매매 수단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한다.
- '아동 매매'를 단독 범죄로 불법화한다.
- SECTT와 관련된 범죄는 일체 불법화 하는 법률로 개정한다.
- 아동의 성착취에 대한 모든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모두 폐지한다.
- 아동성착취 범죄에 대한 범죄인인도 소송에서 이중 범죄 요건을 제거한다.
- 아동을 상대로 한 성적 학대를 효과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하도록 검사가 받는 정보를 바탕으로 소송을 시작해야 하는 법률상 의무를 마련한다.
- 한국에서는 아동성착취 피해자가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모든 피해자가 그들이 감내한 고통에 대해 재정적 보상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그 절차를 간소화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

## 자원/학습 격차에 대한 권고사항

- 이후 남아, 다양한 SOGIE 아동, 장애 아동 등 모든 아이들을 포함하는 아동성착취 관련 연구의 장려를 위해 아동성착취 피해 남아와 가족, 사회, 지원실무자, 학계, 연구기관, 후원자, 정부간의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안전한 기회를 창출하고 아이들의 목소리를 경청한다. 남아의 관점과 ‘삶의 경험’에 관한 일차 자료를 도출하는 연구를 이행하기 위해 사회 및 지역 복지사와 청소년 단체와 협력하여 창의적이고 아동 중심적인 연구방법을 활용한다.
- 연구의 요소를 사회실무(학습, 성찰, 경청, 분석)로 통합하기 위해 현지 실무자들과 협력하고, 아동이나 가족과 효과적이고 참여적인 감독 및 평가 절차를 발전시키며, 학습한 내용을 실무로 가져온다.
- 연구 및 학업 기관과 그들을 후원하는 후원자는 한국에 남아와 남성의 성착취 및 성폭력과 관련해 현존하는 지식의 격차를 다루는 데에 전념하고 포용할 필요가 있다.
- SOGIE 및 다양한 청소년은 모든 유형의 SEC에 취약한 것으로 인정되지만 기존 통념은 그들이 적절한 지원에 접근할 기회와 대화에서 배제시키는 경향이 있다. 구체적인 지원 요구를 확인하고 다룰 수 있도록 초점 연구가 필요하다.
- 장애 아동과 그 가족은 연구개발에서 간과되므로, 지원 서비스 개발 자료와 고찰사항에서 배제되곤 한다. 따라서 이러한 아동과 부모는 아동성착취와 관련된 지원 대상에서 소외된다. 연구, 학습 및 실무에서는 모든 아동의 포용을 일상화하는 데에 정진해야 한다.

# 부록

## 부록 1: 생존자들과의 대화 연구방법

### 접근법

발전시킨 모델은 세 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다.

### 사전 면담

잠재적 참가자를 파악하고 나면 진행 중인 지역적 COVID19 팬데믹 지침을 고려하여 안전하고 보안이 유지되는 장소에서 탁틴내일 직원과 아동/청소년/부모/보호자 간에 사전 면담이 진행되었다. 대화를 준비한 진행자와 상담사가 탁틴내일을 대표하였다.

연구의 민감한 특성을 감안하여 연구원들이 신뢰와 라포를 형성하고, 아동과 보호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프로젝트를 설명하면서 질문에 응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프로젝트의 목적과 프로그램 내용을 설명하도록 특별히 고안된 참가자 정보지를 아동 및 보호자에게 제공한 후 자세히 논하였다. 참가자 정보지는 엑팟 인터내셔널과 탁틴내일에 관한 간략한 정보, 성착취에 대한 간략한 정의와 계획한 활동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였다. 참여하겠다는 동의를 한 후에는 동의서에 서명하였다. 동의 절차는 아래의 Figure 17을 참고한다.

Figure17. 생존자들과의 대화 참가동의 절차.



## 주요 대화

대화는 하루 만나질 동안 진행하도록 계획되었고, 초기 표적 집단인 16-24세 남자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룹 활동으로 전개되었다. 처음 만나질은 분위기를 전환, 신뢰와 라포 구축 활동에 중점을 두고 안전하고 비밀이 유지되는 대화를 보장하기 위해 팀워크를 독려하고 안전규칙을 함께 만들기로 하였다. 이후 그룹은 ‘한국에서 남자아이로 사는 것’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의 인생에 걸쳐 남자아이들이 어떻게 젠더 통념에 영향을 받는지 탐구하는 활동에 참여한다.

본 계획에서는 도움을 찾고 접근하는 남아의 경험, 구체적인 니즈와 갭에 관한 그들의 생각, 그리고 남아를 위한 지원 서비스 및 지원 개선을 위한 권고사항을 탐구하기 위해 다수의 창의적이고 활동적이며 흥미로운 그룹 활동을 도모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프로젝트 전용으로 개발한 적극적이고 참여적인 실습 및 도구는 남아들이 장시간 앉아 있으면 지루함을 느낄 수 있고, 수동적 참가보다는 상호작용적 과정에 속할 때 더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태도에 긍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인정한다.<sup>284</sup> 본 접근법은 탁틴내일 직원, 그리고 그들이 아동 및 청소년과 다양한 성공적인 그룹 활동 프로젝트를 이행한 경험으로 알 수 있다.<sup>285</sup> 보고서에 명시한 바와 같이 표본추출 및 기타 제약으로 인해 대화는 더 짧은 일대일 활동으로 조정하였고, 만나질 가량의 활동을 두 명의 남아와 각각 진행하였다.

## 사후 면담

남자 아이들이 적절하게 구체적인 문제를 규명하고 견해를 추가할 수 있도록 아이들과 결과를 공유하기 위하여 주요 대화로부터 며칠 이후 사후 면담을 계획하였다. 협력자는 주요 프로그램 중에 남아들이 만든 사진과 영상을 공유하기로 계획하였고, 접근

가능하고 아동 친화적인 양식으로 연구 결과를 공유하였다. 사후 면담에서 남자 아이들은 ‘아동 활동가’ 자격증과 메인 활동에서 그들이 디자인한 로고가 박힌 후드 티를 수령하였다. 2명의 남아와 사후 면담을 일대일로 조정하였다.

## 표본

기존 지원 서비스를 매핑한 후 워크숍을 설명하는 홍보 포스터를 표적화한 기관에 유포하였고, 워크숍에 관한 공식 서신을 아동과 관련된 정부 부서, NGO,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상담 센터로 송부하였다. 잠재적 참가자를 보호하기 위해 홍보 포스터는 남자 아이가 원하지 않는 타인에게 노출되는 일을 예방하도록 제한된 정보만 포함시키도록 의도적으로 설계하였으므로, 참가자들은 ‘성착취 피해 남아’ 대신 “남아의 권리와 성 규범에 관심이 있는 남아”로 구별했다. 포스터를 소유하게 된 남아들이 피해 상태가 노출되어 참여를 주저하게 될 것을 염려하였다. 주기적으로 기관마다 추적 전화를 걸었다. 응답과 신청을 수신하면 남아 (그리고 부모)에게 직접 연락하여 만남 전 단계로 진행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계획하였다. 모든 활동 중에 협력자는 근무 중인 숙련된 상담사의 지원을 받았고, 만남 중에 또는 계획한 그룹 과제 활동 중에 참가 중지를 원하는 참가자나 정서적 지지를 받고자 하는 참가자를 위해 ‘세이프 룸’을 준비하였다.

## 참가자 선정의 어려움

팀은 수개월 동안 그룹 작업에 참여하기에 적합한 참가자를 파악하고 선정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상당한 어려움과 장벽에 직면하였다.

남성과 남아의 성폭력, 성적 학대 및 성착취는 한국에서 솔직하게 논하고 있지 않으며, 이러한 가시성과 대화의 부족은 참가자를 찾는 데에 어려움으로 이어졌다. 또한 지원과 상담 지원 서비스

284 다운 투 제로(Down to Zero). (2020). 성 착취 및 성적 학대의 영향을 받은 남아와 작업하기 위한 ‘격차 해소(Bridging The Gap)’ 툴킷.

285 탁틴내일에서 조직한 청소년 활동: 청소년 수련캠프, 거리봉사활동, 청소년 자기방어그룹, 글로벌 청년 포럼.

대부분이 여성에게 중점을 두어 시작부터 선택권을 제한했다. 성착취 혹은 학대 피해 아동을 지원하는 기존 지원 서비스를 파악하였고, 상담사, 사회복지사 및 교사를 포함해 다양한 기관에서 근무하는 개인 종사자들에게 연락하여 협력의 여지를 알아보았다.

일부 기관과 사회복지사는 남아의 성폭행과 착취가 드물고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는 인식 또는 남자 아이들은 빨리 회복한다는 인식 때문에 협조하길 원하지 않으나, 그것을 인지하는 사람들에게는 문제의 ‘민감성’을 이유로 참가를 거부당했다. 한국에서 성적으로 착취를 당한 남아들에게는 어떠한 종류(연구 포함)의 그룹 활동 진행 시도가 없었기 때문에 일부 제공자는 프로젝트가 ‘너무 위험’하다고 간주하였고, 일부 경우에는 이유를 명시하지 않았으나 2차 피해를 우려했을 가능성이 있다.

어떤 사례의 경우 부모와 상담사가 영향력 있는 문지기 역할을 하였고, 연구에 대해 내담자와 정보를 공유하기를 꺼렸다. 그 이유로는 직원이 요청 시 남아가 강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정당한) 우려가 있었고, 그룹 활동에 참여하기가 ‘너무 가혹하다’고 간주되어 다른 이들과 연락하는 위험에 처하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일부 사회복지사는 그들의 지원 서비스를 사용한 사람들의 연락처를 더 이상 보관하지 않아서 도울 수 없었다고 주장했고, 일부는 협력을 원하지 않는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다. 그 외에 아동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경험을 ‘비밀’로 유지해야 하고 생존자는 목소리를 내어 편견의 위험 부담을 지기보다는 ‘침묵’으로 일관해야 한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우려를 표했다.

전반적으로 기본이 되는 응답은 성착취를 당한 남아를 위한 그룹 활동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잠재적으로 ‘위험’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는 항상 설명하지는 않았다. 다른 사례에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활동에 관심이 있는

남아와 연락망이 구축되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일부는 ‘이방인’으로 고려되는 타인 집단과 합류하길 두려워한다고 표현했다.

프로젝트 직원이 그룹을 생성할 수 없을 가능성에 직면하여 상담가들 간에 참가자를 선정하기 위해 방법론을 조정하여 남아청소년을 개별적으로 만날 기회를 제공하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같은 도구를 이용해 그룹 작업 모델을 수정하여 위에서 설명한 것과 동일한 테마를 탐구하였으나 일대일 만남에 맞추었다. 목표는 참가자가 증가하면서 가능한 한 많은 남자 아이들을 개별적으로 만나서 그들의 응답을 통합하는 것이었다. 향후에 그룹 활동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촉진시키는지와 관련해 개별 참가자에게서 피드백과 권고사항을 모색하기도 했다.

## 분석

남자 아동청소년과의 활동을 완료한 후 연구원들은 모든 도구, 문서 및 이미지를 수집하였다. 이는 활동지, 성별 그래프, 그림 카드, ‘나무 만들기’ 활동에 사용한 일러스트와 설명서, 평가 및 프로그램 검토지를 포함한다. 진행자와 상담사는 행동, 견해, 단어 선택, 정서 및 행동 변화도 관찰하였는데, 이는 아래 설명된 바와 같이 추가 데이터셋을 제공하기 위한 성찰일지에 기록되었다.

활동 진행자들은 질적연구를 실행함에 있어 주요 메시지와 주제가 나타날 수 있도록 ‘데이터를 가까이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활동이 완료되면 진행자는 절차와 성과에 대한 관찰 및 인식을 공유하기 위해 일련의 성찰 회의에 참여하였다. 협력자는 전체적으로 대화를 검토하고 평가하면서 각 남아와 절차 및 성과의 특별한 측면을 논하였고, 남아와 공유한 특별하고 중요한 진술을 강조하였다. 이후 최종 보고서에서는 모든 정보를 검토 및 통합한 후 다른 자료 출처와 통합하였다 (현장 실무자 설문조사 자료와 법체계 분석).



## 반성적 실천과 일지 작성의 가치

이 프로젝트의 특성상 이러한 민감한 주제에 대한 통찰력을 탐구하고 얻기 위한 질적 방법과 도구의 생성 및 활용을 요했다. 따라서 학습, 발달, 계획 및 이행 과정에 걸쳐 진행자는 그들의 경험을 지속적으로 성찰하고, 워크숍 내용과 결과에 대한 분석을 포함하여 그러한 관찰 결과를 진행 중인 업무에 통합하도록 장려하였다. 이러한 접근법은 진행자 및 연구자가 대화 직후 완성한 ‘성찰 일지’의 사용으로 보완되었다. 일지 작성은 인문학에서 오랜 세월 신뢰할 수 있는 역사를 갖고 있으며, 강력한 발견적 도구 및 연구 기법이다.<sup>286</sup> 질적 연구원들은 ‘연구 도구’로서 그들의 역할을 인정하고, 그러한 일지는 주요 자료 출처로 간주된다.

일지는 진행자가 작업한 내용과 개선의 여지가 있는 부분을 성찰하도록 장려하였고, 분석에 포함시킬 중요한 사건, 정보 및 자료를 강조하였으며, 결정적으로는 참가자들이 공유한 정보의 구체적인 의미와 의의에 대한 탐구를 지지하였다. 또한 연구원의 역할에 대한 이해와 참가자의 대응에 대한 이해를 개선하는 데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이는 분석과 해석의 기반을 설정하고, 생각, 느낌 및 사실에 대해 기록한 노트를 보관하도록 도왔다. 마지막으로 성찰적 실천의 활용은 연구원, 진행자에게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야기와 경험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를 고민하도록 도왔다.

286 Janesick, V. J. (2004). *Stretching Exercises for Qualitative Researchers* (2판).



328/1 Phaya Thai Road, Ratchathewi, Bangkok, 10400 THAILAND  
Tel: +662 215 3388 | Email: [info@ecpat.org](mailto:info@ecpat.org)  
Website: [www.ecpat.org](http://www.ecpat.org)